



Mexico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멕시코

2018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Mexico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멕시코

2018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본 안내서는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멕시코세법 등을 2018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멕시코세법 및 조세 조약의 관련조문 등을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세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I. 멕시코 개황 1
 - 1. 안내책자 발간 개요 2
 - 2. 멕시코 개관 6
 - 3.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현황 8

- II. 멕시코 세무 이슈 11
 - 1. 좌파 민족주의 정권 출범으로 세무상 불확실성 고조 12
 - 2. 마킬라도라 고정사업상 판정 및 이전가격 결정방법 13
 - 3. 멕시코 자회사와 다국적 모회사 간 원가분담 이슈(RMF 2016) 16
 - 4. 이전가격 보고의무 강화 18
 - 5. 전자영수증 제도 및 전자세무조사 확대 19

- III. 멕시코 조세 제도 25
 - 1. 조세 제도의 최근 동향 26
 - 2. 멕시코 조세 체계 34
 - 3. 법인 소득세 35
 - 4. 개인소득세 44
 - 5. 부가가치세 55

- IV. 국제조세 65
 - 1. 멕시코 이전가격 66
 - 2. 멕시코 이전가격 세무조사 76
 - 3.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 79
 - 4. 상호합의 절차 : MAP 84



5. 비거주자 과세제도	87
6. 멕시코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93
7. 기타 국제조세 관련 추가 이슈	96
V. 수출입 지원제도	101
1. 마킬라도라 산업(Maquiladora)	102
2. 산업부문별 진흥 프로그램(PROSEC)	103
3. 수출산업 진흥제도(IMMEX)	105
4. VAT Certification	108
5. IMMEX, PROSEC, VAT Certification 신청	111
VI. 납세자보호제도	113
1. 납세자 보호제도	114
2. 조세 불복제도	114
VII. NAFTA와 멕시코 경제	121
1. 멕시코와 NAFTA	122
2. NAFTA 원산지 결정기준	123
3. NAFTA 재협상	132
4. NAFTA 재협상이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	134
5.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135



VIII. 멕시코 투자환경 141

- 1. 멕시코 투자환경 142
- 2. 멕시코 경제 및 주요 산업동향 143
- 3. 한국기업의 對 멕시코 투자동향 146
- 4. 멕시코 투자 및 진출 방법 148
- 5. 법인 설립 및 철수 151
- 6. 관세제도 154
- 7. 노무관리제도 161

부록

- 1. 멕시코 과세당국 168
- 2. 멕시코 소득세법 중 이전가격세제 관련 조항 169
- 3. Federal Fiscal Code Article 34-A(APA관련 법령) 175
- 4. 기타 국조관련 소득세법 조항 176
- 5.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 제출 근거법령 176
- 6. 상호합의(MAP) 신청양식 기준 180
- 7.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멕시코 연방법 182
- 8. IMMEX, PROSEC 신청서 194
- 9. 전자서명(E. firma) 신청서식 195
- 10. 주요 참고 자료 196

멕시코 개황

I

1. 안내책자 발간 개요 / 2
2. 멕시코 개관 / 6
3.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현황 / 8





1 - 안내책자 발간 개요

가. 배경

- 멕시코는 미국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함
- 멕시코는 '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 10위, 무역흑자 7위의 교역국가이며,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자 무역흑자국임

<한·멕시코 교역규모>

(백만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10,892	9,721	10,932	자동차·전기제품, 철강판
수 입	3,464	3,695	4,401	원유, 기타금속광물, 자동차부품
교역규모	13,416	13,416	15,333	

*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특히, 멕시코는 값싼 노동력을 보유하고, NAFTA를 통한 미국시장 진출의 이점이 있어 우리 기업의 투자 관심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 '17.9월 기준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수는 376개로 중국, 미국 등에 이어 10번째로 많음 (투자금액 48억불)
-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의 영향으로 멕시코 투자 및 경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으나,
 - 여전히, NAFTA를 통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진출을 위한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 2017년 기준 멕시코는 미국의 제3위 상품교역국(14.3%, 5,570억 달러)



- 콜롬비아·페루·칠레 등과 태평양동맹(PA)*을 체결하는 등 중남미 전략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어

* 중남미 4국(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의 연합으로 중남미 전체 GDP의 36.9%차지

- 미국시장과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우리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예상됨

□ 멕시코는 국제거래 관련 법률을 대폭 개정하였으나, 체계적인 안내서 전무

○ 멕시코 국세청은 '14년 마킬라도라(maquiladora,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 조립, 수출하는 멕시코의 보세 임가공 공장)의 이전가격 산출 방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특수관계자 거래관련 보고서식(Form 76)을 도입하였으며,

* 마킬라도라의 가공비에 대하여 Safe Harbor(6.9%) 또는 APA를 선택하도록 규정

○ '16년에는 OECD BEPS Action Plan 13에 따른 이전가격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OECD 권고안 보다 강화된 국가별보고서와 관련 규칙*을 제안하는 등

* OECD 권고안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거래금액 한도 등을 허용하였으나, 멕시코는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보고하도록 정함

○ 자국산업 보호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세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서는 전무함

□ 전자세정 구축에 따른 전자세무조사 확대 등 멕시코 세정환경 변화

○ 멕시코 과세당국은 '14년 전자 회계신고 제도 도입과 전자영수증(CFDI) 발행 의무화 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후

- '16.9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무조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임



□ 진출기업을 기업을 위한 최신 세무정보 제공 필요

- 상기와 같이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미국과 중남미 수출의 교두보인 지역으로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나,
 - 이전가격 등 최근의 세법개정 사항과 대내외 세정환경 변화 및 세무 이슈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세무안내 책자는 전무한 실정이며,
 - NAFTA 재협상 및 멕시코 정권교체 등으로 향후 멕시코의 세제 및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 멕시코 진출 우리기업에게 이전가격 등의 개정사항 및 과세 동향,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 세무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할 필요성이 높음

※ 멕시코 관련 세무안내 책자는 2010년 출간본이 최종본이며, 대폭 개정된 멕시코 세제관련 내용과 이전가격세제 관련 내용은 미 반영되어 있어, 개정판의 조속한 발간이 필요

나. 책자의 구성과 범위

- 제 1장은 멕시코의 개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 제 2장에는 마킬라도라의 고정사업장 이슈, 전자영수증 제도 및 전자세무조사 확대 및 강화된 이전가격 보고 규정 등 멕시코의 최신 세무상 이슈들과 우리 진출기업에 미치는 시사점을 서술하였으며,
- 제 3장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멕시코의 조세개혁의 주요 내용과 법인·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멕시코의 주요 세목을 설명하였음



- 제 4장에서는 멕시코 국제조세 분야(이전가격세제)의 개정으로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전가격 문제 및 APA·MAP 관련 전반적인 내용과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멕시코 진출 기업에게 참고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 제 5장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멕시코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수출입프로그램인 IMMEX·VAT Certification·PROSEC 내용을 서술하였고,
- 제 6장에서는 멕시코의 불복제도 및 절차에 대해 서술하였음
- 제 7장에서는 NAFTA 원산지 규정과 최근 NAFTA 재협상이 멕시코 경제와 우리진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 제 8장에서는 멕시코의 투자 환경 및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진출형태 및 방법 위주로 상세히 서술하였음
- 그리고 마지막인 부록에는 멕시코 진출 시 알아야 할 각종 내용을 사이트와 전문기관 등에서 수집하여 제공하였음



2 - 멕시코 개관1)

가.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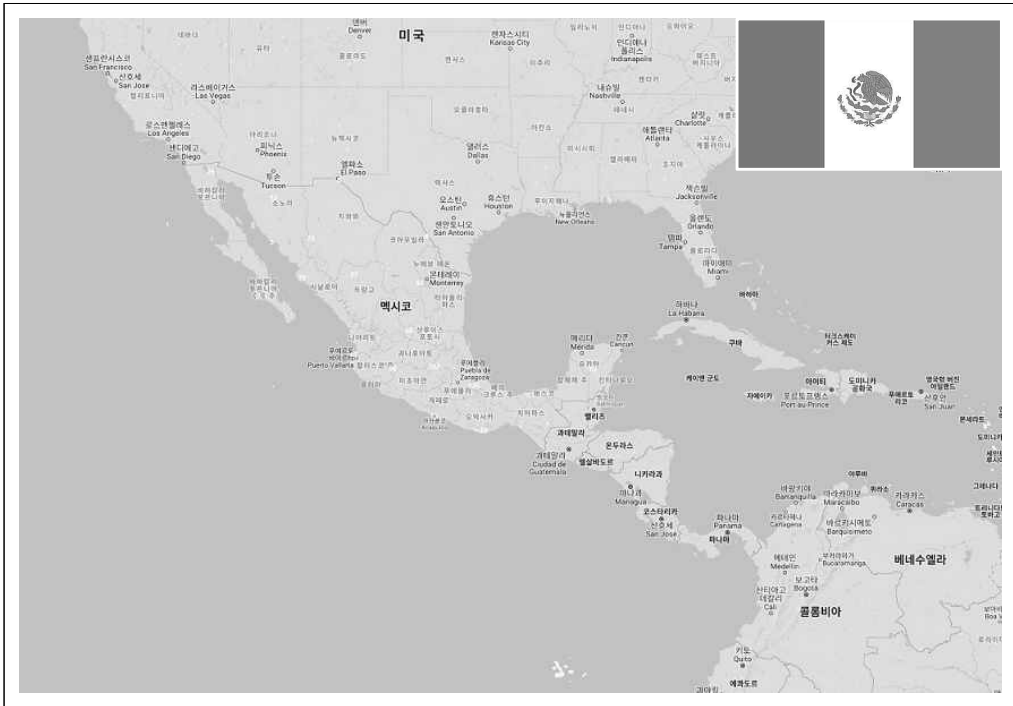
국 명	멕시코 합중국 (United Mexican States)
위 치	북으로는 미국과 접경(3,152km), 남으로는 과테말라 및 벨리즈와 접경
면 적	196만km ² (한반도의 9배, 세계14위)
기 후	저지대는 고온 다습, 고지대는 온난 건조
수 도	멕시코시티 (면적 1,495km ² , 해발 2,240m)
인 구	1억3천만명(2018년)
주요도시	멕시코 시티(제1도시/2,099만 명), 과달라하라(제2도시/484만 명), 몬테레이(제3도시/451만 명)
민 족	혼혈(메스티조) 62%, 원주민(인디오)28%, 기타(대부분 백인)10%
종 교	가톨릭 89%, 기독교 6%, 기타 5%
언 어	스페인어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건국(독립)일	1810.09.16(스페인으로부터 독립선언)
국가원수	엔리케 페나 니에토 (2012.12.01~2018.11.30)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2018.12.01 취임 예정)
입 법 부	양원제(상원 128석, 하원 500석)
정 당	여당 : 제도혁명당(PRI) / 야당 : 국민행동당(PAN), 민주혁명당(PRD)
화폐단위	페소(\$) / peso
시 차	한국보다 14시간 늦음
환 율	1페소 ≙ 57.48원 / 1달러 ≙ 19.44페소

1) 외교부, KOTRA 자료 참고 작성



나. 위치

- 남서아메리카, 북위 23.75도, 서경 102.4동에 위치하며, 주요 도시로는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몬테레이가 있음



다.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구	백만 명	125.4	127	128.6	130.2
명목GDP	십억 달러	1,298.0	1,152.0	1,046.5	1,148.2
1인당 명목GDP	달러	10,350.85	9,009.28	8,414.9	8,958.5
실질성장률	%	2.3	2.7	2.0	1.9



주요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실업률	%	4.8	4.4	3.9	4.4
소비자물가상승률	%	4.1	2.1	3.3	3.0
재정수지(GDP대비)	%	-3.2	-3.4	-2.6	-1.9
총수출	백만 달러	397,650	380,976	374,296	406,499
총수입	백만 달러	400,440	395,573	387,369	417,291
무역수지	백만 달러	-2,790	-14,597	-13,073	-10,792
경상수지	백만 달러	-23,125	-28,847	-22,972	-24,997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4.72	17.21	20.73	17.65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2.8	70.0	22.1	39.8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85.4	346.4	289.6	224.9

* 자료원 : KOTRA, 「2018 멕시코 진출전략」

3 —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현황 —

□ 한-멕시코 교역 동향

- 멕시코는 1990년대 이후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 하면서 제품 생산을 위한 자본재와 원자재 수출이 급증하였으며, 17년 현재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37.3%로, 중남미에서는 브라질(19.5%)보다 큰 수출 시장이며, 무역흑자 기준으로도 중남미 최대 무역흑자 창출국가임



(단위 : 백만 달러)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흑자
2017년	10,932	4,401	6,531
2016년	9,721	3,695	6,025
2015년	10,892	3,464	7,420
2014년	10,866	3,268	7,578
2013년	9,727	2,310	7,426
2012년	9,042	2,591	6,450
2011년	9,723	2,316	7,413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입 품목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전기제품, 자동차부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멕시코로부터의 광석, 석유 등 지하자원 수입이 많음

수출품목	전기제품, 자동차부품, 기계 및 컴퓨터, 선박, 플라스틱, 철강제품, 공구 등
수입품목	광석, 석유 및 석탄, 자동차부품, 소금 및 토석, 동(구리), 등

□ 對멕시코 투자 현황

○ 한국의 멕시코 투자 추이

한국의 對멕시코 투자는 1991년부터 본격화되어 1994년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7년 3월	대멕시코 송금 31건, 진출 5개사, 6,914만 달러
2016년	대멕시코 송금 276건, 진출 31개사, 4억 3,427만 달러
2015년	대멕시코 송금 326건, 진출 68개사, 9억 9,328만 달러
2014년	대멕시코 송금 98건, 진출 32개사, 7억 5,795만 달러
2013년	대멕시코 송금 52건, 진출 14개사, 6억 9,095만 달러
2012년	대멕시코 송금 46건, 진출 8개사, 5억 1,461만 달러

* 자료원 : KOTRA



○ 한국기업의 對멕시코 진출 현황

한국기업들의 경우 삼성, 엘지, 대우전자를 비롯해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으며, 대기업을 진출함에 따라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하는 경우가 많음

2016년 하반기 기아자동차의 멕시코 공장 가동이 본격화 되었으며 2017년 3월 GS칼텍스가 복합수지공장 가동, 활동을 시작했음

□ 한-멕시코 경제협력 현황

○ 한국 - 멕시코 전자정부 협력(2015.10.)

한국 - 멕시코 정부는 전자정부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국의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

○ 한국 - 멕시코 ‘성실 무역업체 상호 인정 협약’체결 (2014.3.)

자국에서 선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수출국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협약으로, 멕시코 내에서도 세관 검사 시간 단축, 우선 검사 등을 통해 통관 혜택을 받게 됨

멕시코 세무 이슈

II

1. 좌파 민족주의 정권 출범으로 세무상 불확실성 고조 / 12
2. 마킬라도라 고정사업상 판정 및 이전가격 결정방법 / 13
3. 멕시코 자회사와 다국적 모회사 간 원가분담 이슈(RMF 2016) / 16
4. 이전가격 보고의무 강화 / 18
5. 전자 영수증 제도 확대 및 / 19



1 좌파 민족주의 정권 출범으로 세무상 불확실성 고조

□ 멕시코 정권 교체

- '18년 멕시코 대선 결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AMLO)가 당선되어 89년 만에 첫 좌파정권 출범함

오브라도르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 공공안전부 설립, 독립 검찰청 설립, 근로자 급여 상향 추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추진, 노인 및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공약하고 있어 멕시코 정치·경제의 급격한 변화가 전망됨

- 특히, 중남미 2위의 경제규모를 보유한 멕시코는 그간 무역, 이민, 마약 범죄, 외교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경장벽, 이민, 무역 등의 분야에서 기존 틀을 흔들면서 양국 관계는 장기간 경색 상태에 있으나,

- 신임 오브라도르 정부는 미국과의 선거과정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정립을 공언한 만큼 미국과 관계개선에 실패할 경우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멕시코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멕시코는 미국의 연간 교역액은 6천억 달러를 웃돌며 멕시코 수출 중 미국에 대한 비중이 약 80%임

- 또한, '경제적 민족주의자'란 평가를 받는 오브라도르는 대선 국면에서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으며, 현 멕시코 정부가 진행중인 NAFTA 재협상 내용을 파기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멕시코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과 NAFTA를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의 이점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나, 새로운 멕시코 정부는 재정확대 등을 위한 세율인상 및 현재 진행중인 NAFTA 재협상도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멕시코 시장상황에 대한 진출기업들의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됨

2 마킬라도라 고정사업상 판정 및 이전가격 결정방법

□ 고정사업장의 정의 (소득세법 제2조)

- 기업활동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는 또는 독립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사업장을 의미함

-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예시

- 연락사무소의 비즈니스 활동(고객발굴, 고객과 계약협상 및 조건 합의, 재화 및 용역 직간접제공 등)
- 지사가 허용받은 범위 이외의 영업활동
- 현지 투자법인이 대가없이 본사 이윤목적 활동 수행
-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관련 감독활동 : 183일초과하는 경우
- 본사파견 대규모 인원 멕시코 특정프로젝트 수행 등

※ 위와 같은 활동 등에 따라 멕시코 현지법인뿐만 아니라 국외 본사에도 개념상 멕시코 과세 당국의 과세가 가능함(징벌적 과세포함)

□ 마킬라도라의 고정사업장 판정

- 비거주자인 외국인 사업주는 멕시코 내에 마킬라도라를 운영하며 원자재와 부품뿐만 아니라 기계와 장비 일부도 소유·제공하며 위탁 하에 공급하고 있으나 IMMEX 제도에 따라 고정사업장 지정 면제뿐만 아니라, 이전가격 규정, 소득세율 경감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누려왔음
- 하지만, 2014년 세제개혁 이후 마킬라도라가 이전과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아래의 요건을 엄중히 지켜야 함
 - 모든 수익이 마킬라도라 서비스 수출로 인한 것
 - 완성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마킬라도라 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보지 않음
 - 마킬라도라의 다른 활동에 따른 수익들(국내시장 판매, 유통활동 등)은 수출활동에서 분리
 - 수입의 100%가 마킬라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비거주자는 고정사업장 면제 혜택과 그 외 마킬라도라의 세제혜택을 잃게 됨
 - 마킬라도라는 오직 위탁받은 재고만 보유해야 함
 - 계약생산의 수행은 허용되지 않음
 - 마킬라도라내의 고정자산의 최소 30%는 국외 주사업자가 소유
 - 2010년 이전부터 마킬라도라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2년간의 유예를 주어 2016년1월1일부터 적용
 - 2014년 7월1일부터 마킬라도라에 원자재 및 부품 등을 제공하면서 마킬라도라 활동과 관계없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외국회사들에 대해 더 이상 고정사업장 면제혜택을 주지 않음
 - 과세당국은 완성된 물품의 판매나 유통은 마킬라도라의 자격을 갖춘 생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힘



- '14년 개정 소득세법은 마킬라산업을 운영하는 외국회사의 거주지국이 멕시코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을 경우 과세대상소득 산출을 위한 이전 가격방법을 세이프하버(Safe Habor) 또는 APA상 결정된 방법을 사용해야 멕시코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 마킬라도라의 이전가격 산출방법

- 마킬라도라의 과세대상소득 산출방법은 Safe harbor와 APA 두가지만 인정, 나머지 기존 방법들은 모두 폐지됨

과세대상소득 산출방법	내 용
세이프하버 (Safe Habor) → ①,② 중 큰 값	① 마킬라도라 활동에 사용된 자산의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 자산법령에 따라 결정 (인플레이션, 감가상각 포함) · 해당연도 마킬라도라 운영에 사용된 모든 자산 포함 · 국외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고정자산과 재고 포함 · 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으로 리스된 자산은 제외 · 마킬라도라와 非마킬라도라의 공동사용자산의 안분은 과세당국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 짐 <hr/> ② 마킬라도라의 운영원가와 비용의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으로 결정 · 원가구성 제외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전체 매입금액이 매출원가 대신 사용될 때 b. 회계 상 감가상각 대신 세법상 감가상각이 사용된 때 c. 예외적이거나 비경상적 비용(멕시코 GAAP에 의거함) d. 인플레이션 조정 e. 금융비용
APA	과세당국과 APA를 통해 사전 승인된 방법



□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 멕시코는 마킬라도라 고정사업장 판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마킬라도라를 통해 멕시코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사업활동 내용, 수익 발생 비율 및 고정자산 보유 비율 등 고정사업장 면제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
- 또한, 멕시코는 마킬라도라 이전가격 결정 방법을 세이프하버(Safe harbor)와 APA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 2016.10월 미국 국세청(IRS)는 멕시코 내 마킬라도라를 운영하는 미국 납세자는 APA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발표하였으므로, 미국 법인을 통해 멕시코에 우회진출하는 기업은 APA를 통해 이전가격을 결정해야 함에 유의해야함

3

멕시코 자회사와 다국적 모회사 간 원가분담 이슈(RMF 2016)



- 2014년 3월,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비례배분방식(pro rata basis)으로 국외 관계사에 배부된 비용에 관해 특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세무당국은 해당경비배분을 인정해야한다고 최종 판결하였으며,
 - 특정 조건은 다음과 같음
 - 해당지출이 사업과 연결된 이익창출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증빙
 -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거래라는 증빙



-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제출
- 근거서류(지출관련조업(operation)종류,계약정보,이전가격정보)
- 경비배분이 세무회계상 객관적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서류구비

(1) 관련 사건개요

- 멕시코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의 멕시코 자회사인 SC Johnson And Son, S.A de C.V (SCJAS)가 모회사에 지급한 원가분담 약정에 따른 경비를 부인함
 - SCJAS는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014년 3월, 멕시코 연방 대법원에서 승소함

(2) 멕시코 과세당국의 과세 근거

- 멕시코 국세청은 소득세법 28조(다음은 불공제 사항이다) 18항 “멕시코 거주 법인·고정사업장 또는 개인이 아닌 자에게 해외에서 발생한 경비의 배분관련 지출.”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며,
- 상기 조항은 1958년 신설이후 변함없이 다국적기업의 경비배분 관련 비공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임

□ 세무조례(RMF : Resolucion Miscellanea Fiscal2016) 발표

- 대법원이 판결 후 멕시코 국세청(SAT)은 해당 비용의 공제를 가능하게 하는 세무조례(RMF : Resolucion Miscellanea Fiscal2016)를 발표하였고, 추가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공표(RMF3.3.1.27)
 - 외국소재법인 해당국가가 멕시코와 정보교환협정 체결국일 것
 - 해당 용역이 실질적으로 제공되었다는 명백한 증거
 - 소득세법179조 및 OECD TP가이드라인 기준한 계약서 구비



□ 우리기업의 시사점

- 멕시코 과세당국은 세무조례(RMF2016)을 통해 모기업과 자회사 간 원가분담 시 공제가능한 요건 등을 공포 하였으나, 공제 요건이 매우 불확실하여 향후 세무조사 시 다국적기업의 경비 배분 비용의 공제여부는 각 케이스별로 추가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
- 멕시코 진출 자회사와 국내 모기업간의 원가분담 비용 결정 시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관련 계약서 및 증빙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4 이전가격 보고의무 강화

□ 도입 배경

- 멕시코는 OECD 및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정보교환에 대한 협조와 관련하여 도달된 국제적 합의에 참여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입장
- 이에 따라 멕시코는 소득세법 76-A조를 신설하여 연방세법 32-H조 1에서 4항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전가격에 관련된 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함
 - 제출기한 : 해당 연도의 다음해 12월까지
 - 과태료 : 소득세법 76-A조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MXN 140,540 ~ 200,090 페소 부과(FFC Article 81)



□ 보고의무 강화의 영향

- 이번 정보 공개 의무는 멕시코의 납세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라할 수 없고, 다자간의 합의 도출 노력에 의한 결과로서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 자명함
- 새로운 정보 공개 의무는 전 세계 과세당국 사이에 다자간 자동적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작 단계로서 다른 참여국도 이 내용을 법령에 포함시켜야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멕시코의 과세 당국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국의 과세 당국에도 관련 정보를 제출하게 되는 만큼 정보의 기밀 유지의 중요성이 대두됨

5

전자영수증 제도 및 전자세무조사 확대



가. 멕시코 국세청(SAT)의 세무 자료 전산화

- 멕시코 국세청은 전자회계장부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자영수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조세행정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음

(1) 세무 자료의 전산화

□ 전자 회계장부 제출 의무

- 2014년 세계 개혁으로 납세자에게 국세청웹사이트를 통해 회계 장부를 전자적으로 업로드 할 의무 부여



- 법적근거 : 연방세법(federal tax code)28조

- 제출대상 서류
 - 계정과목 분류표(chart of accounts)
 - 월별 시산표(trial balance)

- 제출기한
 - 2015.1월부터 의무발생납세자 : 15.04.30까지
 - 법인·개인 : 해당 월의 2달 뒤 3~5일 내
 - 상장회사 : 해당 분기의 2달 뒤 3일 내
 - 경제 주요 분야 법인·개인 : 해당 반기의 2달 뒤 3~5일 내

- 제출방법
 - 파일을 선택하여 유효성 검사를 한 뒤 첨부하고 전자서명도 첨부하여 업로드
 - 월별 계정은 xml 파일 형식이어야 하며 .zip파일로 압축하여 '전자 세무 우편함(tax mail box)'을 통해 제출

- 전자 세무우편함(Tax mail box, Buzon Tributario) 운영
 -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납세자는 세무 우편함으로 신고 및 요청(이전가격관련APA 상담요청 등 p.47 참조) 자료 제출, 이의신청 등을 하고, 과세당국은 필요한 답변과 납세자에게 발송할 고지, 서류 요청서 등을 통지 함



○ 전자 세무우편함 확인 의무 부여

- 법인은 2014년 6월30일부터, 개인은 2015년 1월1일부터 전자고지 창구를 등록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음
- 국세청 사이트에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배정된 전자 창구에 접속하여 전자 세무우편함 이용 가능
- 국세청으로부터 전자고지서를 받은 후 3일이 지나면 자동 통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함

□ 전자세금계산서(CFDI/Factura Electronica) 발행 의무

○ 2014년부터 모든 납세자(개인, 법인)에게 발행의무

- 전자서명(E.Firma)* 등록 필수(신청서식 : 부록 p.195 참조)
- 세무서 방문신청 또는 전자 모듈 설치로 발급
- 해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 및 계산서 상 기재대상 항목 등을 확대하고 있음

○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시 전자인증(CSD,Digital Certificate Seal)이 필수이며 다음의 경우 국세청은 전자인증을 무효화

- 한 회기 중 연속 3번이상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비연속적으로 6번 이상 세금신고를 누락할 경우
- 세무감사나 압류기간 중 납세자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행방불명될 때
- 비정상적 영수증 발견 시
- 납세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멕시코)

○ 전자 세금계산서 샘플

FACTURA

Folio fiscal: Eb656g65-6515-615d-m456-hgg0236a0y55

COLEGIO WILSON
RFC: CWI990512MNX

No. de Serie de Certificado del SAT: 00001000000103082037
No. de Serie del CSD del emisor: 00001000000102559607

Fecha y Hora de certificación: 2012-09-29 T 10:35:39
Fecha y Hora de emisión del CFDI: 2012-09-29 T 10:35:38

Receptor: FELIPE VILLANUEVA No. 362 COL. ERMITA DELEGACION ALVARO OBREGON C.P. 01070 TEL. 55 8956 7878 MÉXICO, D.F.
RFC: DIGV-650822-6KLL

Lugar y fecha de elaboración: México, D.F. a 07 de septiembre de 2012

CANTIDAD	U. DE MEDIDA	DE DESCRIPCIÓN	P. UNITARIO	IMPORTE
1	COLEGATURA MENSUAL DE OCTUBRE 2012	ALUMNO: ALMA DELIA REYES MONTES CURP: REIA595313M DPYNL04 NIVEL EDUCATIVO: SEGUNDO DE SECUNDARIA.	\$ 2,250.00	\$ 2,250.00
SUBTOTAL				\$ 2,250.00
IVA				0.00
TOTAL				\$ 2,250.00

TOTAL CON LETRA: DOS MIL DOSCIENTOS CINCUENTA PESOS 00/100 M.N.

MÉTODO DE PAGO: CHEQUE NOMINATIVO
FORMA DE PAGO: PAGO EN UNA SOLA EXHIBICIÓN

Sello digital del emisor del CFDI:
Sello digital del SAT:

Cadena original del complemento de certificación digital del SAT:

Este documento es una representación impresa de un CFDI

전자세금계산서(CFDI/Factura Electronica) 발행 의무 지속 확대

나. 전자세무조사 (Fast track, Electronic review)

□ 운영현황

○ 도입배경

-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기업 회계장부 업로드 신고 의무, 전자 세무신고 등 전자 세무조사 환경 기반 구축으로 전자세무조사'Fast track' 도입



○ 조사방식

- 전통적 방식의 세무조사의 평균 조사기간 1년 6개월~ 2년이나, 전자 세무조사기간은 약 3개월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신고 등 전자적으로 수집된 정보 분석에 근거하여 과세
- 전자 세무우편함(Buzon Tributario)으로 납세자에게 과세가 정당인지 여부를 확인

○ 조사대상 선정기준

- 향후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의 세무신고와 SAT의 전자기반으로 구축된 과세자료와의 대사(cross-checking)를 통해 납세자 성실도를 판단하여 선정

○ 운영 현황

- 전자영수증 의무제도 확대 등으로 축적되는 전자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조사도 점차 증가 예정임

다.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

□ 세무당국과의 전산상 불일치를 최대한 해소

- 회계장부의 전산등록 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계정(예 : 외상매입금 (accounts payable) 등) 등에 대한 ERP 시스템 불일치 위험요소 제거

□ 상시적으로 전자세무우편함(Tax mail box, Buzon Tributario)을 열람 하여 과세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등에 성실하고 면밀하게 대응

- 전자창구를 통한 통지서를 발송한지 3일이 지나면 실제 확인 여부와 관계 없이 통지된 것으로 간주

멕시코 조세 제도

Ⅲ

- 1. 조세 제도의 최근 동향 / 26
- 2. 멕시코 조세 체계 / 34
- 3. 법인 소득세 / 35
- 4. 개인소득세 / 44
- 5. 부가가치세 / 55





1 조세 제도의 최근 동향

- 멕시코 정부는 투자촉진 및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2014년과 2016년 대대적인 세법 개정을 실시하였음
- 특히, 2018. 8월 당선된 신임 오브라도르 정부는 89년만에 들어서서는 좌파 정부로 선거과정에서 세율 인상, 다국적기업 규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향후 멕시코 조세제도는 대대적인 개혁이 예상됨

□ 2014년 세제개혁 주요 내용²⁾

- 세율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법인소득세	- 30%세율 유지 - 외국인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율 35%로 증가
개인소득세	- 연소득 500,000페소 이상 세율 증가 - 연소득 300만페소이상 최고세율 35% 적용
부가가치세	- 16%세율이 국가 전역으로 확대됨 - 국경지역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인 11%는 폐지 - 애완동물 매매 및 사료, 껌, 시외버스 및 기차표(시내 교통비는 제외)에 부가세 적용 - 350만 페소를 초과하는 주택 매매에 대해 부가세 신설

- 주주배당세 신설

2013년까지는 세후이익(CUFIN)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았으나, 2014년부터 10%의 주주배당세를 신설함

2) <https://jyseminar.files.wordpress.com/2014/07/eba995ec8b9cecbd94ec9d98-ec84b8ebacb4eca09ceb8f841.pdf>



-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가 월별로 주주배당세를 납부해야하며 이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 비거주자와 개인에 대해서만 추가과세되며 세후이익에 대한 배당은 법인단계에서는 추가과세되지 않음
- **주식거래 소득세 신설**
 - 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소득의 10%를 소득세로 과세함. 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향후 소득에서 공제
 - **단일세율(IETU) 폐지**
 - 자산세를 대체해 2008년부터 시행되어오던 단일세율법인세(17.5%)를 폐지
 - **현금예금세(IDE) 폐지**
 - 자금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계좌에 월 15,000페소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에 3% 세율로 적용되어오던 현금예금세를 징수 세액의 실효성 부족으로 2014년부터 폐지함
 - 은행계좌에 대한 새로운 보고 의무로 대체됨(금융기관이 매년 개인과 법인계좌에 월 15,000페소이상 입금상황 보고의무)
 - **수출용 부품에 대한 보세제도(IMMEX) 개정**
 - 수출목적 임시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16% 부가세 면제 폐지
 - 멕시코에서 임가공해서 수출하기 위한 부품 수입에 대해 평균적으로 18개월 간 관세 및 부가세 납부를 유예해주었던 IMMEX제도를 VAT Certification 방법으로 대체



○ 광물 판매세 신설

- 정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광물 판매 또는 수출에 의한 매출세후 이익의 7.5%를 광물판매세로 부과
- 광물 판매 및 수출에 대한 세금에 대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분배 규정을 명문화하는 한편, 주정부는 매 분기마다 기금 수입 및 지출현황을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함

○ 특별소비세(IEPS) 개정

- 가당음료(설탕 추출물과 가루, 시럽 포함) 판매에 대해 리터당 1페소의 특별소비세를 생산회사에 신규 부과
- 튀긴 식품, 과자, 초콜릿류, 아이스크림 등 275kcal/100g 이상의 식품에 8%의 특별소비세를 생산 회사에 부과
- 항공유에 리터당 12.4페소의 특별소비세 신설
- 화석연료 판매에 이산화탄소 레벨에 따른 세율로 과세(탄소세)
- 농약판매에 독성정도에 따른 세율로 과세

○ 조세감면 혜택 및 면제범위 축소

- 법인세의 근로자 복리 후생비용 공제한도 축소 : 급여성 비과세 소득 (초과수당, 크리스마스 보너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음식쿠폰 등)에 대해 53%만 공제 인정
 - 현실적으로 고용주가 종업원과 체결한 근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급이 필요한 급여성 항목으로 위헌신청(Amparo) 증가
 - 고정자산 투자 등에 대한 가속상각 규정폐지 : 대체 에너지 산업도 포함 하며 정액상각만 인정 (2016년 제한적, 임시적으로 가속상각 허용)
 - 업무용차량 구매, 렌트 시 공제 축소 : 자동차 구매 시 13만 페소(약 1만달러)까지, 렌트 시 하루 200페소(약 15.4달러)까지만 공제가능
- * '16년 세법개정 시 중소기업(매출5천만~1억페소)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75,000페소로 상향 조정함



- 은퇴연금 계좌 불입금 불공제 : 은퇴연금 실제 지급액만 인정
- 외국인에 대한 숙박/컨벤션, 학자금 주택매매임대 등에 적용되어오던 부가가치세 0% 세율 혜택을 취소

○ 전자 세무환경 구축을 위한 의무규정 도입

- 전자세금계산서(Factura)를 전면적으로 적용
- 전자서명(Certificado de Sello Digital, Digital seal certificates)등록 의무화
- 전자 세무우편함(Buzon Tributario) 확인의무화 : 법인은 14년 6월 30일부터, 개인은 15년 1월 1일부터 등록 의무 부여

○ 세무감사 보고의무(Dictamen Fiscal) 폐지

회계감사 보고서와는 별도로 세무상 적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 국세청에 제출하는 문서로 2014년 세법개정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다음 요건 충족 시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상 익금총액이 100,000,000페소 초과하는 경우 · 자산총액이 79,000,000페소 초과하는 경우 ·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 내 함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및 연간 세금신고, 납부금액의 적정성 · 현금주의에 따라 적절하게 부가세 신고 납부되었는지 여부 · 세무조정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 이전가격문서화 준비여부를 회계사(CPA)가 확인,공개 · 주요 매출내역(국내매출, 수출, 제조, 서비스 등) · 월가계산의 적정성 여부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의 적정성 · 이전가격분석(Transfer Pricing Study)의 주요 내용 · 국내외 모든 기업 내부거래를 부록에 공개해야 함



- 세무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면제
- 미제출한 경우 사후 문제발생 시 해당 공인회계사(CPA)를 징계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최근 이전가격(TP)문서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외부공인회계사의 규정준수에 더 많은 책임 지움)

□ 2016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 개정 배경

2016년 세법 개정은 투자촉진에 중점을 두어 세율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전가격 정보공개 요구 확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OECD의 BEPS Action Plan 13이 반영된 소득세법76조 A항을 신설하여 Master file, Local file, Country by Country report 등 새로운 과세자료 보고 의무를 201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

○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규칙 제안

○ 자산의 가속상각 제한적·일시적 허용

- 적용기업 : 중소기업(수입이 50백만페소 이하)
- 적용대상 : 교통 등 인프라 확장과 개발, 에너지 생산 및 보급 목적 투자
- 단, 2016년과 2017년에 행해지는 투자에 한해서만 임시적으로 허용

○ 배당과 재투자 이익금에 대한 공제

기업이익의 재투자 독려를 위한 일시적 혜택으로 2014-2016년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배당이 재투자 되었을 경우 법인의 주주로서 멕시코 거주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

- 세액공제 비율 : 10%의 배당세에 대해 아래의 비율로 세액공제

재투자로 배분이연된 배당·이익 지급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배당·이익에 적용된 세액공제율	1%	2%	5%



- 적용대상 : 주식시장법에 따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에게 적용되며 2014~16년 재투자 받은 이익과 배당에 대해 회사 장부에 기록해야 함

○ 전기 산업분야의 과소자본세제 제외

- 에너지 생산 분야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는 과소자본세제 계산시 부채에서 제외 됨

○ 하도급계약³⁾의 수급사업주가 용역근로자에게 용역대가의 지급과 세금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에 관한 신고와 정보교환 의무를 부여

- 소득세법상 원사업주가 수급사업주로부터 수급사업주가 용역근로자에게 용역수행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원사업주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서비스수수료를 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하게 제한함

*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에게 제출할 문서는 용역근로자에게 급여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용역근로자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수급사업자의 사회보장세 납부내역임

○ 원사업주가 관련 문서를 수급사업주로부터 확보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서비스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

○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 신설

- 직전 3년 동안의 적격투자과 연구개발비용 평균보다 증가된 금액의 30%를 10년 동안 이월 공제
- 적용대상 : 멕시코 역내에서 발생한 투자와 비용만 공제대상임
- 적용요건 : 투자와 연구개발 비용은 제품, 원재료,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과 직접 연관이 있어야 함

3)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을 받는 원사업주와 하도급계약 근로자를 제공하는 수급사업주로 구분됨

○ 국외 송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⁴⁾

- 2014.12.31일까지 멕시코 개인과 법인이 특혜과세체제 국가를 포함하여 해외에 투자한 미신고 투자금을 2016.6월까지 멕시코로 송금하여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 적용요건
 - 2016년 6월까지 멕시코로 송금이 되어야 하고, 송금이후 멕시코에 최소 3년이상 자금이 남아있어야 함
 - 회사가 송금한 펀드는 고정자산, 기술연구개발, 제3자의 대여금 지불 등에 사용되어 재투자 되어야함
 - 조세피난처 펀드도 대상에 포함되며 형식적 세금의무가 수행된 것으로 여겨져 과태료 및 가산세가 면제되고 송금된지 15일 내에 지불된 세금은 공제가가능함
- 인센티브 : 과태료, 가산금 등 면제 및 조세피난처 투자를 보고하지 않은 개인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범죄연루 면할 수 있음

□ 2017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 정부 보조 납세자의 일정정도의 현금수령액 과세 제외

- 적용요건
 - 수익자의 공개목록이 있는 경우
 - 수익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되는 자금인 경우
 - 과세 당국에서 수익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납세자가 보조금과 함께 제공받은 자산 또는 용역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4) 한국국세청이 2015.10월~16.03월까지 실시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와 유사한 제도



○ 인력공급업체의 손비적용 요건 강화

- 인력공급업체는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시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료를 요청·확보해야 함
 - 인력공급 업체 소속 직원의 급여 납부 CFDI⁵⁾
 - 수령확인증
 - 급여지불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한 신고서
 - 고용주의 IMSS⁶⁾ 납부증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개정

- 최근 3년의 연구개발 비용의 평균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 적용함
- 다른 세법상 인센티브와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으며, 매월 2월까지 연구개발비 내역을 제출해야 함

○ 근로소득 신고 간편화

- 적용대상 : 멕시코의 개인납세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 중 한 근무지에서만 급여를 받은 경우
- 20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개인소득세 신고 면제
 - * 기존 세법상 근로소득자는 소득액이 MXN 400,000 페소 이상일 경우 의무 신고
- 공제내역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를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서 제출 마감일에 대한 규정(익년 4월 30일)은 폐지되고 연중 어느 때든 제출 가능함
- 법적근거
 - FCC(The Federal Tax Code) 6, 17-D, 42
 - LISR(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 Income Tax Law) 150, 151
 - RMF(The Regulation) 2017 2.3.6.

5) Digital Invoices & Documents

6)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 인력공급업체(Outsourcing) 관련 부가세 환급 규정 강화

- 해당 전자계산서(CFDI)를 납부하며 발생한 부가세 대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체가 이행하는 월별 부가세 신고서 및 납부증을 확보해야 함

2 - 멕시코 조세 체계

□ 개관

멕시코의 주요 조세는 연방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과세권이 연방세에 집중되어 있어 연방세가 조세의 대부분을 차지함

□ 주요 연방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 세목은 연방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는 월별 신고 후 추가적으로 연간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세 목	납세의무자	세율(%)	월별 신고기한	연신고 / 납부기한
법인소득세	법인/고정사업장	30	익월 17일	익년 3.31.
개인소득세	개인/고정사업장	1.92~35	익월 17일	익년 4.30.
부가가치세	법인/개인사업자	16	익월 17일	-
생산소비특별세	특정재화/용역수혜자	3~160	익월 17일	-



□ 주요 지방세

대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급여세가 있으며, 급여세의 경우 세율이 각 지방마다 상이함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율	월별 신고기한
부동산취득세	부동산취득인	3.1~4.5	계약체결 익월 15일
재 산 세	부동산보유인	0.2~0.4	격월 10일
급 여 세	고용주	3 ⁷⁾	익월 17일

3 - 법인 소득세 

가. 법인소득세 개요

- 멕시코의 법인 소득세는 한국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합쳐놓은 개념임

□ 세율

- 법인세 대해서는 연방법인세율에 따라 30% 세율로 과세함
소득세법상 최대 법인세율은 28%로 규정되고 있으나, 2014년 세계개혁 시
경과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 30%를 유지하고 있음

7) 급여세는 지방마다 다르며 누에보레온주의 급여세는 3%임



□ 과세대상 (개인 및 법인 : ISR 제1조)

구 분	과세대상소득
멕시코 거주자 ⁸⁾	소득원의 소재에 관계없이 전세계 소득
고정사업장 있는 외국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멕시코에 소득이 있는 외국인	멕시코의 소득원천로부터의 소득 (고정사업장 유무 및 고정사업장에 귀속여부무관)

□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 과세기간 : 항상 12월 31일에 종결하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신고기한 : 과세열도말로부터 3개월의 마지막날

나. 법인소득세 계산구조

□ 계산흐름

계산 흐름	비 고
세무상 익금총액(Gross Taxable Income)	
세무상 손금총액(Authorized Deductions)	
= 법인세 과세대상(Result)	
근로자 이윤분배제도(Employee profit sharing)	100% 세무상 공제 가능
= 과세표준(Taxable profits)	
- 전기 세무상 누적결손금	10년간 이연
= 확정 과세표준	
× 법인세율(30%)	
= 확정 법인세액(Income tax due)	
예납 법인세액(Monthly IT estimated payment)	법인설립 첫째 미적용
= 확정 법인세 납부세액(Income tax payable)	

8) 멕시코 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그들의 주된 관리장소가 멕시코일 경우 멕시코 거주자로 간주



□ **예납법인세**

- 멕시코의 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전 회계연도 이윤율을 토대로 잠정 예납 (Pago Provisional)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매월 세무상 익금총액에 직전연도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통해 계산된 소득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된 법인세 예납금액을 익월 17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예납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 14조에 의하여 전년도 이윤율을 토대로 동년 소득세를 납부하는 선수금 개념으로 규정됨
- 월간 예납법인세 계산 산식(eg. FY 2014)

항 목	구 분	금 액
총 매출액		500,000
소득계수(Coeficiente de Utilidad)	×	이전연도 이윤율(eg.0.1333)
법인세율	×	30%
산출세액	=	19,995
세금환급액	-	5,000
납부세액	=	14,995

○ 납부기한 : 매월 17일

- 예외적으로 재무부 내규(Resolución Miscellanea Fiscal)에 의하여 연방 세금(Impuesto Federal, 소득세(ISR), 부가세(IVA) 등)의 경우 납세자 번호 (RFC :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의 6번째 숫자에 따라 납부일 연장 가능

납세자번호 6번째 숫자	납부기일 연장 일수	비고
1 또는 2로 끝나는 경우	1일	
3 또는 4로 끝나는 경우	2일	
5 또는 6로 끝나는 경우	3일	
7 또는 8로 끝나는 경우	4일	
9 또는 0로 끝나는 경우	5일	



- 납부일과 관련하여 연방조세법(CFF) 12조에 의해 납부일이 금~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납부를 허용

(참고) 소득계수 계산방법 : 직전연도 이윤율 산출

- 연말 세금신고(Declaracion Annual) 이전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이윤율로 산출된 소득계수를 근거로 과세한 이후, 연말에 실제 이윤에 따라 납세액을 조정함
- 이전 회계연도보다 매출이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회계연도의 소득계수를 적용하여 소득세가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 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상계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가 적자인 경우 직전연도 소득계수 반영하지 않고 당해 7월부터 전반기 소득계수 적용 신청 가능
- 소득계수 산출 예시(eg. FY 2013))

항 목	구분	금 액
총 매출액		600,000
판매원가	-	500,000
영업외비용	-	20,020
세전순이익	=	79,980
법인세율	×	30%
산출세액	=	23,994
소득계수(Coeficiente de Utilidad)	=	0.1333(=79,980/600,000)

다. 과세표준 산정

□ 산출방법

-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통상 기업내부의 재무회계 결산을 근거로 세무조정, 즉 세무상 익금과 손금의 산입, 불산입 과정을 거쳐 과세대상 금액을 확정



-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르며,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근로자이윤분배액과 전기이월 결손을 공제하여 과세가능소득*을 산출한 후 세율30%을 적용

* 수익뿐만 아니라 자본 이익, 이자, 로열티, 임대료와 같은 수동적 이익도 과세가능소득에 포함됨

□ 주요 손금 항목

- 매출원가, 매출할인
- 천재지변(Acts of God)에 따른 손실
- 근로자 연금 또는 퇴직펀드 등에 대한 적립금
- 근로자 이윤분배(Employee profit-sharing) 지불금
-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사회보장기금의 회사부담분
- 부채 이자 지불액
- 감가상각, 대손금, 외화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결손과 지불이자
- 회수만기일이 1년 이상 도과한 5,000페소 이상 115,000페소 이하의 회수 불능채권
- 기부금(직전 회계연도 과세소득의 7% 한도)

□ 주요 손금 불산입 항목

-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없는 지출
- 배당금 지불액(배분회사에서 불공제 또는 수령회사의 수입에 포함), profit sharing 금액 계산 시 배당은 수익에 포함되어 계산됨
- 벌금(자연 재해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공제 가능)
-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자산 손실분
- 종업원 책임에 대한 배상 유보금



- 영업권(goodwill)⁹⁾
- 근거리 출장비(회사반경 50km 이내), 식비의 경우 8.5%만 손비 인정
- (Beps project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 조인트벤처, 트러스트, 투자 펀드 또는 특혜과세체제에 대해 지불한 정상가격(Arm's length)이 아닌 비용
- 국외 특수관계자에 지불한 이자, 로열티, 기술용역 수수료에 대해 국외 법인이 투과체제(transparent entity)일 때(주주 또는 구성원이 세금납부의 대상이고, 지불금이 정상가격인 경우는 제외) 또는 수령국가에서 과세되지 않을 때, 해당 지불금은 불공제

□ 인플레이션 조정

- 주로 화폐성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계산하여 과세소득 산정 시 이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 인플레이션 조정 계산 사례

자산/부채	계정과목	9월(법인설립)	10월	11월	12월	평균
화폐성 자산항목	외화예금	200	210	220	250	220
화폐성 부채항목	매입채무	0	0	180	200	95
순화폐성 자산						125
물가지수 조정율*						1.75%
인플레이션 효과						2.19

* 물가지수조정률 = $[(\text{당해연도 연말 물가지수} \div \text{전년도 연말 물가지수}) - 1] \times 100$
 8월말 물가지수 114이고(설립 시에는 설립 직전 월말 기준) 12월말 물가 지수가 116이면, 물가지수조정율은 $[(116 \div 114) - 1] \times 100$ 이므로 1.75%가 됨

9) 영업권은 자산의 실제가치(정상가치, 시장가치)를 넘어선 과도한 지급을 의미하므로 멕시코에서 제3자로부터 매입한 영업권은 세무목적상 손금불산입 항목



- 상기 사례의 경우 순화폐성 자산을 보유한 것이므로 물가상승 시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 효과는 과세소득산정 시 공제
- 순화폐성 부채를 보유한 경우 반대로 회사가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인플레이션 효과를 과세소득에 가산
- 다음 항목과 거래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여 계산함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 고정자산 및 주식(지분)의 양도
 - 금전적 이익과 결손 · 이월된 세금 결손

□ 감가상각

-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상 정액법, 정률법 등 여러가지 합리적인 감가 상각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정액법만 인정함.
- 유·무형자산에 정액법 적용 시 법에 정해진 연간 상각률로 계산되어야만 하며 새로운 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된 때 월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함
-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의 합계에 대해 계산되며 물가지수로 측정된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감가상각액을 계산
- 다음은 특정자산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율의 최대치임

자 산		상각율(%)
빌 딩		5
자 동 차		25
사무 장비		10
컴퓨터	주요장비	30
	보조기기	30
공장과 기계		10
환경 기계과 장비		100



□ 자본적 이익

- 멕시코 세법은 자본이익을 통상적 소득으로 여기고 일반적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있음(공개 시장에서 개인 또는 비거주자의 주식처분은 10%의 세율로 과세)
- 단, 고정자산과 주식,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공제가능 금액을 결정할 때 원래의 비용에 물가연동을 허용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 공제

멕시코 법인이 지불했거나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납부세액은 공제 가능하지만 회사의 전세계 과세소득에 대해 국외원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 한도 있음

○ 결손금 공제

- 사업상 결손은 10년 간 이월공제 가능.
단, 소급공제는 불가하며, 소유권(ownership)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세무상 결손은 유효함
- 대표자 변경전 마지막 3년의 소득이 갱신된 세무 결손 규모보다 작다면 해당 결손은 결손이 발생한 분야와 같은 분야에서 얻은 과세가능이익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

□ 법인의 원천징수

- 멕시코 법인이나 고정사업장에 대한 지출은 원천징수 되지 않음



○ 원천징수일 : 지금일의 다음달 17일 까지

○ 항목별 원천징수 비율

지출항목		원천세율(%)
· 임금, 급여, 기타 보상		0~35
· 수수료	고문 및 이사회 회원	35
	기타 전문용역 수수료	10
· 부동산 리스료		10
· 증권(securities)에 대한 이자		0.6
· 비적격(non-qualified) 증권에 대한 이자		20
· 배당		10
· 기타소득(개인에 대한 일시적 지불금)		20

□ 배당에 대한 추가 과세

○ 멕시코법인의 거주자인 개인과 비거주자인 주주는 2014년 이후 발생한 이익으로 인한 배당에 대해 10%의 배당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배분하는 법인의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주주 단계의 종합과세 없음)

○ 세율

- 배당세는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법인세 과세(30%)한 후 잉여금의 배분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10%를 과세하는 것으로 배당 가능한 세후이익(CUFIN) 외의 다른 원천에서 비롯된 배당이라면 배분 단계에서 30%의 법인세가 과세되며 그로스업(gross-up)을 고려하면 세율은 42.86%에 이르게 됨

* 배당가산 계수(gross-up coefficients) : 1.4286

** 배당세액공제 계수 : 0.4286



○ 유의사항

- 배분된 이익에 지불된 소득세는 배당이 지급된 해와 그다음 2년에 걸쳐 법인소득세에서 공제됨
- 배당세는 2014년 이전 이익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14년 이전 발생한 세후이익잔액(CUFIN balance)에 대해 구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배당 가능한 세후순이익잔액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재계산되므로 배당이 배분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인세계산을 위해 특정계수 (1.4286)로 그로스 업(gross-up)하고, 이 추가적인 법인세는 지급 당해와 이후 2년간 공제됨
- 멕시코 고정사업장이나 자회사가 모법인에 배당을 지급할 때나 이익을 송금할 때도 배당이나 송금액에 10%의 원천세가 과세됨

4 - 개인소득세 -

가. 납세의무자

구 분		과세 대상 소득
거주자	되기 전	멕시코 내에서 발생한 소득
	된 후	전세계 소득
비거주자		멕시코 원천소득에만 과세
과세기간 중 비거주자 된 경우		- 멕시코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 예정납부세액이 확정납부세액으로 간주되어 소득신고 불필요



□ 거주자 판정

- 원칙적으로 멕시코에 주거주지(home)¹⁰⁾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개인이 다른 나라에도 주거주지(home)가 있으나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vital interests) 중심이 멕시코에 있다면 멕시코 거주자로 봄
 -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
 - 1역년 동안의 개인의 소득의 50%이상이 멕시코 원천에서 발생
 - 개인의 전문적 활동의 중심이 멕시코에 있을 때
- 멕시코 국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주자로 간주하며 공무수행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자는 거주일수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봄
- 거주지국 결정을 위한 Tie break rule에 따라 멕시코 거주자로 판명되면 거주지국 지위 변화가 발생하기 전 15일 전부터 거주지국 변경 이후 한 달 이내에 멕시코 과세당국에 알려야 함

나. 신고 납부절차

- 신고기한 : 익년 4월 30일
- 신고 면제기준
 -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MXN 400,000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
 - 다만, 그 소득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연간 소득신고 의무가 있음

10) 멕시코 세법상 주거주지에 대한 정의는 없고, 모든 주거형태를 포함(소유 여부 불문)



○ 신고 납부방법

- 근로소득자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인소득은 원천징수하고, 그 외 소득을 신고 납부할 지 6개월 이상 분납할지(이자포함) 선택가능
- 연간 소득이 MXN 500,000이상인 납세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면제되는 소득과 비과세 항목(고용주가 보전해주는 여비 교통비, 주거 주택 양도 소득, 상속 소득, 상금 등)에 대해 신고해야 함

○ 월별 예납

- 개인사업자(self employed individual)는 월별예납해야하며 월별납부시 멕시코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 송금방식으로 납부해야함
- 멕시코에서 근무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비거주자인 회사의 근로자는 그들의 연간소득을 기초로 계산된 월별예납액을 납부해야하며 멕시코 계좌 개설 후 인터넷 전자 송금방식으로 납부

○ 합산신고

- 원칙적으로 인별 과세 원칙이며, 소득금액이 큰 사람이 배우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합산신고에 따른 혜택은 없음
- 개인의 경우 신고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경우 과세당국의 소명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의해야 함
-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의 소명기간은 15~20일이며 이 기간 동안 소명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함
- 과세제외되는 소득도 연간소득신고 시 포함해야 과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가산세

- 무납부 시 인플레이션 조정을 거친 금액의 55~75%
- 세무조사 기간 중 추정통지서 발부 전 납부 : 가산세의 50% 감면
- 세무 조정으로 결손이 감소된 경우 실제 결손액과 보고된 결손액 차이의 30~40% 가산세 부과
- 지연납부 이자

다. 과세표준의 산정

□ 과세대상 소득 (ISR 제106조)

- 멕시코에 거주하는 개인이 현금이나 현물, 신용, 서비스 등 기타 다른 형태로 수취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며, 거주자인 개인이 600,000페소를 초과하는 대여금, 기부금(선물), 상금을 수취하는 경우 연간 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보고해야함
- 다만, 신탁된 자산의 수입이 과학, 정치, 종교적목적으로 또는 교육 시설과 자선단체를 위해 사용되거나 제176조의III에 적시된 기관에 지원 또는 직계자손의 대학 교육까지를 위한 교육비로 충당될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음

□ 근로소득

- 급여, 임금, 이사의 보수, 보너스, 퇴직금, 상여, 특정 부가혜택, 근로자 이윤분배(Employee profit-sharing)



- 회사가 그들의 국외 근로자나 국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지원금이 부가혜택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
- 비거주자가 멕시코내 고정사업장(고정사업장 없는 경우 포함)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 및 용역제공일 수 183일 이하(토,일요일, 공휴일, 휴가 포함)인 경우 과세 제외
 - 183일 판정시, 날짜계산은 12개월 내에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용역이 183일 이상 제공되었다면 개인소득세 계산시 비거주자 세율을 적용하여 멕시코 내에서 근무한 첫날부터 소득세가 계산됨
- **이사의 보수 (Directors' fee)**
 - 멕시코 거주자나 외국거주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사의 보수는 일반적인 소득세율로 과세됨
 - 지급회사는 특정요건 충족 시 비용 공제 가능
 -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 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은 수익실현시점의 주식의 시장가격과 행사 가격 차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그 이후 주식 양도는 자본이익으로 과세
 - 2004년12월1일 이전 취득한 스톡옵션은 2004년12월31일의 해당주식의 시장가치와 행사시점의 가격의 차이가 행사가격의 10%초과일 경우 자산취득 소득으로 간주되고 그 차이가 10%이하일 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 사업소득

- 사업소득과 전문용역(부동산 임대용역 포함)을 제공하고 받는 순소득(net income)에 대해 과세되며 월별예납해야 함
- 멕시코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멕시코에서 제공된 전문인적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때는 25%로 원천징수 함
- 용역이 멕시코에서 부분적으로만 수행되었다면 멕시코에서 수행된 용역과 관련한 소득만 과세

□ 배당소득

- 2014년 1월1일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원천징수 됨
- 배당지급회사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종결하며 개인은 연간 소득신고 시 배당소득에 대해 보고해야함
- 멕시코 법인은 배당지급전의 소득에 대해 30%로 과세되고 해당 법인세는 최종 소득자의 세무신고 시 공제됨
- 원천징수된 10%는 공제되지 않아 세금부담이 증가함
- 국외거주자가 지급한 배당도 과세대상임
- 국외에서 받은 배당은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며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됨
- 2014년 세제 개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은 과세관할별로 따로 계산이 되며 외국법인의 배분되지 않은 소득은 실제로 배분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음(CFC rule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이자소득

- 멕시코 뮤추얼펀드에 대해 더 엄격해진 규정이 적용되며 주식 양도에 따른 이익과 결손은 소득 신고 시 보고되어야하고 이자로 취급

라. 공제

□ 과세면제 소득

- 아래와 같은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사고, 질병, 보상금
 - 퇴직수당과 공적연금, 사적연금(부분적으로 면제)
 - 멕시코에서 발생한 의료, 치과, 장례비용에 대한 변제
 - 공적기관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연금
 -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13%에 대해 가입한 저축 펀드(멕시코 펀드만 가능)
 - 근로자가 보고하는 적정 수준의 출장 경비
 - 사회복지와 기타혜택으로서 멕시코 정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것

□ 인적공제

- 급여, 수수료, 렌트료, 감가상각비, 이자, 기타 일반항목 등을 포함한 정상적인 비용은 과세가능 순소득을 계산하기위해 총 사업수입 금액에서 공제됨



- 단, 임대수익이 있는 납세자는 실제발생비용 또는 임대소득의 35%만큼 공제 받는 것 중 선택 가능

○ 인적공제 항목

- 의료, 치과, 요양서비스(납세자와 그의 부양가족을 위해 개인수표, 신용카드, 통장 전자송금내역 등으로 지불한 것만 공제되며 현금지급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장례비용(연 최소 급여 한도 : 2015년 최소급여는 하루 MXN70.10)
- 공공기관, 자선복지단체, 예술문화진흥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전년도 과세가능소득의 7% 한도, 인적공제 한도 계산에는 포함안됨)
- 주거지를 위해 멕시코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기지론에 대한 지불이자 (750,000UDIS, 약 MXN3,952,776 한도)
- 개인 퇴직 계좌에 자발적인 불입액(연 최소월급의 5배 또는 당해 연도 과세가능소득의 10% 한도)
- 의료보장 보험료(납세자와 그의 부양가족을 위해 멕시코 보험 회사에 지불한 보험)
- 부양자녀의 등교버스 교통비(등교버스 이용이 필수적이어야 하며 개인 수표, 신용카드, 통장전자송금내역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 학교 수업료(수표, 통장, 전자송금 등으로 지불해야하나 등록비와 물품비는 제외)
 - 취학전 교육기관 : MXN 14,200
 - 초등학교 : MXN 12,900
 - 중학교 : MXN 19,900
 - 기술학교 : MXN 17,100
 - 고등학교 : MXN 24,500

○ 인적공제 한도 : (a)와 (b)중 작은 금액

(a) 1년 총수입의(면제소득포함)의 15%

(b) 연간 최저임금의 5배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 가능함



□ 고용보조금(employment subsidy) 공제

- 고용보조금은 월별로 계산하며, 세액공제(tax credit)형태로 월별 납세의무에서 차감함
- 연간 소득신고 계산시에는 고용보조금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결손 공제

- 사업소득이나 인적전문 용역(professional activities)에서 발생한 결손은 향후 10년간 발생한 같은 종류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

마. 자본이익과 결손

- 주식양도에 따른 수익과 부동산 수익은 자본이익으로 일반적인 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인플레이션 조정이 포함됨
- 주식 양도소득
 - 멕시코 주식시장에서 멕시코 내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시 10%(2014년 이후)로 과세(법인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며 납세자의 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시 공제되지 않음)
 - 납세자는 연도 말 소득신고 시 순 이익으로 계산되며 결손은 향후 10년간 공제가 가능
- 주택 양도소득
 - 2개인 주택 양도차익은 700,000 UDIS* 즉, MXN 3,689,257.60이하만 과세 면제

* 투자단위(Investment units)이며 은행과 신용기관이 고정금리로 대출할 때 사용함 2014.12월 31일 이후 1 UDIS = MXN 5.270368 임



- 주된 주거주택 양도차익은 납세자가 5년이상 거주한 것을 증명하고 공증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면 과세제외

○ 자본이익의 계산

- 멕시코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에 따른 자본이익과 부동산수익은 소득 평균법(income-averaging method)을 사용하여 과세
- 과세가능이익은 각각의 자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산되며, 최대 20년 까지 자산보유연수별로 나누어(divided by the number of years the asset was held) 결과 값을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함
- 누진세율이 총소득에 적용된 후 평균세율이 자본이익의 평균에 적용되며 소득평균법은 사업용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이 소득은 사업소득에 가산됨

○ 자본이익의 결손

- 주식과 부동산은 수익의 계산방법은 같아도 결손은 다르게 취급됨
- 결손이 발생한 해의 세제혜택은 결손세액까지로 제한
- 최대 10년까지 자산보유연수로 나누어 1년에 해당하는 결손액만큼 다른 자산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거나 해당년도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능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제외)
- 해당년도의 나머지 결손은 3년까지 이월공제 가능하며 부동산이나 주식양도에 따른 자본이익에만 상계 공제 가능함
- 비거주자의 주식이나 부동산 처분에 따른 자본이익은 총수입의 25%로 또는 순이익의 35% 중 선택가능하며 순이익의 35%를 선택한 경우 멕시코 거주자인 법적 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바. 이중과세조정과 조세조약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멕시코 거주자 개인은 원천지국에 지불한 외국납부 세액에 대해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멕시코의 납세 의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공제가 가능
- 조세조약 체결국¹¹⁾

Argentina	Hong Kong	Panama
Australia	Hungary	Peru
Austria	Iceland	Poland
Bahrain	India	Portugal
Barbados	Indonesia	Qatar
Belgium	Ireland, Republic of	Romania
Brazil	Israel	Russia
Canada	Italy	Singapore
Chile	Japan	Slovak Republic
China	Jamaica	South Africa
Colombia	Korea, Republic of	Spain
Czech Republic	Kuwait	Sweden
Denmark	Latvia	Switzerland
Ecuador	Lithuania	Turkey
Estonia	Luxembourg	Ukraine
Finland	Malta	United Arab Emirates
France	Netherlands	United Kingdom
Germany	New Zealand	United States
Greece	Norway	Uruguay

11) taxsummaries.pwc.com (2018.12. 기준)



5 부가가치세

가. 개요

□ 납세의무자

- 멕시코 영토 내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 가능한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그룹은 없음(법인세만 납세그룹 가능함)

□ 공급시기

- 재화와 용역 : 현금주의(즉, 납부와 입금기준으로 부가세 계산)
- 수입 재화 : 재화가 세관에 신고 될 때

□ 세율

- 세율 : 16% 단일세율
 - 일부 활동의 경우 영세율 적용(수출재화, 특정 수출되는 용역, 가공하지 않은 음식과 우유, 특허 받은 약품)
-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매출세액에 대해 부가세 납부, 매출세액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세 환급 가능



□ 과세대상 거래

- 납세의무자가 멕시코에 내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이용과 일시적사용의 허여(grant)
- (수입자의 지위와 상관없이) 재화의 수입
- 비거주자로부터 멕시코 거주자의 무형자산 매입
- 비거주자가 공급한 무형자산을 멕시코 영토에서 일시적사용·향유
- 해외에서 수입된 유형자산을 멕시코 영토에서 일시적사용·향유
- 비거주자가 공급한 용역을 멕시코 영토에서 사용·향유(국제운송용역 제외)
- 대리납부(reverse charge)대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
 -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부가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다음의 경우를 포함
 - 회사가 개인에게 지불한 수수료(fees), 커미션(commissions)
 - 스크랩 류의 취득(acquisitions of scrap material)
 - 재화의 육상운송
 - 국외 거주자로부터 유형의 재화를 리스하거나 취득

□ 면세항목(Exemption)

- 면세항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 토지 및 거주목적의 부동산
 - 중고품(기업이 공급하는 경우 제외)
 - 게임, 도박, 추첨 등에 참여하기 위한 지불금 또는 티켓
 - 통화, 보험, 재보험



- 공립 교육 용역(사립대학교 등록금은 과세)
- 도시 공공 지하철,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국제해양 운송
- 국가기관 또는 개인이 제공하는 건강관련 서비스
- 그 외 책, 신문, 잡지, 주택 건설, 작가의 저작권 양도 등

□ 영세율(Zero-rate) 항목

- 영세율 항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관세법에 따른 영구(permanent) 수출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무형 재화 공급
 - 멕시코거주자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무형재화의 일시적 사용·향유
 -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실험과 관련된 정보와 기술보조 서비스 등
 - 관세법상 수출을 위한 마킬라와 하위 마킬라(sub-maquila : 마킬라의 2차 밴더)의 운영
 - 외국항행 용역

□ 신고기한

- 월간 부가세 신고(Monthly IVA Returns) : 익월 17일까지
- 월간 매입매출세액 증빙자료(Monthly IVA Informative Returns, DIOT) : 익월 말까지 신고
 - 월간 부가세 신고서 예시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멕시코)

ACUSE DE RECIBO
DECLARACIÓN PROVISIONAL O DEFINITIVA DE IMPUESTOS FEDERALES




R.F.C. : **[REDACTED]** Hoja 1 de 1

Denominación o Razón Social: **[REDACTED] MEXICO SA DE CV**

Tipo de Declaración: Normal
 Tipo de Periodicidad: Mensual
 Período de la Declaración: Agosto Ejercicio: 2014
 Fecha y hora de presentación: 10/09/2014 17:22 Medio de presentación: Internet
 Número de Operación: 96622186

IMPUESTOS QUE DECLARA:

Concepto de pago (1):	ISR PERSONAS MORALES
Impuesto a Cargo:	0
Cantidad a Cargo:	0
Cantidad a Pagar:	0

IMPUESTOS QUE DECLARA:

Concepto de pago (2):	IMPUESTO AL VALOR AGREGADO
Impuesto a Cargo:	0
Cantidad a Cargo:	0
Cantidad a Pagar:	0

- 월간 매입매출세액 증빙자료(DIOT) 신고서 예시


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El estado de su declaración es el siguiente:

Usuario: **[REDACTED]**
 Archivo Recibido: **[REDACTED]**
 Tamaño: **818 bytes**
 Fecha de Recepción: **10/09/2014**
 Hora de Recepción: **18:05:56**
 Folio de Recepción: **150876165**

El presente acuse confirma que su archivo fue recibido y será procesado por el SAT. Como resultado de su validación, puede ser aceptado o rechazado, por lo que este documento no ampara el cumplimiento de su obligación, sugiriéndole que espere a que el 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le confirme su aceptación mediante la recepción de su acuse con cadena original y sello digital.

Esperemos por favor su acuse con sello digital, el cual le llegará a la dirección de su correo electrónico. Si no lo recibe de inmediato, le recomendamos acceder a la opción de "Reimpresión de Acuses", ubicada en esta misma página en la sección "Oficina virtual (e-SAT)/Operaciones", donde lo podrá obtener oportunamente.

Terminar Sesión



나. 사업자 등록

□ RFC-납세자 번호 (Tax Identification Numbers) (출처 : OECD)

-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유형(개인/법인)에 따라 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각각의 식별 번호인 RFC(Clave del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를 부여하여 연방정부의 납세자로 등록

□ 등록의무자

- 멕시코 세법(tax code) 27조에 따라 법인의 주주와 파트너
- 세무신고 의무자이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멕시코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소득을 얻을 경우
- 과세대상인 거래를 수행할 경우 RFC등록을 의무화
- 다만, 비영리법인의 구성원, 공식적인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을 취득·거래하는 자는 등록의무 면제

□ 등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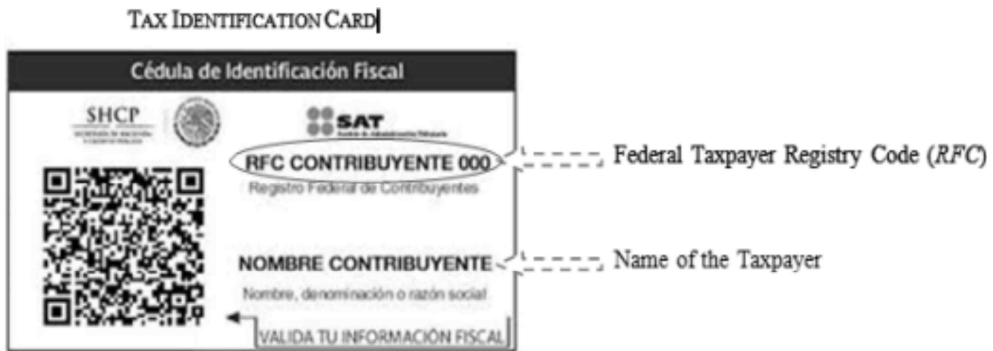
- 멕시코 국세청(SAT)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국세청산하의 지역 납세자 서비스 부서(Local Administration for Taxpayer Services) 방문신청



○ 납세자번호 등록시 필요서류

납세자 유형	필요 서류
개 인	① 출생증명서 또는 CURP(Clave Unica de Registro de Poblacion, 한국 주민등록과 유사) ② 주소 증명서 ③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④ 온라인 사전 접수번호
법 인	① 법인 증명서 ② 주소 증명서 ③ 위임장과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④ 온라인 사전 접수번호

□ 납세자 등록카드



○ 납세자 번호 구성

- 개인 : 13개글자(characters)로 구성, 4(글자) - 6(숫자) - 3(영문숫자)
- 법인 : 12개글자(characters)로 구성, 3(글자) - 6(숫자) - 3(영문숫자)
- 처음 3~4개는 이름, 6개는 생일 또는 설립일, 나머지 3개는 검증번호



□ 납세자 등록증



다.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
- 재화와 용역의 거래의 대가로 지불된 가격
- 수입의 경우 관세와 통관료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 수입관세가격
- 과세표준이 외국통화로 표시될 때 공급시점에 공식관보에 기재된 환율로 환산 함
- VAT 계산 시 소수점 아래는 반올림하여 계산함



□ 주요 공제 매입세액 및 불공제 매입세액

- VAT신고대상 지출액이 2,000페소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추적 가능한 지불수단으로 결제해야 하며 현금 사용은 불공제
- 공제가능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 있을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사업상 접대비
 - MXN130,000까지 자동차 구입
 - 하루 MXN3,850 까지 숙박료
 - 식사비 (멕시코 : 하루 MXN750, 외국 : MXN 1,500까지)
 - 자동차 리스료(하루 MXN850까지)
 - 핸드폰 요금
 - 출장 경비
 - 면세사업 관련 매입
 - 공통매입은 총매출 대비 과세매출비율에 따라 공제
- 불공제 매입세액
 - 사업상 증여(Business gifts)
 - 종업원 접대비(Entertainment of employees)

다. 부가가치세 환급¹²⁾

- 월간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는 익월 매출세액과 추가 상계하거나, 환급 신청 또는 다른 세금(법인세)과 상계 가능함

12) KPMG, 「멕시코 몬테레이 투자환경」 p42~47



□ 신청기한 및 환급 방법

- 신청기한 : 환급 발생 5년 이내 신청 가능함
- 지급기한 : 멕시코 조세청(SAT)의 환급 결정 후 20일 이내 지급

□ 환급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 신청방법 : 환급신청서(Form 3241) 인터넷 신청 및 SAT에 관련자료 제출
- 신청 서류
 - Annex 7 "VAT Blance in favor determination"
 - Annex 7 "VAT integration worksheet"
 - 월간 부가세 신고서 사본
 - (필요시) 원천징수 명세서
 - 환급 신청 제출 동일 기간 제출한 DIOT(지출 정보신고서) 원본 및 사본
 - 은행 입출금 내역서(최근2개월), 납세자 ID 및 CLABE(은행 계좌번호)
-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 부가세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 단일 세율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할한 환급액 수령이 실질적으로 지연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특히, 최근 한국기업의 몬테레이 진출로 공장부지와 등록 사무실 소재지가 상이함에 따라 등록 소재지 세무당국(SAT)이 부가세환급 절차 중 공장부지와 등록 사무실 소재지의 상이함에 따른 추가 자료요청 및 환급 조건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해당 기업은 부가세 담당 세무당국을 사전방문하여 투자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공장부지와 등록 사무실 소재지가 상이함과 그 사유를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 목록을 요청하여 대비 요망
- 최초 부가세 환급 신청 결과에 따라 이를 토대로 환급 검토의 접근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초 신청이 중요함

국제조세

IV

- 1. 멕시코 이전가격 / 66
- 2. 멕시코 이전가격 세무조사 / 76
- 3.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 / 79
- 4. 상호합의 절차 : MAP / 84
- 5. 비거주자 과세제도 / 87
- 6. 멕시코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93
- 7. 기타 국제조세 관련 추가 이슈 / 96





1 멕시코 이전가격



가. 이전가격세제의 도입과 현황

□ 제도 개요

- 다국적 기업 등 국외에 관계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가 소득이전(profit shifting)을 통하여 부당하게 멕시코 세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내·외 특수관계자 거래 시 정상가격 원칙(The arm's length principle)이 적용되어야 함
- 제도 도입
 - 1996년 멕시코 의회의 세법개혁안에 따라 정상가격원칙, CFC법령¹³⁾, 조세회피 방지 법령 등을 도입
- 현황
 - 멕시코는 지속적인 세법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방지하고 원천지국 과세권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BEPS 방지를 위한 구체적 법령 근거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13)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p.58 참조)



나. 멕시코 이전가격세제 근거 법령

□ 멕시코의 이전가격 세제 근거 법령의 특징

-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문서화 요구수준이 높음
-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이전가격 세제 적용됨에 따라 국내 거래에도 이전가격 문서화가 요구되고 있음. 단,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기업내부거래에 대한 문서화 요구 수준이 훨씬 높음
- 소유지분에 따른 특수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구체적 기준이 없어 관계기업 주식을 1%만 소유해도 특수관계자 적용 가능함

□ 멕시코의 이전가격 세제 주요 법령

	항 목	근 거 규 정
1	정상가격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76-XII 조 : 정상가격원칙 · 소득세법 179조 1문단 :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정상가격원칙 · 소득세법 76-IX, 90조
2	OECD이전가격 원칙의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179조 8문단 : OECD TP가이드라인, 조세조약 조항 등은 다국적 기업관련 조항 해석 시 적용됨
3	특수관계자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179조 5, 6문단 (p.26 참조) · 소득세법 90조 10문단
4	이전가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180조 3문단 : CUP 사용 우선 · 소득세법 180조 1문단, 179조 : 정상가격 원칙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 기술



	항 목	근 거 규 정
5	이전가격문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76-9조 1문단 :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소득세법 76-9조 2문단/세법 조례(Tax Miscellaneous)/임시규정 I.3.8.3 : 최소허용원칙(Deminimis rule), 문서화 면제 기준 · 소득세법 76-9조 4문단, 마지막문단 : 회계장부 기장 · 소득세법 76-10조 : TP 정보 제출의무
6	특정이전가격 조사절차/ 특정이전가격 가산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재정법(Federal Fiscal Code) 42조, 46조, 52-A조 : 이전 가격 조사절차 · 연방재정법 46-A조 : 세무조사기간 24개월 이내 · 연방재정법 76조 : 누락소득에 대한 가산세 · 연방재정법 81-17, 82-17 : 보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 연방재정법 83-15, 84-13 : 소득세법 76조에 따른 해외 특수관계자 보고의무 누락에 따른 가산세
7	이전가격 사전협의제(A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재정법 34-A조 2,3문단 · 소득세법 182조 : 비거주자 마킬라도라 PE면제규정
8	기타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28-27 : 과소자본세제조항 · 소득세법 182조 : 마킬라산업의 세이프하버조항

다. 이전가격 결정방법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준용

- 비교가능제3자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CUP))
-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 (RPM))
-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CP))
-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PSM))
- 잔여이익분할법(Residual Profit Split Method (RPSM))
- 거래순이익율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 유의사항

- 이전 가격 결정 시 비교가능제3자법(CUP)을 가장 먼저 적용한 후, 재판매 가격법(RPM), 원가가산법(CP), 이익분할법(PSM), 잔여이익분할법(RPSM), 거래순이익율법(TNMN)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야함
- 각 상위 방법 적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적절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거래순이익율법(TNMM) 적용 시 특수 관계자별이 아닌 거래 별 이익분석을 해야 하며, 부적절한 이익수준 지표(ROCE, Berry ratio, MOTC) 등을 사용하는 것은 과세당국과 분쟁의 소지를 남기게 될 우려가 높음

라. 이전가격 문서화 (TP documentation)

□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강화

- 이전가격 정보공개 요구 확대로 2016년 과세연도부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 보고 의무(BEPS Action plan 13)가 적용
- 일정기준 이상의 납세자는 Master file, Local file, 국가별 보고서(CbC Report)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별로 작성하여 함

□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항 목	내 용
문 서 화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가 정상가격임을 입증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설명 ② 국제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정보들 : 상호, 주소, 납세자번호, 특수관계자 이름, 잠재적 관련 거래에 대해 모든 특수관계자를 아우르는 소유 구조에 대한 설명 - 납세자의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 각각의 거래에 대해 납세자가 수행한 기능, 보유자산, 부담한 위험에 대한 설명 등과 같은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 포함 - 거래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규모에 대한 설명 - 각각의 기업내부거래의 문서와 정보를 포함하여 적용된 이전 가격방법에 대한 설명
문 서 화 면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기준 : 전년도 기준 총수입 MXN 13백만페소 이하인 사업자 - 특정기준 : 전문적 용역 제공 납세자의 경우 총수입 MXN 3백만 페소 이하인 사업자 - 이 예외조항은 국내그룹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시에는 이러한 소규모 납세자들이라도 기업내부 거래가 정상가격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준비 및 제출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기한 : 특별한 마감시한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인의 소득신고기한(보통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3월31일까지)까지 - 이전가격에 대해 문서화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나 벌금규정은 없으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불금이 불공제될 수 있으며, 문서 준비 시에는 가산세 감면 적용 - 제출기한 : 이전가격문서는 작성 후 5년간 보관해야하며 과세당국의 요구 시 즉시 제출가능 하도록 해야 함



마. 특수관계자 거래관련 보고서식 (Informative Returns)

□ 개요

- 이전가격 문서화(TP documentation)와는 별도로, 매년 연간 소득신고 시 모든 법인(3.31.기한)과 개인납세자(4.30.기한)는 총수입규모와 상관없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관련 정보보고 의무가 발생함
 - 단, 세무감사보고서(Dictamen Fiscal)를 제출한 납세자는 그것으로 정보 보고를 갈음
- 멕시코 당국은 이전가격에 대해 사후적인 세무조사보다 사전에 납세자의 성실성 및 자발적 준수를 독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4년 Form76 신설과 정보통합신고부록(Annex9)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요구 서류가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납세협력 비용의 증가가 우려 있음

□ 주요보고 서식

(1) Form 76¹⁴⁾

- 멕시코 당국은 2014년 세제 개혁 시 연방세법(Federal Tax code) 31-A조에 대한 신규신고서식 Form76 및 관련지침을 발표
 - 총 36가지 종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설된 Form 76에 따라 신고해야 함
- 신고대상 거래
 - 소득세법20조~21조에 설명된 금융 파생거래 : 포워드, 옵션, 스왑거래 등

14) 14년 10월 세무규칙(Miscellaneous Tax Regulations) Appendix 1-A



- 이전가격 거래 : 기업내부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조정이 20%이상이거나 5백만 페소 이상, 또는 당해 연도나 전년도에 로열티(이익분할법, 잔여 이익분할법으로 산출시 공시해야함)지급액이 있을 경우 제출함
- 세무목적에 따른 거주자 지위와 자본 참여 : 주주상황변동, 주식이전, 거주자 변경 등
- 법인의 사업구조조정 : 주식양도를 통한 구조조정, 관리기능의 중앙 집중화 등 기능의 변경, 자산, 위험 기능의 이동을 수반하는 사업모델 변경 등
- 기타 특정 거래 : 무형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양도, 합병, 분할, 자본상환 등

○ 신고기한 : 월별 단위로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함

거래일	Form 76 신고 기한	비고
1,2,3월	5월 말	
4,5,6월	8월 말	
7.8.9월	11월 말	
10,11,12월	다음 해 2월 말	

○ 무신고시 제재

- 관급 계약 대상에서 제외되고 MXN 1,100 ~ 30,850 페소 벌금 추징

○ 보고 시 유의사항

- 거래로 인해 과세의무가 변동되었는지 또는 납세자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졌는지, 거래 날짜와 특수관계자 여부 및 국내 또는 국외 납세자와 거래 여부 등 각 거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함
- 이전가격 거래의 경우 결산 시 자기조정(adjustment)을 통해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소득을 산출해야하며, 거래의 종류, 정상가격방법, 상호합의 대상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함



(2) 정보통합 신고부록9 (DIM, Declaracion informativa Multiple, Annex 9)

- 2015.6월 BEPS action plan 12(Mandatory disclosure Rules), 13(cbc reporting)과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그룹에 속한 각각의 납세자의 특정하고 자세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식
 - 57개 분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
- 신고 내용
 - 기업내부거래에 대해 각 거래별로 이전가격문서의 존재여부 신고
 - 특수관계법인의 납세자 번호 및 거주지(국), 거래의 규모와 유형, 비교대상자의 총이익, 영업이익, 이전가격 방법, 비교대상거래에 사용된 재무정보, 비교가능대상의 4분위 범위, 기능분석 등에 대한 신고
- 신고의무 면제
 - 과세당국과 유효한 APA를 체결하고 소득세법181, 182, 183조를 준수하는 마킬라도라 회사는 신고의무가 없음(마킬라도라 운영에 대한 고시 의무만 있음)

(3) Appendix 32,33

- 세무감사보고서(Dictamen fiscal)의 첨부서류로 6월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외 특수관계자거래 상세내역, 정상가격 여부 등이 포함

(4) 이전가격 질문지 (TP Questionnaire)

-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대한 리뷰로서 정상가격원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Yes/No 질문으로 되어있으며 외부세무 감사인이 작성함
 - 질문지에는 제조, 유통, 각 거래의 총규모, 사업활동 설명, 과소자본세제 준수여부 등 기업내부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특수관계자 거래관련 보고서의 준비기한

- 세무감사보고서(7월15일까지)와 감사보고서부록(6월말까지) 제출 전까지 준비되어야하나, DIM9(Annex 9 de la DIM)가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 말까지 제출되어야하므로, 사전 준비 요망됨
- 특혜과세체제(preferential tax regime), 블랙리스트¹⁵⁾ 국가, 국외 투과단체 등과의 거래와 관련한 정보보고는 다음해 2월 15일까지 공급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규모 등 관련 상세정보를 각각 제공해야함

바. 기타 이전가격 신고시 유의사항

□ 이전가격 입증책임

- 납세자가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과세당국
- 이전가격보고서 및 연구 문서 등이 준비 되지 않았을 경우 : 납세자
- 소재지가 저세율 국가이거나 저세율 국가의 거주자인 자와의 거래일 경우 :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여겨지고 정상가격이 아닌 것으로 간주
 - 이 경우 납세자는 해당 거래가 제3자와의 거래 또는 정상가격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됨

15) 블랙리스트 : Albania, American Samo, Andorra, Angola, Anguilla, Antigua and Barbuda, Aruba, Ascencion, Azores Islands, Bahamas, Bahrain, Barbados, Belize, Bermuda, British Virgin Islands, Brunei Darussalam, Campione d'Italia, Canary Islands (and the special zone), Cape Verde, Cayman Islands, Channel Islands, Christmas Island, Cocos (Keeling) Islands, Cook Islands, Costa Rica, Cyprus, Djibouti, Dominica, Falkland Islands, French Polynesia, Gibraltar, Greenland, Grenada, Guam, Guyana, Honduras, Hong Kong, Isle of Man, Jordan, Kiribati, Kuwait, Labuan, Liberia, Liechtenstein, Macao, Maldives, Madeira, Malta, Marshall Islands, Mauritius, Monaco, Montserrat, Nauru, Netherlands Antilles, Nevis, Niue, Norfolk Island, Oman, Ostrava, Pacific Islands, Panama, Palau, Pitcairn, Puerto Rico, Qatar, Qeshm, St. Helena, St. Kitts, St. Lucia, St. Pierre and Miquelon,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lomon Islands, Samoa, San Marino, Seychelles, SriLanka, Svalbard, Swaziland, Tokelau,



□ 비교가능 대상자(comparables) 정보 이용

- 비교가능 대상으로 멕시코 회사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없을 경우 국외 비교가능대상자들을 적절한 시장조정 평가 후 이용가능
- 멕시코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접근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비밀 정보 (secret comparables)를 비교대상자로 사용할 수 있음

<참고 : 과세당국이 비교대상자 선정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

- 신용평가사 S&P의 기업 데이터베이스 Compustat North America (www.compustat.com) :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의 계속 기업 및 휴면 기업(active and inactive)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및 시장정보 제공
- RoyaltyStat(www.royaltystat.com) : 로열티의 가격(royalty rate), 무형자산 가치 평가, 기업의 재무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

□ 과태료 (penalties)

- 이전가격과세조정에 대한 별도의 페널티는 없음.
- 누락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됨(누락세액의 55~75% or 결손금 초과 시 30~40%)
- 가산세 경감
 -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 충족 시 가산세는 50% 경감
 - 단, 문서화요구 준수의 '정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법령은 없음



2 - 멕시코 이전가격 세무조사



가. 현황

- 이전가격 조사를 총괄하는 대사업자 일반행정국(General- Administration of Large Taxpayer)의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 분석이 증가
- 전자세무조사 증가 및 2014년 세제개혁 이후 납세자 회계장부의 국세청 전자시스템 업로드 의무화, 전자세금계산서의 전면적 시행 등으로 과세 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추세

나. 세무조사 절차

□ 조사선정 사유

- 과세소득의 급격한 감소 및 지정상적인 환급세액 증가 등 발생 시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
 - 갑작스러운 과세소득의 감소
 - 비정상적이고 갑작스런 세금환급의 증가
 - 회계감사의 부정적 의견이 있는 감사 재무자료
 - 감사재무자료 없는 주주소득이 있는 납세자
 - 외국법인에 중요한 지급액발생
 - 현금 송금 과다 등 (remittances)



□ 조사 진행과정

○ 사전통지

- 조사목적과 기간 등 서면으로 사전 공지하며 과세당국이 발행한 서면 조사명령서에 근거해 조사 개시

○ 조사기간

- 일반적인 조사기간은 12개월 내에 종결되어야하나 이전가격 케이스를 포함한 조사는 2년 규정 적용
- 멕시코는 외국과의 과세정보교환이 활발하여 조약상대국과 함께 동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하며,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사용할 수 있음
- 과세가능 기간은 5년이며 조사기간 동안 이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며, 납세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도 기간의 진행은 정지됨

○ 조사종결

- 당국의 조사 적출사항은 문서화되며, 서면으로 추징세액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가 종결. 단, 납세자는 조사 중 수정신고 및 분쟁해결합의 등 가능함
 - 수정신고 : 납세자는 조사기간 중 스스로 수정신고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등을 감면
 - 분쟁해결합의(Settlement agreement) 제도 : 2014년 세계개혁 시 도입된 제도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법의 해결결과와 사실에 관해 과세당국과 합의를 이루는 절차

다. 이전가격 관련 가산세

- 이전가격 관련 가산세는 아래와 같으며, 가산세는 부과 전까지 당국과 협상이 가능하나 일단 부과되고 나면 협상이 불가능함에 유의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액
정보제공요구 불응	MXN 13,720~41,720
조사당국에 누락소득 적발	① 이전가격 문서화 구비(50%감면,FFC7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락세액의 27.5%~37.5% • (결손인 경우) : 결손과대계상액의15%~20%
	② 이전가격 문서화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락세액의 55%~75% • (결손인 경우) : 결손과대계상액의30%~40%
소득세법76조에 따른 특수 관계자 거래정보를 과세 당국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	MXN 61,000 ~ MXN 122,010 (연방재정법FFC 81-XVII,82-XVII)
소득세법76조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자거래의 기장 및 보고 의무 미이행	각 거래당 MXN 1,380~MXN 4,150 (연방재정법FFC 83-XV,84-XIII)

라. 이전가격 조사관련 최근 이슈 및 동향

□ 특정산업분야를 겨냥한 조사

- 특정산업분야(제약업, 소매, 관광, 소비재, 금융 서비스, 자동차, 에너지, 광산업, 건설 등)를 중심으로 이전가격 조사가 증가하는 추세임
- 세무조사에서 언급된 이슈들은 이익 마진, 중개서비스, 사용료지급, 특수 관계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판매, 간주 고정사업장의 수익성, 무형자산의 양도 간주, 이자공제, 보증수수료와 관습적인 지불금, 정부 특례(government concessions) 등임



□ 세무조사 프로그램 정착

- 멕시코 과세당국은 최근 국제조세 부서(International Tax Division)와 이전 가격 중앙 행정국(TP Central Administration)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다음의 과세 이슈에 대한 주요한 세무조사 프로그램을 정착시킴
 -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무형자산의 이전
 - 간주 고정사업장의 수익성
 - 기업내부의 부채조정
 - 경영자문료, 원가분담약정(pro rata charge)등 용역 제공에 따른 비용공제

3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



□ 개요

-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
- 사전 승인 시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 연혁

- 1997년 이래로 법적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연방재정법34-A, 소득세법 182조(마킬라도라의 PE면제를 위한 APA)에 근거를 둠
- 국내법상 일방적 APA인 사전답변(Ruling)제도와 권한 있는 과세당국(CA) 절차로서 쌍방적 APA가 있음



- 쌍방APA는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거주자와 가능하며 지연납부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협상 결과에 따라 5년 이상의 적용도 가능하며 사전답변(ruling)과 달리 국제조세 이슈에서 과세당국은 APA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 국제거래 뿐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적용가능하며 2012년부터 APA는 현재 과세연도와 이후 도래하는 3개 과세연도, 소급하여(roll-back) 1개 과세연도가 적용됨

□ 사전절차

- 법에 정해진 사전신청제도는 없음
- 실제적으로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대사업자 일반 행정국에 미리 자료를 제출하고 분석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함

□ 신청서류 및 요구되는 정보

- 연방재정법(FFC)18조,18-A, 19조에 의거한 정보와 문서를 제출해야하며 아래와 같음
 - 기본사항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상대과세당국, 연락처, 소유지분 포함한 그룹조직도 등)
 - 특수관계자가 수행한 활동에 대한 설명
 - 관련거래와 규모, 상황, 가격 결정방법과 기준 등을 문서로 증빙
 - APA 대상 기간 이전 3년 동안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 과거 3년 동안 수정신고를 포함한 납세자의 세금 신고내역
 - 납세자와 특수관계자(멕시코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체결한 계약과 협정의 스페인어 버전의 복사본
 - 비교가능거래 또는 회사에 관한 정보, 비교가능대상자에 대한 조정, 제외된 비교대상자와 조정에 대한 이유 설명



- 납세자의 특수관계자가 이전가격 관련한 법적 절차 진행 여부 또는 그들이 이미 이전가격 소송에 관련되어있는지 여부, 최종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의 주요 논점 설명

□ 수수료

- APA가 발효된 첫해 : MXN 216,309
- APA 발표된 이후 : MXN 43,262

□ 심사

- 과세당국은 추가 정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가 10일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요청에 불응 시 APA는 거부 됨
- 법에 따른 심사기간은 8개월이나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

□ APA 결정

- 상호합의 경우 권한 있는 과세당국의 합의 후 합의의 서면 협약서가 양국 간 교환되고 납세자에게 통보됨
- 일반APA의 경우 분석 결과 사전답변(Ruling)이 납세자에게 발행됨
- APA는 과세당국과 특정 납세자에 대해 해당 결정을 귀속시킴
- 과세당국이 신청일로 8개월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신청사항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됨



□ APA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 APA 결정이후 매년 제출
- 내용은 사안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APA 결정 시 요건들을 재확정하는 내용 포함
- 재무제표 및 연간소득신고와 신청비용 납부서 등 첨부해야함

□ 전자 세무우편함(Mail Box,Buzon Tributario)을 통한 APA 상담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의 Mail box를 통한 APA 상담신청(consultation)이 가능하며 해당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결정(ruling)을 받아 볼 수 있음
 - 상담 신청 시 행정규칙(Administrative Regulation)2.12.8에 의거, Form 102/CFF에 따른 정보와 자료를 제출해야만함
- Mail Box를 통한 APA 상담신청(consultation) 절차
 - 홈페이지(www.sat.gob.mx)에서 tax mailbox 선택
 - 납세자번호(RFC),비밀번호, 전자서명 등으로 로그인
 - Form102/CFF* 신청양식에 따라 정보 작성
 - 첨부서류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후 발송
 - 과세당국은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답변함
- 상담신청 시 준비서류
 - 기본사항을 설명하는 문서가 포함된 디지털 파일
 - 아래 납세자들의 기본정보(이름, 납세자번호, 거주지국, 주소 등)
멕시코 내 지점, 최종모기업을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모든 당사자, 계약상, 사업상 신청납세자와 관련된 멕시코내의 특수관계자와 국외의 특수관계자, 상담의 결과로 발행하게 될 결정문(Ruling)에 영향받게 될 모든 특수관계자



- 납세자와 계약상 사업상 관련있는 해외 거주하는 특수관계자의 회계 연도의 시작일과 마감일
- 납세자와 특수관계자간 주된 거래에 사용된 통화
- 사전답변(Ruling)요청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제공해야할 정보
 - 납세자와 계약상, 사업상 특수관계자가 각각 수행한 기능, 보유한 자산, 부담한 위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이전가격 결정방법과 기준 및 선정 사유 등
 - 기업내부거래의 이전가격결정방법
 - 해당년도의 재무, 세무정보
 - 비교가능대상거래 정보(차이제거를 위한 합리적 조정 포함)
 - 국외 특수관계자가 거주지국에서 세무조사 진행중인지 여부 및 진행 상황, 결과 등 보고
 - 상담에 답변하기위해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
- 다음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일(Ruling을 받고자하는 해당년도와, 그 이전 3년간의 자료)
 - 납세자의 재고상황(상업사회법, Mercantile Societies Law128조)
 - 재무제표 및 소득신고 여부확인
 - 세무감사보고서(dictamen fiscal)가 있다면 제출
 - 납세자와 특수관계자간 계약, 협정, 협약(스페인어 해석본)
 - 특수관계자간 ruling 대상 거래에서 지불된 영수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소득세법 27-XIII,76-IX,X,XII, 179조,180조에 따른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
 - 납세자가 다국적기업의 일원일 경우 그룹 일원으로 수행한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지분상황을 포함한 그룹 조직도, 거래장소, 거래 설명 등)
- 외국법인으로, 어느 누구의 자회사도 아닌 최종모회사(ultimate parents)는 멕시코재무보고표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4 상호합의 절차 : MAP



□ 개요

-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조약 체결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

□ 상호합의 담당조직

- 대사업자 일반행정국(General Administration for Large Taxpayers)
 - MAP : 국제조세법무 중앙행정국(Central Administration for International Tax Legal Affairs)
 - MAP APA : 이전가격조사 중앙행정국(Central Administration for TP Audits)
- 탄화수소 일반행정국(General Administration for Hydrocarbons)
 - 상위의 석유와 가스 산업 납세자를 위한 MAP, MAP APA : 탄화수소 세금과 법률문제에 대한 중앙 행정부서(upstream Oil & Gas industry : Central Administration for Hydrocarbons Tax and Legal Affairs)

□ MAP 범위

- 특정납세자의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함
- 관련 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논의함

□ 근거 법령

- 연방재정법(Federal Fiscal Code) 21조, 34-A, 37조



- 소득세법 2, 3, 4, 179, 180, 181, 184조
- 탄화수소 수입법(Hydrocarbons Revenue Law)64조
- 연방행정소송절차법 13조(Federal Law of Proced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13)

□ 검토기한 : 12개월

□ 신청 양식 :

- 「OECD에서 제공하는 효과적인 상호합의절차에 관한 매뉴얼, 2007년 버전」(OECD online Manual on Effective Mutual Agreement Procedures (MEMAP), February 2007 Version)에 설명된 요구조건들을 충족해야함

□ 신청 비용

- MAP : 신청비용 없음
- MAP APA(상호합의를 전제로 하는 APA : MXN \$12,633.43¹⁶⁾)

□ 대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 조세조약 9항의 유보조항에 따라 멕시코는 대응 조정을 조세조약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정상가격으로 조정을 하면 대응 조정을 허용
- 납세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등이 확정 되나, 사기나 중과실 고의적인 과실의 경우 대응조정이 허용되지 않음

16) 연방 요금 법의 53-G항에 대한 2015년 행정 규칙의 주석19에 의해 업데이트된 금액(updated amount, as provided by Annex 19 of 2015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garding article 53-G of the Federal Fees Law



□ 멕시코 상호합의 통계

○ 연도별 상호합의 신청현황

(’06~’12년 현황, 단위 : 건)

년 도	'06	'07	'08	'09	'10	'11	'12
신청건수	26	23	14	18	12	11	19

* 출처 : 비엔나경제경영대(wu.ac.at)

○ 나라별, 주제별 신청현황 (2013년 기준)

- 국가별 : 미국이 가장 많음

나라	호주	칠레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스위스	미국
건수	1	2	1	2	1	3	3	12

- 주제별

적용 조항 /주제	제2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2항	제14항	제17항	제24항
	대상 조세	고정 사업장	부동산 소득	사업 소득	관계 기업	사용료	인적 용역	연예인 체육인	무차별 조항
이전 가격	-	4	-	-	16	-	-	-	-
조세 조약 해석	2	-	1	1	-	2	2	1	2

* 출처 : OECD 상호합의 통계 (SAT 제공)

○ 2014년 상호합의 현황

(단위 : MAP 건수)

상호합의 개시년도	연초	연도 중 개시	연도 중 타결	연도 말	연도 중 폐기	평균 소요기간(월)
2008이전	1	-	0	1	0	0
2009	1	-	0	1	0	0
2010	0	-	0	0	0	0
2011	1	-	0	1	0	0
2012	4	-	0	4	0	0
2013	7	-	2	5	0	12
2014	-	4	0	4	0	0
합계	14	4	2	16	0	12

* 출처 : OECD, MAP statics 2014



5 비거주자 과세제도



가. 납세의무 분류

- 거주자 개인/법인 (멕시코인 또는 외국인 여부 무관)
 - 모든 종류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멕시코 세법에 따라 과세
 - 자본이익과 국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

- 멕시코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 회사
 - 멕시코 거주자인 법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원천에서 비롯된 모든 소득에 대해 연간 합산 과세

- 멕시코 내에 고정사업장 있는 것으로 간주된 비거주자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연간 합산 과세
 - 주된 사업장소나 관리장소가 멕시코 내에 있는 비거주인 경우에는 183일 이하로 거주하더라도 멕시코 거주자로 간주하여 과세
 - 간주된 고정사업장은 등록된 외국법인의 지점과 동일함
 - 멕시코 내 상품이 있는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 계약체결권을 가진 영업사원 또는 에이전트는 과세대상인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

- 비거주자 멕시코인 또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개인
 - 멕시코 원천 소득에 대해 각각 단일세율 또는 누진세율로 과세
 - 부동산 또는 자본증권 양도차이 또는 단기공사 등은 높은 세율 과세



- 비거주자 개인이 멕시코 비거주자 법인에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기간이 12개월 중 183일 이하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
 - 비거주자 개인이 멕시코 회사에 직접적으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할 때는 누진 원천세율로 과세됨

-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당, 연방, 주, 시정부와 그들의 대리인과 같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과세제외

나. 비거주자의 주식양도

- 멕시코회사가 발행한 주식양도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가 아닌 경우 멕시코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세무보고서(Tax Report)’를 제출해야 함
 - 국내법상 과세이연 요건에 적합한 거래라 하더라도 적용됨
 - 보고방법
 -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 자본(역사적 자본의 양과 대응 조정된 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요구)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소득 접근법)
현금흐름의 할인에 사용된 방법과 할인율, 잔존가치, 기간의 횟수, 주식 발행법인의 경제 관련정보
 - 공개 주식 시장의 경우 최종 가
 - 세무보고(Tax Report)는 최소허용의 원칙(Deminimis rul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과세 근거에 대한 계산 근거를 제시해야 함



다. 비거주자의 일시적 근로소득

- 비거주자에 고용되어 일시적으로 멕시코 내에서 제공하는 근로는 멕시코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일 경우 과세되지 않음
- 비거주자가 멕시코 내의 지점이나 회사에서 일시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첫째(12개월)에 대한 MXN 125,900까지 과세제외

과세대상소득(MXN)		세율(%)
이 상	미 만	
0	125,900	과세 제외
125,900	1,000,000	15
1,000,000		30

라. 비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지불항목		세율 (%)
· 멕시코 내에서 수행된 전문용역 수수료 ¹⁷⁾		25
· 리스료	- 부동산 리스료	25
	- 멕시코 정부가 승인한 상업적이용 여객	5
	-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항공	
	- 배에 대한 리스료	
	- 개인적 자산의 리스료 ¹⁸⁾	25
· 용선 계약 (Charter agreements)		10
· 양도	- 멕시코 내의 부동산 양도	25
	- 멕시코 회사의 주식 양도	25

17) 비거주자로서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경영자문료는 과세되지 않음

18) 비거주자에게 지불하는 자산임차료는 비거주자 총수입의 25%로 원천징수되거나 소득에 30%로 과세되는 것 중 선택 가능



지불항목		세율 (%)
· 파생 상품거래	- 자본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	25
	- 부채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	이자와 동일
· 이자	- 외국정부금융기관 - 적법하게 등록된 외국 은행과 기타 단체에 지불한 이자 ¹⁹⁾	10(4.9)
	- 해외 공채(debt instruments)이자 ²⁰⁾	4.9
	- 특정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²¹⁾	4.9
	- 멕시코 금융기관이 해외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이자	21
	- 기계·장비의 국외제공자에게 지불하는 이자(해당 자산구입 및 운영자본을 적법한채권자에게 대출한 경우)	21
	- 재보험(reinsurance)회사에 지불한 이자	15
	- 기타 이자지불금	35

지불항목		원천징수율 (%)
· 금융리스료(이자 또는 금융비용으로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 부분)		15
· 배당 ²²⁾		10
· 로열티	- 철도차량(railroad cars)사용료	5
	- 저작권 사용료(과학, 문학, 예술작품(영화, 라디오, TV, 소프트웨어,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비디오 오디오 신호 및 유사 미디어포함))	25
	- 특허권, 트레이드마크, 상표명(brand name), 광고	35
	- 의장, 도면, 비밀공식(공정), 과학적, 상업적, 산업 적장비 사용 및 경험에 관한 정보와 기술적 도움에 대한 대가 지불	25

19) 멕시코와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의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4.9%로 원천징수됨

20) 멕시코와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의 브로커회사나 은행을 통해 취급되는 공채 (debt instrument)

21) 멕시코연방정부와 멕시코 중앙은행이 지분참여한 외국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이자



지불항목	원천징수율 (%)
· 단기공사와 설치, 유지, 기술감독 등에 대한 대가 ²³⁾	25
· 재보험 프리미엄(Reinsurance premiums)	2
· 운동선수와 연예인에 대한 소득지급	25
· 상금(복권 또는 추첨 등) 소득	1/21
· 기타소득 (채무면제익, 배상금, 경영참가권, 투자 등)	35

- 위의 원천징수율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 체결국과는 제한세율의 제한을 받음

마. 한국과의 이중과세 방지 조세협약 요약

구분 (발생: 멕시코)	과세대상 법인	비고
부 동 산 소 득	발생법인(멕시코)	-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권리 (선박, 보트, 항공기 제외) - 기업보유 부동산도 동일적용
사업이윤	발생법인(멕시코 또는 한국)	- 한국법인이 멕시코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경영 할 경우 멕시코 과세 - 특허권, 사용료, 수수료, 중개 수수료, 대역이자에 대한 손금 산입 불인정

22) 2014년 이전에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이익의 분배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은 과세되지 않음(2014세법개정 이후분부터), 또한 어떠한 이유로든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된 이익에 그로스업(1.4286)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게 됨

23)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법적 대리인을 두고 그들의 소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35%로 과세됨. 또한 사업활동이 183일을 초과할 경우 외국납세자는 멕시코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이나 지점과 같이 과세됨



구분 (발생 : 멕시코)	과세대상 법인	비고
배 당	배당 수익자 거주국가 : 15%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중 회사 자본 10% 이상 직접소유(조합제외) 비과세
이 자	- 원칙 : 이자 수익자 거주국가 (한국) 과세 - 원천징수 : 이자 발생국가(은행 이자 : 5%, 기타 : 15%)	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하여 멕시코에서 발생한 이자 :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인 국가에서 과세
사 용 료	- 원칙 : 사용료 수익자 거주국가 (한국) 과세 - 원천징수 : 사용료 발생국가 (멕시코) 10%	- 사용료 : 저작권, 특허권, 상품권, 의장, 도면, 비밀공식(공정) 사용권 등
양도소득	- 부동산 : 부동산 소재 국가 (멕시코) 과세 - 지분 : 지분매각자 소재 국가	- 지분 : 25%초과 보유시 지분대상 회사 소재국가 과세
기타소득	소득원천 법인(멕시코) : 15%	상기 언급 이외의 소득대상
이중과세 회 피	- 한국 : 외국(멕시코) 납부 세액 공제 - 멕시코 : 한국에 납부된 소득세	- 한국 : 한국의 전체 조세액 초과 불가 - 멕시코 : 10%이상 지분 보유자의 배당소득 포함



6

멕시코의 BEPS²⁴⁾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가. 도입

- 멕시코 정부는 2014년 세제개혁 시 BEPS Action plan2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 이중비과세 방지규정)에 따라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기 위한 장치 마련
- 다국적기업의 BEPS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정보자동교환 협정에도 非유럽권 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여
- 세금문제에 관한 상호행정조력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관한 협약에도 서명

나. 현황

□ 이전가격 문서화 강화

- 2016년 과세연도부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 보고 의무 규정을 적용(Beps Action plan13)하고, 멕시코 당국은 관련 규정을 제정 하였음

24)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이란 국가 간 세법차이와 불일치를 이용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전략을 의미

□ CbCR 관련 법안 발표²⁵⁾

- 멕시코 정부는 BEPS 가이드라인에 따른 Master file, Local File, CbCR 제출 의무 관련 규정을 2016년 1월 1일부로 발효하였으며, 보고서별 주요 내용과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마스터 파일(Master file)
 - 다국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법적 조직도, 주주변동 및 그룹 내 회사들의 세무상 거주지국을 반드시 포함
 - Master file과 Local file 제출의무는 MXN 644,599,005 페소 이상
 - 상장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제출의무가 부여됨.
- 로컬 파일(Local File)
 - 다국적기업 그룹 내의 특정 현지법인의 사업, 현지법인이 참여한 특수 관계자 거래, 해당 거래 관련 이전가격 결정과정 보고
 - 법적 대표가 서명한 TP study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 국가별 보고서(CbCR)
 - 각 나라별 종업원 수, 재고 및 고정자산 (매출채권은 제외)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
 - 멕시코 다국적 기업이거나 해외 다국적 기업으로서 그룹의 연결 소득이 MXN 120억 페소를 초과하는 경우 작성의무

25) Samil Global Tax Update, November 2016



구분	제출대상 요건	주요 보고 내용	비고
마스터파일 (Master file)	연결소득이 MXN 644,599,005 페소 이상 및 상장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 법적 조직도 · 주주변동사항 · 그룹내 회사들의 세무상 거주지국 등 	
로컬파일 (Local file)	MXN 644,599,005 페소 이상 및 상장법인 등	법인의 법적대표가 서명한 TP Study를 반드시 첨부	
국가별보고서 (CbCR)	로 연결소득이 MXN 120억 페소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종업원 수 · 재고 및 고정자산 등 (매출채권 제외) 	

□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인적용역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비용 공제 제한

-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불하는 이자, 로열티 및 인정용역에 대한 지불 실체가 없고, 수령자에게 비과세한 경우 또는 수령자가 도관(pass through)인 경우
- 지불액이 정상가격이 아닌 경우, 해외에서 소득세가 22.5%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CFC rule)



7 기타 국제조세 관련 추가 이슈



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 개요

- 저세율국가나 조세피난처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투자자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함으로써 거주지국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6편 제1장 제212~214조

□ 적용요건

- 다음의 경우 실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멕시코에서 과세되며 납세자가 특별히 입증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외국법인을 지배하는 것으로 여겨짐
 - 피지배기업의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이 소득의 20%이상인 경우
 - 피지배회사가 위치한 과세관할권의 세율이 멕시코 세율의 75%미만인 경우(현재 멕시코 법인세율은 30%로, 22.5%가 기준임)
 - 국외에서 과세되지 않을 경우



- 설립된 나라에서 그 회사가 도관(pass-through)인 경우
- 블랙리스트²⁶⁾에 있는 과세 관할권내에 피지배 회사가 위치할 때

□ 적용대상

- 저세율 국가에 있는 계좌나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멕시코납세자 (기업, 개인, 외국인거주자 등)

□ 합산 대상 소득

-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 배당, 이자, 사용료, 자본이익, 커미션 등
- 특정한 경우 적극적 소득(active income, 예 : 사업소득)의 비과세 허용

□ 귀속소득의 과세방법

-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별로 각각 계산
- 멕시코 거주자의 연간 소득신고와 함께 보고

26) 블랙리스트 : Albania, American Samo, Andorra, Angola, Anguilla, Antigua and Barbuda, Aruba, Ascencion, Azores Islands, Bahamas, Bahrain, Barbados, Belize, Bermuda, British Virgin Islands, Brunei Darussalam, Campione d'Italia, Canary Islands (and the special zone), Cape Verde, Cayman Islands, Channel Islands, Christmas Island, Cocos (Keeling) Islands, Cook Islands, Costa Rica, Cyprus, Djibouti, Dominica, Falkland Islands, French Polynesia, Gibraltar, Greenland, Grenada, Guam, Guyana, Honduras, Hong Kong, Isle of Man, Jordan, Kiribati, Kuwait, Labuan, Liberia, Liechtenstein, Macao, Maldives, Madeira, Malta, Marshall Islands, Mauritius, Monaco, Montserrat, Nauru, Netherlands Antilles, Nevis, Niue, Norfolk Island, Oman, Ostrava, Pacific Islands, Panama, Palau, Pitcairn, Puerto Rico, Qatar, Qeshm, St. Helena, St. Kitts, St. Lucia, St. Pierre and Miquelon,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lomon Islands, Samoa, San Marino, Seychelles, Sri Lanka, Svalbard, Swaziland, Tokelau, Trieste, Trinidad and Tobago, Tristan da Cunha, Tonga, Tunisia, Turks & Caicos Islands, Tuvalu, United Arab Emirates, US Virgin Islands, Uruguay, Vanuatu and Yemen. (deloitte-2014 guide to controlled foreign company regimes 발췌)

□ 유보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실제 피지배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되어 국외에서 원천징수 납부가 되었음을 증명하면 세액공제 가능

□ CFC 적용 면제

- 특허나 산업 기밀 등의 사용권한 부여나 사용에 대해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CFC rule 면제
 -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외 기업체의 거주지국에서 만들어지고 개발된 경우, 무형자산이 비교가능거래에서 제3자 사이에 사용되었을 가격으로 국외 사업자가 취득된 경우
 - 지불된 로열티가 멕시코 거주자의 공제 되지 않은 경우
 - 국외기업체가 지불한 로열티는 멕시코 이전가격 세제 준수한 경우
 - 국외 기업체의 회계기록을 과세당국이 볼 수 있고, 요구하는 시한 내에 정보가 제출될 경우

□ CFC의 기타 특징

- CFC에 대한 지급은 보통 40% 원천징수
- 멕시코는 CFC Rule 적용 시 블랙리스트 사용에서 세율기준으로 정책을 바꾸었으나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유효함
 - 납세자는 블랙리스트에 있는 국가에 위치한 기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또한 블랙리스트의 대부분이 멕시코대비 세율 75% 미만 국가임)



나. 멕시코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보고의무

□ 적용대상

- 특혜과세체제로부터 소득을 벌어들인 납세자
- 회계상 투과단체인 국외 법적 실체와 거래한 납세자
- 블랙리스트의 국가들로부터 소득을 발생시킨 납세자

□ 보고 시기

- 연간소득정보 다음해 2월 제출

□ 유의 사항

- 국외 회사로부터 받은 것, 과세투과단체(tax transparent entity), 유한파트너십과 같은 도관으로부터 파트너, 주주, 수익자로서 얻은 이익은 그자체로 특혜과세체제(preferential tax regime)로 인식
- (특혜과세체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사업소득 면제, 고세율 면제, 특별 면제와 지배 면제(지배 면제는 실제로 광범위하게 이용됨)

다.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sm)

□ 개요

- 특수관계 기업 간의 과도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되나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본투자임에도 차입금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



□ 근거법령

- 소득세법 28조 (불공제 항목) 27항

□ 적용요건

- 부채-자본 비율이 3 : 1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이자 불공제
 - (부채) 연간평균부채
 - (자본) 멕시코 GAAP(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자본 또는 과세기준자본계정(Tax basis equity accounts)*을 이용
 - * 과세기준자본계정 = 출자자본(contributed capital) + CUFFIN 잔액
- 특수관계자와의 부채에 대한 이자만 불공제 적용
- 해당 사업 활동이 높은 부채레버리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일 경우 비율 조정가능(APA 신청사항)

□ 적용 배제

- 14년1월부터 전락지역에 금융, 건설, 전력생산 등 생산적 인프라의 운영, 유지관련 산업은 과소자본세제 규제를 배제함

수출입 지원제도

V

- 1. 마킬라도라 산업(Maquiladora) / 102
- 2. 산업부문별 진흥 프로그램(PROSEC) / 103
- 3. 수출산업 진흥제도(IMMEX) / 105
- 4. VAT Certification / 108
- 5. IMMEX, PROSEC, VAT Certification 신청 / 111





1 마킬라도라 산업 (Maquiladora)



□ 마킬라도라(Maquiladora)란

- 마킬라도라 산업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 위치한 수출 및 물품 조립가공업체 전반을 지칭함²⁷⁾
 - 멕시코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마킬라도라에서 가공·재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원자재 및 관련 장비·설비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함

□ 연혁

- 1965년 멕시코 정부가 노동집약적인 물품을 생산 후 미국에 전량 수출하는 조립 가공업체가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시작
- 1973년 이후 마킬라도라 정책을 멕시코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적인 제한을 없애고, 내수도 일부 허용하는 등 경제정책으로 활용

□ 주요내용

-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에 속하는 외국 투자업체와 조립가공업체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경우,
 -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자재나 장비에 대한 관세 혜택 부여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0~5%의 낮은 관세가 부과됨

2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멕시코)」 p86~87 참조하여 작성



- 단, 조립·생산 공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된 기계와 장비 등은 일반 수입관세와 일정액의 통관수수료를 부담해야 함(장비나 기계의 원산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일 경우에는 수입관세 면제 혜택 적용)
- 관세 면제 특혜는 2000년말 NAFTA 협정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특혜 보전을 위해 산업 부문별 진흥프로그램(PROSEC)이 신설되었음

2 산업부문별 진흥 프로그램 (PROSEC)

□ 제도개요

- 마킬라도라의 관세 면제 특혜가 종료되면서 발생한 경쟁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운영하는 특혜 관세율 제도²⁸⁾
 - 특정 산업군(22개)*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멕시코와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원자재와 부품,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기계 및 장비 등을 수입하는 경우, 0%~5%의 특혜 관세를 부여함²⁹⁾
 - * 섬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가구, 완구, 스포츠용품, 신발, 광물, 금속, 농업기계, 철강, 화학, 고무, 의약품, 의료기기, 자동차를 제외한 운송수단, 인쇄물, 포장지, 가죽, 초콜릿 및 사탕류, 커피 등

□ 신청 및 처리기간

- 멕시코 경제부 대외무역국(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Exterior)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함

28)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본 멕시코 IMMEX와 PROSEC 제도」

29) [http : //www.braumillerlaw.com/incentives-benefits-immex-maquiladoras/](http://www.braumillerlaw.com/incentives-benefits-immex-maquiladoras/)[2018.06.20검색]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
- 신청비용 : 별도의 행정비용은 별도로 없으나, 일반적으로 변호사에 위임하여 진행하므로 변호사 의뢰비용이 소요됨

□ 산업부문별 진흥프로그램(PROSEC)의 주요 개정 내용³⁰⁾

○ 대상 업종 추가

- 적용대상 업종에 특정 자재, 기계 및 장비업종을 추가함(전기, 전자, 가구, 완구, 신발, 금속, 사진, 농업 기계, 화학, 플라스틱 및 고무, 철강, 약국, 마약 및 의료 장비, 운송, 종이 및 만화, 목재, 섬유, 설탕 및 커피)

○ 면세 혜택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

- 수입 된 자재, 기계 및 장비를 허가 된 생산 공정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세 혜택 부여

○ 지역 및 국경 지역에 대한 법령의 개정은 멕시코 국경에 위치한 허가 된 개인 및 회사가 감면 된 임무하에 수입 할 수 있는 물품 목록을 수정하였음 (레스토랑, 호텔, 레크리에이션 및 오락, 문화, 스포츠, 교육, 수사, 의료 및 사회 사업과 같은 특정 서비스를 임대하는 무역 회사)

○ 개인 및 법인은 멕시코 정부가 발급 한 인증 번호가 있어야하며 재정과 세금의 제한이 없음

□ 참고사항

- 산업부문별 진흥프로그램(PROSEC)과 수출산업진흥제도(IMMEX)에 모두 등록된 회사라면,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적용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0) [http : //www.braumillerlaw.com/amendments-to-the-european-union-customs-code-ucc-and-its-impact-on-u-s-companies/](http://www.braumillerlaw.com/amendments-to-the-european-union-customs-code-ucc-and-its-impact-on-u-s-companies/) [2018.06.08검색]



3 수출산업 진흥제도 (IMMEX)

□ 제도개요

- IMMEX(Fomento de la Industrias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Exportación)는 제조,보세임가공,수출서비스산업 진흥프로그램의 약자로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을 임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시기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해주는 프로그램임³¹⁾
 - 수출 마킬라(Maquila, 보세임가공)산업진흥법과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임시수입프로그램(PITEX) 법령을 통합한 제도로써 2006년 11월 발효됨 (마킬라 법령은 IMMEX에 맞게 개정 되었고, 기존 PITEX법령은 무효화됨)

□ IMMEX 승인 및 유지 요건

- IMMEX 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생산 또는 서비스 과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간 수출액이 US\$50만을 초과하거나,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이 되어야함
- IMMEX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임시 수입한 재화는 반드시 승인받은 목적에만 사용해야 함
- IMMEX에 등록된 사업장 또는 수출하청생산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IMMEX를 통해 수입한 재화를 새로 변경된 주소지로 이전하는 시점에서 근무일 기준 3일 내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함
- 선입선출 방식으로 전자 재고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31) KOTRA, 「멕시코 수출·산업 진흥제도(IMMEX/PROSEC)의 이해」 참고하여 작성

□ 수혜대상 기업 유형³²⁾

○ 지주회사(holding company)

- 관세법 100-A조에 근거한 멕시코 재무부 인증기업(certified company)인 지주회사이고, 그 제조 활동이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자회사의 제조 활동처럼 단일 프로그램으로 통합되는 경우

○ 제조회사(industrial company)

- 수출용 상품을 생산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제조공정을 실시하는 회사

○ 서비스회사(service company)

- 수출용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셸터회사(shelter company)

- IMMEX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한 곳 또는 그 이상의 외국 기업이 셸터회사에 기술과 생산자재를 제공하는 경우

○ 서비스회사(tertiarization)

-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재무부 인증기업이 제3자를 자사의 IMMEX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등록된 제3자를 통해서 제조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와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재무부 인증 기업도 수혜 대상에 포함됨

○ 아웃소싱(outsourcing)

- IMMEX프로그램에 등록된 제3자를 통해 위탁 생산 또는 임가공(contract or toll manufacturing)업을 수행

32) KPMG, 「Investment in MEXICO 2017」 p148~150



□ IMMEX 혜택³³⁾³⁴⁾

- 수출용 상품의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 임시 수입을 허용
 - 임시 수입 상태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관세 및 부가세 납부가 연기됨
- 고정자산 수입 시 부가세 납부 연기
 - 일반 수입관세는 납부하되, IMMEX 프로그램 유효기간 동안 부가세 납부는 연기됨
 - PROSEC도 승인받은 업체는 PROSEC 프로그램을 동시에 적용해서 일반 수입관세가 아닌 0~5%의 증가관세를 적용
 - 단, 일부 품목은 IMMEX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섬유, 의류, 축산물과 같이 일부 민감한 품목의 임시 수입 가능기간은 6개월 또는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음

□ IMMEX 주요 개정 내용

- 적용대상 기업의 요건 강화
 - 2017년 9월 28일 멕시코 재무부는 연방 관보에 ‘제조,마킬라 및 수출 서비스 산업 프로그램(IMMEX 프로그램) 취소 및 회사의 번호를 포함하는 결의안’을 발표함³⁵⁾
 - 적용 요건
 - 유효한 전자 서명(FILE)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연방 정부의 납세자 등록 번호(Federal Taxpayer Registry Number)를 부여받아야 함

33) KOTRA, 「멕시코 수출·산업 진흥제도(IMMEX/PROSEC)의 이해」

34) https://www.gob.mx/cms/uploads/attachment/file/30984/inf_espec_FICHA_INFORMATIVA_IMMEX_rev4.pdf [2018.06.11 검색]

35) <https://www.bakermckenzie.com/en/insight/publication/2017/10/immex-prigrams-cancelled> [2018.06.08 검색]

- IMMEX 운영되는 회사의 주소가 RFC에 등록되어 있고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함
- 연방 세법 제69조 및 제69조 B항에 해당하는 회사이어야 함
- SAT에서 발급한 세금 준수에 대한 내용을 이행할 것

□ IMMEX 활용 시 유의사항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멕-EU 자유무역협정(FTAEUM), 멕-EFTA 자유 무역협정 체결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한 재화를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미국, 캐나다, EU, EFTA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는 연기되지만, 일반 수입관세는 납부해야 함.
 - 즉, 한국에서 수입한 재화를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미국, 캐나다, EU, EFTA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연기 혜택(즉, 부가세 납부가 면제됨)만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수입관세는 납부해야함에 유의

4 - VAT Certification

□ 제도개요

- 2014년 개정세법에 따라 IMMEX의 VAT 면제혜택이 종료되며, 유사한 혜택을 위해 VAT Certification 신청 필요
 - VAT Certification을 얻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100% 부가가치세 공제가 적용되어 면세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
 - 단, 수입 시 지불해야 하는 16% 부가세는 실제 수출되거나 매출 발생시에 공제 또는 환급이 이뤄지므로, 자름 흐름 방면에서는 회수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



□ VAT Certification 면세 조건³⁶⁾

구분	취득조건	혜택	비고
A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MEX Program 운영자로서 아래 내용에 해당이 없는 기업 - 과거 12개월간 임시수입의 60% 이상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 신청 후 20일 내 환급 ○ 매년 서류 제출 후 갱신 	투자금의 경우 토지 및 부동산은 제외
AA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명 이상 고용하였거나 5천만페소 이상 시설투자 또는 IMMEX 5년~7년 이하 운영 - 과거 12개월 내 부가세 환급 기각 사실이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 환급 신청 후 15일 내 환급 ○ 세무조사 전 누락부분에 대해 30일 자가수정기간 부여 ○ 과세소득 누락시 강력한 세무조사가 아닌 “안내장” 발송 ○ 2년 후 자동갱신 가능 	
AAA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0명 이상 고용하였거나 1억페소 이상 시설투자 또는 IMMEX 7년 이상 운영 - 과거 12개월 내 부가세 환급 기각 사실이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 신청 후 10일 내 환급 ○ 세무조사 전 누락부분에 대해 60일의 자가 수정기간 부여 ○ 과세소득 누락시 강력한 세무조사가 아닌 “안내장” 발송 ○ 관세재고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통관시 제품 일련번호 제출 의무 제외 등 	

36)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멕시코)」 p91.
Baker McKenzie, 「Doing Business in Mexico 2017」 p23~24 참고



□ VAT Certification 취득요건

- 회사 주주와 사원(Partners), 법적 대표자(Legal Representative)가 각자의 세무의무 이행 여부
- Infrastructure를 법을 준수하며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멕시코에 투자한 것에 대한 문서화 수행 여부
- IMMEX 관련 의무(주소, 재고관리시스템 등의 적시 update) 이행 여부
-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여부
- SAT의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고, 유효한 CSD(전자인장, Digital Stamp) 소유 여부
-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명(보통 60~80%의 수출비율 달성 필요)
- IMSS에 종업원을 등록하고, 사회보장관련 부담금 납부 여부(Outsourcing 포함)
- 과세당국의 요청이나 방문에 대응 여부

□ VAT Certification 유지조건

- 회사명 변경 및 법적주소지와 변경발생 시 신고의무
- 주주, 사원(partners), 법적대표자, 구매처, 공급처변경에 대한 월별신고
- 국제무역거래 시 CAAT등록된 운송업자와만 거래해야 함
- 합병이나 사업취득시 신고 또는 새로운 인증신청 필요
- VUCEM에 마킬라 가상수출거래, CTM 등 등록필요
- 과세당국의 감사요청시 회사방문허용
- IMSS관련 종업원 · 회사부담금의 납부이행



- 과세당국이 제공한 세액공제(Tax Credit)에 대해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전송
- 최초 취득시의 요건 유지

5 IMMEX, PROSEC, VAT Certification 신청³⁷⁾

□ 신청절차

- IMMEX
 - 경제부에 신청서 제출 후 10영업일의 심사기간이 소요
 - 일반적으로 IMMEX 신청 시 특혜관세 프로그램인 PROSEC도 함께 신청을 하여 동시에 승인을 받음
- VAT Certification
 - IMMEX 승인을 취득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에 신청서 제출 후 40 영업일의 심사기간 소요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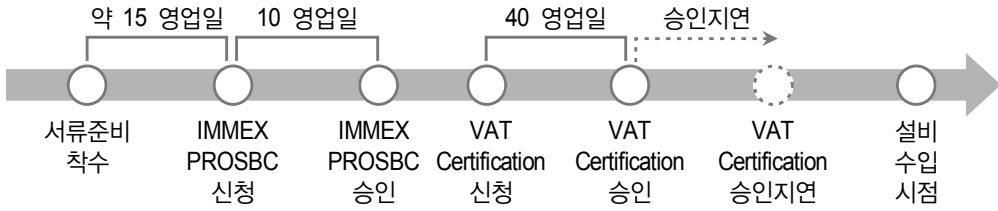
- 경제부에서 승인하는 IMMEX 및 PROSEC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보정요구 없이 승인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지만, 국세청에서 승인 하는 VAT Certification의 경우 신청서 제출이후 40영업일의 심사기간 중 대부분 추가적인 보정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37) <https://www.pwc.de/de/internationale-maekte/assets/doing-business-mexico.pdf> [2018.06.12검색]



- VAT Certification 신청기업에서 추가 요청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또 다시 새로운 40영업일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최초 신청 시부터 완료까지 3~5개월 정도의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

<신청이후 승인까지 예상 소요기간>



납세자보호제도

VI

- 1. 납세자 보호제도 / 114
- 2. 조세 불복제도 / 114



1 - 납세자 보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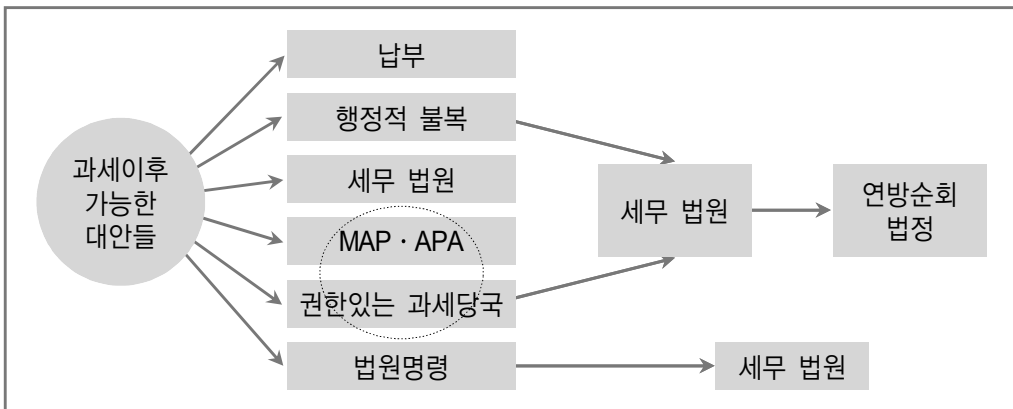
가. 납세자보호장치

□ 납세자 보호 일반

- 조세행정기관의 추가납부세액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무부나 연방세무법원, 대법원에 불복청구 가능³⁸⁾
- 추가납부세액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함

2 - 조세 불복제도

가. 과세관청의 과세 이후 납세자의 선택 가능한 대응³⁹⁾



38) 멕시코 조세청 <https://www.gob.mx/prodecon/documentos/ley-federal-de-los-derechos-del-contribuyente>

39) 멕시코 조세청 http://www.sat.gob.mx/DerechosyObligaciones/Paginas/derecho_1.htm [2018.06.11 검색]



납세자의 대응	방법(요약)
① 행정적 불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30일내 신청 · 3개월내 결정
② 세무법원	45일내 소송제기 → 45일내 과세당국의 답변제출 → 증인신청 → 마무리 및 법원의 종결명령 → 60~120일내 판결
③ CA절차 · MAP · APA ⁴⁰⁾	OECD, 상호합의절차규정(Effective Mutual Agreement Procedure, 2007) 준수 · 상호합의 후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대응조정됨
④ 분쟁 해결절차 (Settlement-agre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법적대리인과 과세당국이 조사결정 등에 합의하는 절차(40일이내) · 합의결과는 불복대상이 안됨 (2014년 신설)

□ 행정적 불복

- 추가납부세액 고지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자신의 거주지의 과세관청인 지역세무상담국(Local tax counsel administration General legal administration)에 신청
- 과세관청은 불복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담당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파일을 제출받고 3개월 동안(납세자가 세무조사파일에 포함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추가시간을 요청할 경우 6개월로 연장가능) 검토 후 결정
 - 불복절차 중에는 징수 절차 정지됨

□ 연방세무법원(Federal Tax and Administrative Court)에 소송

- 제기기간 : 추가납부세액고지서를 받은 후 45일 내

40) 멕시코 조세청 「Mexico Dispute Resolution Profile」 [2018.06.14검색]

- 소송 제기 시 소송의 이유와 입증 서류가 있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은 각하됨
- 소송절차
 -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해당지역 관할의 세무지방법원(Regional Chamber) 혹은 대도시법원(Metropolitan chamber, 멕시코시티)으로 소송을 이관
 - 상급법원인 대법원(Superior Chamber)에서는 관할과 무관하게 중요한 세금문제와 법령이 처음으로 해석되는 이전가격사례 및 국제조세 케이스를 담당
 - 법원은 조사담당 세무당국에 자료제출명령을 내려 45일내에 답변을 받음
 - 납세자와 과세관청에게 증거나 전문가 증인 등을 제출하도록 5일의 기간을 주며 증인과 전문가의 증언을 들은 후 양측은 5일간 분쟁 마무리 시간을 가짐
 - 최종적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종결명령을 내리고 60일 내에 판결문을 발행
- 특이사항
 - 소송 제기 전 반드시 행정당국의 불복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 다만, 이전가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과세당국에 행정적 불복절차를 통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세당국과 추가 협상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불복신청을 바로 세무행정법원에 하는 경우 납세자는 일년치의 세금의 추정치와 추징금액만큼 채권, 예금 모기지 등으로 보증을 제공해야 함
- 항소 : 법원결정에 대한 불복
 - 납세자와 세무당국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15영업일 내에 연방순회항소 법원(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에 항소할 수 있음



- 납세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재판과정 중에 헌법적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amparo, constitutional appeal)을 제기함으로써 불복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법원의 결정이 잘못된 해석이나 절차법의 위반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세금관련 검토와 헌법소원(amparo)을 처리하는데 3~6개월 정도 걸리나 법원의 업무하중과 분쟁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처리기간은 다양해짐

□ 그 외 분쟁해결절차-분쟁해결합의(Settlement Agreements)

- 분쟁해결합의는 2014년 세제개혁 때 세금문제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의 대안으로 소개
 - 세무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법의 해석 결과와 사실에 관해 과세당국과 합의를 이루는 절차임
 - 납세자를 위한 변호사사무소(Prodecon, Procuraduria de la Defensa del Contribuyente)가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조력자이자 중재자, 증인으로 참여하여 세무조사나 서면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결정에 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함
- 조사대상 납세자는 최종과세고지를 받기 전에 어느 때든지 분쟁해결합의(Settlement agreements) 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 분쟁해결합의의 효력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를 구속하고 합의 결과는 불복대상이 되지 않음
 - 40영업일 내에 합의에 도달해야하며 법적 조사와 절차진행은 분쟁해결 합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지됨
- 납세자를 위한 변호사사무소(Prodecon, Procuraduria de la Defensa del Contribuyente)

- 납세자를 위한 ombudsman제도로 납세자의 헌법적 권리보호위해 2011년 9월 설립 후 2014년 세제 개혁시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분쟁합의 기관으로서 납세자편 당사자가 됨
- Prodecon은 세무 문제에 특화된 기관으로 멕시코 정부기관이나 독립적 활동을 보장받으며 과세당국에 문제 시정을 요구하고 세법 개정시 의회에 납세자 입장을 대변해 조언을 하며 과세당국이 이의절차에서 증거제시를 안하거나 prodecon의 권고사항을 무시 또는 거부 하는 경우 등에 과징금 (penalties)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음
- 납세자 무료 이용가능, 멕시코 전 지역에서 사무실 또는 대표전화 통해 이용 가능함. www.prodecon.gob.mx>Delegaciones (지역별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가능)
- 납세자를 위한 변호사사무소가 발행한 2014년 리포트에 따르면 2014년에만 873건의 분쟁해결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66.26%가 합의에 도달함

□ 조세조약 관련, 권한있는 과세당국(CA)절차

- 쌍방APA 절차이며 조세조약관련 국가 간 분쟁에서 국세청 내 대납세자 일반행정국 담당(General administration of large taxpayer)이 ‘권한있는 과세당국(competent authority)’이 됨
- 일반적으로 사례분석과 완결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권한있는 과세당국에 의해 논쟁이 된 기술적 이슈들은 이전가격 관련 문제가 지배적이거나 그 외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조세조약분쟁에 있어서 OECD의 상호합의 절차규정(Effective Mutual Agreement Procedures,2007)을 준수
- 국내의 이전가격 사례의 대응조정은 법규화 되어 있지 않으며 납세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조정을 보고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184조에 규정된 권한있는 과세당국 절차를 신청해야함



□ 기타

○ 환급 가산금

- 분쟁절차 종결 후 납세자에 대한 환급 결정이 내려지면 과세관청은 40일 내에 환급
- 40일이 완료된 이후부터 환급가산세가 계산되며 1개월에 1.13%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계산됨

NAFTA와 멕시코 경제

VII

1. 멕시코와 NAFTA / 122
2. NAFTA 원산지 결정기준 / 123
3. NAFTA 재협상 / 132
4. NAFTA 재협상이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34
5.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 135



1 멕시코와 NAFTA



□ NAFTA 연혁⁴¹⁾

- 1994년 1월 1일, 미국·캐나다·멕시코 북미 3개국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 탄생
 - NAFTA 경제권은 발효 연도 기준, GDP 8조 1,630억 달러와 인구 규모 약 3억 8천만 명으로 당시 최대 경제권이었던 EU를 능가
- NAFTA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으로서 의미가 큼
 -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천연자원,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 등 각국의 비교우위 요소를 결합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라는 공동 목적과 NAFTA 회원국간의 상호이해관계가 작용하여 추진되었음
- NAFTA는 2016년 기준 GDP 21조 2,011억 달러(전 세계 GDP의 약 28.1%), 인구수는 4.8억 명(전 세계 인구의 약 6.6%)으로,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음
 - 2016년 NAFTA 회원국 간 교역규모는 약 1조 1,000억 달러 수준으로, NAFTA 체결 전 대비 3배 이상 크게 확대되었음.

□ 멕시코와 NAFTA

- 멕시코는 NAFTA 체결 후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중남미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면서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 국가신용도 향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41) 한국무역협회,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 대외경제 동향과 시사점



- NAFTA 체결 전후 멕시코 현황 비교

구 분	1993년	2016년	비 고
외국인직접투자	44억 달러	321억 달러	7.3배 증가
수출	519억 달러	3,739억 달러	7.2배 증가
국가신용도	Ba2	A3	Moody's 등급 5단계 상승

자료 : UN 중남미경제위원회(CEPAL),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Moody's.

2 - NAFTA 원산지 결정기준⁴²⁾

□ 특징

- NAFTA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사용
 -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가공공정기준도 예외적으로 함께 채택하고 있으며, 보충기준으로서 최소허용기준(De Minimis)도 사용
- 섬유·의류,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규칙을 적용

□ 일반규정

-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역내 국가에서 완전히 획득하거나 생산한 물품과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된 재료로 가공한 물품은 완전생산기준에 의해 NAFTA 역내산으로 판정하고 특혜를 부여
- 협정 부속서 401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역시 NAFTA 역내산으로 판정

42) 무역연구소, 원산지규정의 이해와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들을 조합하는 기준에 기초를 두고 있음.
 - 일정 형태의 화학제품, 플라스틱, 신발, 기계류,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함.
- 미조립상태의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서 협정 부속서 401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방법에 따라 계산한 결과 역내 부가가치가 60% 이상인 물품 역시 NAFTA 역내산으로 판정(순원가법 적용 시 50% 이상)

□ 실질적 변형기준

1) 세번변경기준

- 최종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각종 역외산 수입재료가 역내에서의 생산활동 결과 세번이 변경되어야 함.
- 부속서 401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는 품목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세번분류 변경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 세번변경기준 적용 예시

헝가리산 냉동돈육(HS 0203)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카리브 연안국으로부터 수입한 향신료(HS 0907~0910)와 미국에서 재배한 곡물을 섞어서 소세지(HS 1601)를 만들었을 경우

소세지의 원산지결정기준 : “CTC (HS 2단위 변경)”

판정결과 : 수입재료인 돈육이 제2류에서 16류로, 또 수입된 향신료가 제9류에서 제16류로 변화되었으므로, 소세지의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이 소세지는 역내산으로 인정



2) 부가가치기준

- 세번변경기준 이외에도 일정 수준의 역내부품가치 비율이 충족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데, 주로 자동차관련 제품과 화학제품의 경우에 사용되며,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 제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함.
 - 제품의 역내 부품사용이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의 60%이상이거나;
 - 제품의 역내 부품사용이 순원가(net cost)의 50%이상일 경우(단, 자동차 제품, 신발, 워드프로세서 등에는 순원가방식을 적용하며, 적절한 거래 가격이 없는 제품에도 이 방식을 적용)

-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역내 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면 특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섬유, 의류제품 제외), 아래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함.
 - 물품이 미조립 상태, 또는 해체된 상태로 개타나, 멕시코, 또는 미국으로 수입되었으나 HS 분류통칙에 의해 조립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 수입부분품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 부분품이 완제품과 동일한 HS 6단위 물품 또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 세 번으로 분류되는 경우

※ NAFTA 역내 부가가치율 계산법

i) 거래가격공식 계산방법

$$RVC = \frac{(NC - VNM)}{NC} \times 100$$

RVC(Regional value content) = 역내 부가가치비율

TV(Transaction value) = FOB기준으로 조정된 물품의 거래가격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 역외산 원자재 재료비

ii) 순원가공식 계산방법

$$RVC = \frac{(NC - VNM)}{NC} \times 100$$

NC(Net cost) = 순원가

즉, 생산자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 중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마케팅과 사후 판매서비스 포함), 로열티, 선적비, 포장비, 허용범위를 넘는 이자 등을 뺀 금액

※ 부가가치기준 적용 예시

일본에서 전기고대기 부품(HS 851690)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전기고대기 (HS 851632)를 생산할 경우

전기고대기 가격 = \$4.40

역외산(일본산) 부품가격 = \$1.80

전기고대기 총비용 = \$3.90

선적 및 포장비용 = \$0.25, 순원가 = \$3.65

우선 세번변경기준으로 HS 4단위(호)의 변경이 일어났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거래가격 계산법으로는 60%, 순원가 계산법으로는 50%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시켜야 역내산으로 원산지 인정

거래가격 계산법 적용시, $(4.4-1.8)/4.4 \times 100 = 59\%$ 이므로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순원가 계산법 적용시, $(3.65-1.80)/3.65 \times 100 = 50.1\%$ 이므로 역내산으로 인정

□ 보충기준

1) 미소기준 (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모든 역외산 수입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어야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음.
 - 이런 경우, 역외산 수입재료가 극히 미미하게 수입되어 쓰였는데에도 불구하고, 세번변경이 발생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e Minimis 조항(405조)은 최종제품 부가가치의 7%까지는 역외국산을 포함할 수 있다고 허용
 - 농산물의 경우 하고 있으나, HS 6단위의 세번변경은 반드시 NAFTA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담배의 경우는 9%까지 역외산 포함 허용
 - 섬유·의류제품의 경우는 미소조항 적용시 ‘가격’ 대신 ‘중량’ 기준 적용



○ 미소조항 적용 예외물품

- 낙농품, 벌꿀, 설탕, 동식물성 지방, 식용과일, 견과류 및 우유, 주스, 알콜음료 등
- 냉장고, 냉동기, 에어컨, 스토브, 레인지, 쓰레기압축기, 의류건조기,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역외산 재료
-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인쇄회로 조립품으로서 물품 용도에 제한이 있어 부속서 401에서 규정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

2) 중간재료 (Intermediate Materials, 402조 10항)

- 최종제품의 역내 부가가치 비율 산출시 최종제품의 생산 원재료를 중간 재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중간재료가 역내산으로 인정되면, 중간재료 전체 가격이 역내 부가가치로 계산됨.
 - 즉, Roll-up (상향적 누적) 인정
- 중간재료 지정의 목적은 개개의 독립적인 공급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와 자신이 직접 원재료를 제조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중간재료는 ①역내산 재료로 생산하는 경우, ②역외산 재료로 생산하는 경우, ③역내산과 역외산 재료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으며, ②와③의 경우, 역외산 재료가 사용되지만, 중간재료 규정에 의해 역외산도 역내산 부가가치에 계상될 수 있어 최종제품의 역내산 여부결정에 유리하게 작용됨.
 - 단, 자동차 관련 제품(403조 및 부속서 403.1에 규정)과 엔진 및 기어박스 등(부속서 403.2에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 중간재료 가격 결정 방법은 아래 두 가지 중 편한 것으로 택하며,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중간재료 가격은 대체로 같아야 함.



- ① 최종제품 생산에 드는 총비용을 중간재료로 나누어 계산
 - ② 중간재료 생산에 드는 비용을 각각 계산하여 산출
- 중간재료의 역내산 인정 요건이 부가가치 기준인 경우 부가가치 계산은 순원가 계산법에 의하며, 판매촉진비, 로얄티, 선적 및 포장비, 인정될 수 없는 이자 비용 등은 공제하고 계산함.

3) 누적계산 (Accumulation, 402조 10항)

- 중간재료에 관한 규정이 원재료를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를 위한 것이라면, 누적계산 규정은 타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조달받는 생산자를 위한 것으로서, 조달한 원재료의 부가가치 계산 방법에 관한 것임.
-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원재료 가격은 그 전체를 단위로하여 계상하는데, 원재료가 역내산으로 인정되면 그 전체가격을 역내 부가가치에 계상하고, 역외산으로 인정되면 그 전체 가격을 역외부가가치에 계상함.
- 그러나, 역외산으로 인정된 원재료 생산이 전적으로 역외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역내 부가가치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을 떼어 역내부가가치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누적계산 규정임.
- 누적계산 규정 적용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부가가치 비율 산출시 반드시 순원가 계산법을 사용
 - 최종제품 생산자/수출자는 해당 원재료의 생산자로부터 그 원재료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역외산 재료의 순원가와 역내 부가가치비율에 관한 정보를 획득해야 함.
 - 최종제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역외산 재료는 부속서 401에 규정한 세번변경이 일어나야 하며, NAFTA 회원국 하나 또는 둘 이상에서 역내 부가가치 비율 조건을 충족해야 함.



4) 원산지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공정 등 (412조)

- 물품의 특성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물이나 다른 재료로 희석했을 경우 세번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원산지 인정 공정이 되지 않음.
 - 다른 공정과 결합하여 물리적 특성이 변하는 경우엔 원산지 인정 공정이 됨.
- 생산, 또는 가격책정에 관한 관행이 원산지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입증되면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5) 대체가능물품 (Fungible goods or Fungible materials, 406조)

- 대체가능물품은 상업적으로 상호 대체 가능한 물품으로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을 말하며, 생산자가 대체 가능한 역내산물품과 역외산 물품을 혼합했을 경우 양자를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없게 되는데, 이때 생산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재고관리기법에 의해 결정함.
 - 먼저 들어간 재고를 먼저 방출하는 선입선출법, 또는 가장 나중에 들어간 재고를 먼저 방출하는 후입선출법을 적용

6)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등 (407조)

- 본제품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등이 본제품의 필수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일 경우 본제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되면 이들 역시 역내산으로 인정됨.
 - 그러나, 부가가치 산정에 있어서 이들의 가격은 역내산 또는 역외산으로 각각 나누어 계상함.

7) 선적용 포장 (410조)

- 선적용 포장재료와 포장류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모두 무시하고 원산지를 결정함.



8) 환적 (411조)

- 역내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역외에서 가공공정을 거치는 경우 역내산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하역이나 재선적 또는 물품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나 역내로 운송하기 위한 작업의 경우엔 지장이 없음.

□ 품목별 특별기준

1) 섬유·의류

- 섬유·의류제품에는 “섬유사요건(Yarn-forward rule)”을 적용
 - 섬유·의류는 3단계 변형 (triple transformation)검사를 통해 섬유사요건을 만족시켜야 역내산으로 판정되며, 이는 최종 의류제품에 포함되는 의류부품 일체가 역내산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 3단계 변형

- 1단계 : 제품 제조과정에서 한번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예 : 의류가 역내에서 재단, 재봉되면 역내산 판정)
- 2단계 : 제품 제조과정에서 두번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예 : 의류부품(옷감)이 역내산이어야 역내산 판정)
- 3단계 : 제품 제조과정에서 세번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예 : 원사부터 모든 부품이 역내산이어야 역내산 판정)

- 단,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역내산 섬유사, 직물, 의류의 수입에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관세할당제(tariff rate quota)를 도입
- 북미지역에서 공급이 부족한 직물로 만든 편직내의류, 브래지어, 셔츠류의 경우엔 ‘Yarn-forward rule’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크나 린넨제품의 경우



‘단일변화방식’을 적용하여, 실크 블라우스가 역외산직물로 만들어져도 역내에서 재단, 봉제된 경우엔 역내산으로 인정

- 북미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섬유(fiber)로 만든 직물·의류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어, 면사와 면편직물의 경우엔 'Fiber-forward rule'을 적용

2) 자동차 관련 제품

- 세번변경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있음.
- 부가가치 산출은 순원가 계산법을 적용하지만, 자동차 관련 제품은 품목에 따라 결정기준이 약간 높음.
- 역외산 1차 부분품과 역내산 1차 부분품을 조립하여 새로운 2차 부분품을 만들고 이를 자동차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경우, 2차 부분품전체가 역내산이 되거나 또는 역외산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자동차와 경승용차의 부분품은 추적법(Tracing)에 의해 1차 부분품을 추적하여 그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를 산출
- 역내 부가가치 산출시 모든 자동차 또는 다른 NAFTA 국가로 수출되는 자동차군에 대해 회계연도 단위로 비용을 평균계산 가능

2) 자동차 관련 제품

- 컴퓨터, 통신장비, 텔레비전, 기계공구, 반도체 등 대부분 전자제품은 세번 변경기준을 적용하며, 북미산 핵심부분품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 14인치 이상 TV 수상기의 경우, 영상튜브가 북미산이거나, 북미에서 조립된 경우에만 역내산 인정



- 세번변경기준만 적용되는 경우는 HS 2단위 변경을 요구하거나, 좀 더 완화된 4, 6단위 변경을 만족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까지 충족시켜야 함.

3 - NAFTA 재협상



□ NAFTA 재협상 추진경과

-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부터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NAFTA 재협상을 개시함
 -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 당시부터 ‘최악의 거래(worst deal)’라고 표현하는 등 NAFTA를 맹비난했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를 폐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 후 NAFTA의 현대화를 명분으로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2017년 8월 16일 재협상에 돌입함
 - 미국정부는 재협상 개시와 함께 2017년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상대국들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협상은 2018년까지 지속됨
 - 2018년 7월 1일 멕시코 대선 이후 미국은 캐나다를 제외한 채 멕시코와 양자 협상을 진행했으며, 8월 27일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고 발표
- 멕시코와의 양자간 협상 타결 이후 미국은 캐나다와의 양자 협상에 돌입
 - 캐나다 측 NAFTA 재협상 대표인 Chrystia Freeland 외교부장관은 미국·멕시코의 양자간 합의 이튿날에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간 협상에 대해 논의하고 8월 29일부터 공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함



- 미국과 캐나다는 협상 재개시 이후 1주일 내로 협상을 완료하기를 희망했지만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 개방과 미국의 NAFTA 분쟁해결 조항 삭제 등의 주제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
- 협상단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이 설정해놓은 합의 최종 기한인 9월 30일이 다가올수록 협상 타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심화됨

□ NAFTA 주요 협상이슈

- 미국과 멕시코·캐나다의 주요 협상 쟁점분야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 일몰조항(Sunset Clause), 분쟁해결 조항 등임
- 자동차 원산지 규정
 - (현행) 역내 부품 사용비율이 62.5% 이상인 경우 무관세 수출입이 가능
 - (쟁점) 미국은 역내 부품 사용비율을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원산지 규정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멕시코 및 캐나다는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을 감안하여 반대하고 있음
- 일몰조항
 - (현행) NAFTA 회원국은 6개월 유예기간 (grace period) 이후 NAFTA 탈퇴가 가능함
 - (쟁점) 미국은 5년 주기로 재협상이 가능하도록 5년마다 협정이 자동 종결되는 일몰조항 추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멕시코 및 캐나다는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장기투자 위축 등을 고려하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분쟁해결 조항
 - (현행) 협정 제19조에는 분쟁 발생시 회원국들이 공동 참여하는 분쟁조정 패널을 통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음

- (쟁점) 미국은 협정 제19조를 폐지하고 국내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멕시코 및 캐나다는 이 조항의 삭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

4 NAFTA 재협상이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제조업 분야

-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자동차부품 관련 역내 원산지 비율 규정 확대 강화
 - (역내부품조달 비율 인상) NAFTA 무관세 수혜를 위한 역내 자동차 부품조달 비율 요건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
 - * 한미FTA의 역내 부품조달 비율은 35%, CPTPP 경우 45%
 - **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 무관세 수혜를 위한 역내 부품조달 비율을 70%로 규정
 - (노동가치 규정 신설) 자동차 생산의 40%~45%는 시간 당 임금이 최소 16달러 이상인 노동자를 통해 생산되도록 하는 규정에 합의
 - * 자동차 교역 관련 위 3가지 신규정은 3년간의 조정 기간 후 전면 도입되며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신규정 이행계획을 밝힌 기업들에 한하여 최대 5년의 조정 기간이 허용
- (시장접근성 확대) 양국 간 상품교역 활성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완화
 -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수입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유지하고, 수출입면허, 세금, 기타 수수료 등 부대절차 및 비용의 투명성 관련 규정 도입
 - 정보통신,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제품, 화장품 등 특정 제조업 분야별 부속서 신설에 합의하여 양국 간 규제 호환성 증진 및 교역확대 도모



- (섬유조항 신설) 역내 섬유·의류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역외 원료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미국산 섬유, 원사, 천 등 섬유 제품 사용 장려

□ 농식품 분야

- (시장왜곡 근절) 농산물 교역확대와 규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 농산물 관련 수출보조금 금지 및 WTO의 특수농산물 긴급수입 제한 조치 사용 금지 등에 합의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거래 보장
 - 과학에 기반을 둔 위생검역 기준 정립 및 양국 간 분쟁 발생 시에 대비 기술적 중재(technical consultation)를 위한 분쟁해소 장치 신설
- (신규범 정립) 농축산업 기술발전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도 업데이트
 - 유전자 조작 등 첨단 농업 바이오 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규범수립에 합의하고 양국 간 정보교환 등 농업 기술발전과 교역증진에 협력
 -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도(GI) 정립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식품 제조법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한 부속서 채택에 합의

5 -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



□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세계자동차공업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는 세계 6위 자동차 생산국이자 7위의 수출국이며, 멕시코에는 미국의 Big 3 완성차 업체와 닛산, 혼다 등 일본기업을 비롯하여 10여 개의 완성차 업체가 진출해 있음

- 2009년 이후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7년 멕시코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대비 8.9% 증가한 377만 대 수준임
 - 2017년 기준 멕시코의 총 377만 대 자동차 생산 가운데 미국 Big 3 기업이 46.6%, 일본기업 35.3%, 독일기업(VW) 12.2%, 한국기업(기아)이 5.9%를 생산하고 있음
- NAFTA(캐나다,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자동차 수입대상국이자 주요 완성차 제조사의 생산기지로, 멕시코는 2017년 기준 전체 자동차 수출 가운데 미국에 79%, 캐나다에 9%가량을 수출하였음
- 멕시코는 미국과 근접성 및 저렴한 인건비 등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음
- 미국의 NAFTA(캐나다, 멕시코) 지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 비중은 48%에 달하며, 특히 상용차의 경우 미국의 총수입 가운데 멕시코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77.5%(2016년 기준 110.8만 대, 348.8억 달러)를 차지함
- 멕시코의 자동차 주요 수출국은 미국으로 2017년 기준 국별 수출 비중은 미국 79%, 캐나다 9%, 중미 등 기타 지역 9%, 벨기에 2%, 독일 1%임
 - 업체별로 살펴보면, 미국기업(포드, GM, FCA)과 일본기업(닛산)의 미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편임
- 2017년 기준 미국 3대 수출차종은 RAM2500(FCA), 실버라도(GM), 센트라(닛산)이며, 캐나다 3대 수출차종은 GMC Sierra(GM), RAM2500(FCA), 실버라도(GM)임
- 우리 기업인 기아(Kia)도 2016년 하반기부터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에서 28만 대 물량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동 중이며, 2017년도에는 생산의 70% 이상을 수출하였음
 - 2017년 기준으로, 수출량이 가장 많은 승용차 브랜드는 센트라(닛산), 뉴 제타(VW), 퓨전(포드), 포르테(기아), 베르사(닛산)였음



- [관련 조항] NAFTA 자동차 부문 개정 초안에 따르면 수출 자동차의 무관세 적용을 위한 조건으로 자동차의 역내 부품 사용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자동차 부품의 40~45%에 대해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노동자가 생산하도록 함
 - 미국은 국내로 자동차 산업을 유치하고,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멕시코를 강하게 압박해왔음
 - 지난해 8월 이후 진행된 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0~35%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고,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부품의 50%를 미국산, 85%를 역내산으로 하고, 부품의 원산지 추적을 100% 의무화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
 - 자동차 부품의 50%를 미국산으로 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자동차 부품의 40~45%를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노동자가 생산해야 한다는 임금 조항으로 형태가 바뀌어서 타결되었는데, 이러한 최저임금 요건은 미국에서의 생산 증가, 미국산 부품의 사용 등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됨
 - 2015년에 미국 자동차 공장 근로자는 시간당 평균 23.83달러, 캐나다 19.13달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과 캐나다산 부품을 사용 시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 NAFTA 협정문이 아직 도출 전이나, 만약 임금 조항이 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동 규정을 만족하는 독일 및 일본 부품을 사용하여 임금 조항을 일정 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임
- 멕시코에 위치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 일본산 주요 부품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에 걸쳐 글로벌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어, 새로운 NA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변경하고 사실상 미국 부품의 사용 비중을 늘려야 하므로 이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와 수익 감소가 예상됨

- NHTSA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완성차 가운데 미국/캐나다산 부품 비율은 2018년 현재 대부분 40% 미만이며, GMC Terrain 차종의 경우만 미국/캐나다산 부품 비중이 45%로 새로운 임금 규정을 만족할 수 있음
 - Bloomberg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생산 차종 가운데 62.5% 이상 75% 미만 역내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차종은 닛산 베르사, 아우디 SQ5, Fiat 500이며, 75% 역내산 조건을 만족하는 차종 가운데 새로운 최저 임금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 차종은 닛지 저니, 지프 컴패스, 링컨 MKZ, 닛산 NV200 트럭, 아우디 Q5, 닛산 센트라/베르사, 도요타 야리스임
 - 이 중 닛산 센트라와 베르사는 2017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물량이 각각 200만 대와 100만 대 이상으로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자동차 가격 상승 및 수익 감소 예상
 - 노무라 리포트는 마쯔다와 닛산의 경우 각각 4,500만 달러와 1억 3,500만 달러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
- 2016년 생산을 시작한 멕시코 기아차 공장의 경우 미국과 일본 기업에 비해 이번 재협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으로 판단됨
- NAFTA 1.0 규정에 따라, 초기 5년 이내 공장의 경우, 특혜 관세 조건으로 역내 부품 사용 비율 50%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아차의 경우 2016년 9월 가동을 시작하여 유예기간이 있으며, NAFTA 재협상 규정도 2023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기아차 공장은 생산량의 80%를 미주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어, 추후에는 NAFTA 재협상에 따른 부품 공급선 변화가 불가피함
 - 기아차는 고임금 근로자 생산 비중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현대·기아차 공장 및 동반 진출한 한국 부품업체 등이 생산하는 고가의 핵심 부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시장에 동반 진출한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의 경우에는 미국과 멕시코의 생산원가 차이(인건비 등)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진출한 기아자동차 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
 - 멕시코 생산량 가운데 미국 Big 3 기업과 일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미국과 일본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멕시코 기아자동차 업체는 승용차만을 생산하고 있어 픽업트럭(MFN 관세 25%)을 생산하는 다른 글로벌 업체에 비해 영향이 제한적임
- [상용차] 픽업트럭의 경우 미국의 기준 관세율(최혜국대우)은 25%로, 원산지 규정의 준수로 인한 비용 증가가 클 경우, 픽업트럭을 생산하는 미국 및 일본계 자동차 업체는 생산공장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옮길 유인이 있음
- 픽업트럭의 경우는 MFN 관세율이 25%로 원산지 규정의 준수가 중요해짐
 - 2018년 초 NAFTA 재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Big 3 업계 중 하나인 FCM은 2020년까지 중형트럭 램의 생산공장을 멕시코에서 미국 미시간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새로운 NAFTA 규정에 따라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 상승이 2.5%보다 높을 경우, 최혜국 대우 관세의 적용(승용차 2.5%)을 받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음
- 대미 수출을 위해서는 NAFTA 무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변경된 기준을 맞출 것으로 예상
 - 다만 비용 상승폭이 2.5%보다 높을 경우 최혜국대우 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음
 - MUFG 유니온뱅크(2017)는 미국 생산에 비해 멕시코에서 생산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을 판매가격 대비 5%p 내외로 추정, 2.5%의 관세가 부과되어도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원산지 규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특혜 관세 혜택을 포기할 경우 오히려 역외산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어 미국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함
 - 미국의 자동차연구센터(CAR)는 NAFTA를 통한 무관세 혜택이 줄어들 경우 유럽산 또는 아시아산 자동차 부품 사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를 고려하면, 변경된 원산지 규정이 멕시코 승용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 상승폭 2.5%에 상응하는 영향과 같거나 작음
- 미국이 대멕시코 자동차 수입 물량에 제한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NAFTA 재협상과 연계되어 논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종합의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멕시코산 자동차 대미 수출이 240만 대(2017년도 멕시코 대미 수출량)를 초과할 경우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NAFTA 재협상과 연계되어 논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무역협상을 타결하더라도 자동차 232조 관세를 면제받는 것과 별개라는 해석이 가능함
 - 미국이 232조 자동차 관세를 무기로 수입을 제한하려는 상황에서 멕시코의 수출 물량에 제한이 생기면, 완성차 업체가 멕시코 공장의 가동률을 높여 대미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대안이 되기 어려울 것임

멕시코 투자환경

VIII

- 1. 멕시코 투자환경 / 142
- 2. 멕시코 경제 및 주요 산업동향 / 143
- 3. 한국기업의 對 멕시코 투자동향 / 146
- 4. 멕시코 투자 및 진출 방법 / 148
- 5. 법인 설립 및 철수 / 151
- 6. 관세제도 / 154
- 7. 노무관리제도 / 161





1 멕시코 투자환경



□ 멕시코 투자의 이점

○ 지리적 이점 및 투자 안정성

- 미국 및 중남미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을 위한 수출기지로 활용
- 연평균 3%의 안정적인 인건비 상승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근접성에 힘입어 자동차, 전자, 항공산업 분야에 외국인투자 집중됨
- 45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세계 주요시장에의 접근성, 중산층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생산기지로서의 경쟁력 상승
- 멕시코는 최대 규모 시장인 미국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태평양과 대서양에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주요 소비시장까지의 해상운송에서도 강점을 보임

○ 멕시코 내수시장의 잠재 가능성 확대

- 멕시코는 인구 1억 2천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으며, 향후 40년간 전체 인구의 60%가 소비력이 높은 노동 가능 연령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임금 상승과 지리적 제한에 따른 운송비 부담을 고려하면 멕시코가 명실 상부한 '세계의 공장'인 중국보다도 경쟁력 있는 투자 대상국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멕시코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현저히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안정된 투자 환경

- 멕시코는 WTO, APEC, OECD의 멤버로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고 있고, 한국, 중국을 비롯한 스페인, 독일, 아르헨티나 등 27개국과 투자 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외국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보장
- 견고한 경제성장세('16년 2.8%, '17년 3.1%, '18년 4% 전망), 가계소득 증가로 내수확대 등 우호적 투자 환경 보유
- 2014년-2018년 국가인프라 건설계획(NIP : Natioanl Infrastructure Program) 등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 노동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합법적인 해고가 힘들어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는 등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존재
- 비효율적인 행정처리 및 불투명한 행정과 관료주의,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법규 등이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됨
- 멕시코는 자체 제조업이 취약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지에서 부품 및 소재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현지에 필요한 부품 소재의 제조업체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부품, 소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음

2 - 멕시코 경제 및 주요 산업동향 -



□ 멕시코 경제동향 및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는 멕시코 재정 여건 악화로 2017년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진단하며 멕시코 경제성장률을 2017년 1.7%, 2018년 2.0%로 전망함

-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국제 원유 하락에 따른 국가재정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멕시코 경제성장률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구매력은 확대되는 등 내수 시장은 양호하고 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3%)이며 정부 차원의 투자 확대 정책으로 향후 경제의 위험 요인보다 기회 요인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멕시코 주요 산업동향

- 자동차 산업
 - 멕시코는 GM, Ford, 닛산 등 다양한 자동차 완성업체가 진출해 활동 중이나 기술력이 부족해 자국 자동차 브랜드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
 - 글로벌 기업들은 멕시코 내수시장 판매보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한 대미 무관세 수출을 목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음
 - 멕시코 자동차 생산량의 약80%를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 물량의 70~80%를 미국 시장 수출로 소화하고 있음
 - 기아자동차는 2016년 연간 30만대의 자동차를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멕시코 누에보 레온 주에 건립 중이고, 현재 유라, 현대 모비스, 만도 등 협력업체의 동반진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기아자동차 공장이 양산에 들어갈 경우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전기 및 전자 산업
 - 멕시코 전기 및 전자 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멕시코 제조업을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이미 LG, 소니, 산요, 모토롤라, 필립스 등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완비하고 대미 수출을 위한 생산 기지로 활용 중임
 - 미국 경지 회복 기대에 따른 미국 내 소비심리 회복으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멕시코 전기 및 전자 산업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관련 산업

- 멕시코에서의 석유/가스 및 발전 등 에너지 관련 산업은 멕시코 국가의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외국 자본이 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었으나, 에너지 개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외국 자본이 멕시코 에너지 관련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림
- 멕시코 정부가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가운데 한국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에 노하우를 가진 'OCI'가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전력회사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 및 실제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채용됨

○ 건설업

- 2013년 멕시코 건설업은 정부 입찰, 프로젝트 사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4.5%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멕시코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 산업을 확장함으로써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2014년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2014~2018년 국가인프라프로그램'(총 7조 7천억 페소 투입)의 투자 계획의 영향으로 건설업의 회복세가 유지됨
- 2016년 초 멕시코 건설협회(CMIC : La Cámara Mexicana de la Industria de la Construcción)는 건설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합작 프로젝트 확대, 정부 주도 프로젝트 시 투명성 개선, 입찰 완료 후 적절한 예산 집행, 국가 주도 사업에서 소규모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등을 건의함



3 한국기업의 對 멕시코 투자동향



□ 한국기업 투자동향

○ 투자 현황

- 멕시코는 광활한 국토(한반도의 9배)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국가로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및 중남미 진출 전진 기지로 활용되고 있음
- 1968년~2015년3분기 우리나라의 對멕시코 투자액은 약 39억 달러임
- 분야별로는 제조업 21억 6,436만 달러(908건), 광업 20억 5,939만 달러(135건), 도소매업 4억 9,911만 달러(128건) 등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 2015년 8월 기준으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1,600개이며 2015년 기아자동차와 그 협력업체들이 멕시코 몬테레이로 진출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투자 증가 예상
- 현대·기아차가 멕시코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6%를 돌파하였으며, 2016년 6월 자동차 30만대 양산 목표로 현재 기아 공장이 뉴에보 레온주에 설립 중임
- 멕시코의 에너지 시장 개방으로 한국기업 최초 OCI가 멕시코 태양광 발전시장에 진출함
- 건설 플랜트 분야는 KMS(가스공사, 미쯔이상사, 삼성물산 컨소시엄)가 2008년 5월 CFE(연방전력청)로부터 Manzanillo항에 15만 kl용량의 LNG 저장탱크 2개와 선박 접안 시설, LNG를 기화해서 송출하는 시설 공사를 수주

* KMS에서는 완공 이후 20년간 이 시설들의 운영을 맡아 연간 LNG 380만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총 운영 매출은 10억 달러로 예상



□ 멕시코 진출 주요 한국 기업

분 야	회사명	진출 연도	취급분야	지역
가 전	삼성전자멕시코 생산법인	1988	LCD,PDP,LED	TIJUANA
	LG전자멕시코 판매법인	1988	가전	ESTADO/MECICO
	현대트랜스리드	1989	트레일러,컨테이너	TIJUANA
	대우일렉트로닉스 멕시코 판매법인	1995	가전판매	ESTADO/MECICO
	대우일렉트로닉스 멕시코 생산법인	1995	가전(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생산	QUERETARO
	삼성 SDI	1995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생산	TIJUANA
	삼성전자 멕시코법인	1995	가전통신 판매 및 제조	D.F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법인	1998	EPC	D.F
	LG전자 몬테레이 생산법인	2000	냉장고,전기오븐 생산	MONTERREY
	LG전자 레이노사 생산법인	2000	LCD, PDP, LED 생산	REYNOSA
	삼성전자 멕시코 생산법인	2003	가전(냉장고,세탁기)생산	QUERETARO
철 강	포스코-엠피피시	2006	철강코일가공	PUEBLA/S.L.PO TOSI
	포스코 멕시코	2007	철강재 생산	ALTAMIRA
	KOMEX-GAS (한국가스공사 자회사)	2008	천연가스 터미널 공사	D.F
	KMS(한국가스공사, 미쯔이상사, 삼성물산)	2008	천연가스 터미널 공사	MANZANILLO
	대우인터내셔널 판매법인	2009	철강, 자동차부품, 섬유	D.F
	KST(한진, 삼성물산, 테킨트)	2010	열병합 발전소	Chihuahua
	포스코 멕시코	2011	철강재	ALTAMIRA
자동차	현대다이모스	2012	자동차 부품	San Luis Potosi
	LG이노텍	2013	LED,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QUERETARO
	현대자동차 판매법인	2014	자동차	D.F
	기아자동차 판매법인	2015	자동차	D.F

자료원 : KOTRA

4 - 멕시코 투자 및 진출 방법

□ 투자진출방법

○ 직접투자 : 현지법인설립

- 멕시코의 경우 중남미 국가 중 법인 설립이 가장 쉬운 국가
- 외국인 투자법상 투자제한 분야가 아닌 경우는 외국인투자위원회 (CNIE, Comision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의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 투자자의 100% 단독투자 가능
- 외국인 투자자가 멕시코 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외무부의 회사설립 허가를 받은 후, 정관 작성, 재무부 납세자 등록을 거쳐 국가 외국인 투자등록 정보시스템(SI-RNIE)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을 마쳐야 함
- 외국인 투자법상 투자가 제한된 분야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 위원회는 중요사항을 고려하여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
- 투자위원회에 대한 투자 신청 후 45일 이내에 동 위원회의 결정이 통보 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을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위원회의 투자승인을 받은 후에는 외국인투자국(Direccion General de Inversion Extranjera)에 투자 승인 내용을 등록해야 함

○ 지사/연락사무소 설립

- 지사(Branch)는 지정된 특정 업무 영역의 활동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운영되는 법인형태로 설립절차가 법인 설립절차보다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법적 책임이나 세제상의 문제 및 부동산 소유 제한과 각종 인센티브 수혜 면에서 불리하므로 선호되지 않음



- 지점의 법적 책임은 한국 본사에 귀속되므로 멕시코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소송의 대응책임이 한국 본사에 있음
- 따라서 주재국 노동법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무소송의 경우, 한국 본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며 모든 법적 대응의 책임을 가짐
-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한국제품을 수출 시 멕시코에서 수입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음

□ 투자진출 회사 형태

○ 회사의 종류

- 멕시코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 합명회사, 협동조합 총 6가지 법인형태 명시

○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주로 가변자본 형태로 주식의 증자 및 감자 등 법적 제도적 제한사항이 덜하므로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이 형태를 선호

구 분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책 임	인수 주식가액 한도	출자지분
최소자본금	제한없음 (‘12년1월 개정, 과거5만페소)	제한없음 (‘12년1월 개정, 과거3천페소)
설립 정관	Acta Constitutiva	Contrato Social
증권 발행	주식 및 회사채	발행 불가
감사 선임	필수	선택
주주(출자자)	최소 2명	2명~50명
출 자 금	현금 : 설립시 최소 20% 납입 현물 : 설립시 완납	설립시 최소 50% 납입
최고의사 결정기구	주주총회(주소지 개최)	출자자총회(주소지 개최)
기 타	대규모 투자기업 선호	중소 투자기업 선호



-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는 주로 가변자본(Capital Variable) 보유
 - 증자 및 감자는 정관의 범위 내에서 주주 및 사원의 결의를 통해 가능
 - 다만 자본 변경사항에 대해서 해외투자 등록처에 신고해야 함
- 합자회사 및 주식합자회사
- 합자회사 2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형태
 - 주식합자회사는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 형태로서 무한책임사원과 주주로 구성
- 합명회사
-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모든 사원은 회사의 의무 또는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짐
-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활동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음
- 투자 인센티브
-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많지 않으며 주로 지방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음



5 법인 설립 및 철수

□ 법인 설립 절차

○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구분	고려사항	담당부서	기간/비용
1	설립요건 · 주식회사 : 주주 2명 이상, 최소자본금 제한없음 · 유한책임회사 : 출자자 2명 이상 50명 이하, 최소자본금 제한없음		
2	임대차 가계약	가계약 체결	
3	회사명 사용 신청	· 상호등록신청서 원본 및 사본 2부 · 수입인지납부증서	경제부 (DGNM) 2일/ 640페소
4	상표 등록	· 사용할 상표 5개 지정	외무부
5	정관등록	· 13개 필수 기재사항* · 공증사무소에서 법인 납세자등록 까지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음	공증사무소 2일 9천페소
6	법인납세자 등록 및 전자서명등록	· 납세자등록번호(RFC) 신청서 · 회사정관 공증 사본 · 법인대표 신분증 원본	국세청 2~3주 무료
7	부동산 및 상업 등기	· 정관 · 자산 및 부동산 등기의 경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자산상업 등기소 17일 1,402페소
8	사회보험청 (IMSS)에 법인 및 근로자 등록	· 새로운 근로자 채용시, 5일 이내에 사회보험청에 등록해야 함 · 회사 등록양식 · 사용자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 정관 사본 · 납세자등록증(RFC) 사본 · 법인 대표 신분증 및 근로자 신분증 · 근로자 출생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회보험청 2~5일 무료



구 분	고려사항	담당부서	기간 / 비용
9	주정부 재무부에 지방세 등록	· 납세자등록증(RFC) 번호 · 회사 우편번호 · 인터넷을 통해 등록 가능	주정부 재무부 1일 무료
10	회사 설립신고	· 납세자등록증(RFC) 번호	시, 군, 구청 1일
11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경제부 외국인 투자국의 국가 외국인 투자등록시스템(RNIE)에 등록 · 외국인투자등록신청서 · 법인설립 후 4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함	RNIE 1일 인터넷 등록 무료
12	멕시코정보 시스템(SIEM) 등록		상공회의소 1일 약670페소
13	은행계좌 개설	· 정관 및 납세자등록증(RFC) · 주소지 증명 · 개설신청자 신분증 및 외국인 등록증	은행 당일

○ 지사/연락사무소

구 분	고려사항	담당부서	기간 / 비용
1	설립요건	· 정관 및 관련서류 · 한국본사가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인지 입증 및 멕시코 국내법 저촉 여부 확인	주 한 멕시코 대사관
2	지사 설립 허가 및 등록	· 지사 설립신고서 · 회사(본사)정관 · 설립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 · 회사규정(내규) 내 지사설립 관련조항	경제부 외국인 투자국 15일 1755페소 연락사무소 무료
3	납세자 등록	· 납세자등록신청서 · 회사정관 공증 사본 · 지사대표 신분증 원본	국세청 2~3주 무료



구 분	고려사항	담당부서	기간 / 비용
4 부동산 및 상업 등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지사)등록신청서 · 회사(본사)정관 · 지사설립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 · 회사규정(내규) 내 지사설립 관련조항 	자산상업 등기소	17일 1402페소
5 지사개설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등록증 번호 	시,군,구청	1일
6 멕시코정보 시스템 (SIEM) 등록		지역 상공 회의소	1일 최대 670페소
7 사회보험청 (IMSS)에 법인 및 근로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근로자 채용시, 5일 이내에 사회보험청에 등록해야 함 · 회사 등록양식 · 사용자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 정관사본 및 납세자등록증(RFC)사본 · 지사대표 신분증 및 근로자 신분증 · 근로자 출생증명서(Acta de Nacimiento) 	사회 보험청	2~5일 무료

멕시코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정보만 인정되므로, 스페인어가 아닌 언어(한국어 등)로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한 다음, 주한멕시코대사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 후 제출

□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 청산

- 회사법(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아래의 청산 절차에 따라 청산을 진행
- 6개월~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 되며 공증비 (대략 15,000페소) 및 대차대조표 3회 10일간 공고비(대략 15,000페소)의 비용 발생



- 청산 종료 전 국세청에서 세무감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전에 회계사가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 장부 및 세금 신고 내용을 철저히 사전검사한 후 청산을 해야 세무 감사를 대비할 수 있음

○ 파산

- 만기일이 최소 30일 이상 지체되며 복구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파산신청 기간 동안 전체 채무의 35%이상 상환이 불가능할 때, 채무자의 유동자산이 없으며 부채가 자산의 80%이상 초과한 때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채무의무를 면제해주는 사법적인 절차
- 연방법원 소속의 지방법원에 상업경매/파산선고 신청 후,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파산관재인 임명 후 곧바로 파산 절차 진행하며, 채권자가 신청 하는 경우 실사관과 조정관 임명하여 중재절차를 거친 후, 중재 실패시 파산절차 진행

6

관세제도



□ 개요

- 멕시코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AD valorem 종가세), 부가가치세, 세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⁴³⁾
- 품목에 따라 특별소비세(IEPS)나 자동차세(ISAN)가 부과되며 통관을 위한 관세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⁴⁴⁾

4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멕시코」 참고 작성

44) [http : //imcp.org.mx/wp-content/uploads/2015/06/ANEXO-NOTICIAS-FISCALES-208.pdf](http://imcp.org.mx/wp-content/uploads/2015/06/ANEXO-NOTICIAS-FISCALES-208.pdf)



- 알코올 및 담배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는 알코올의 농도 및 담배의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됨
- 관세사 수수료는 각 수입업체가 계약한 통관사에 따라서 보통 1건의 송장 또는 선하증권(B/L) 기준 수입금액의 1.5%에서 2%사이로 발생함

□ 관세 체계

-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35% 10단계로 되어 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음
 - 0% : 서적과 같이 교육적 목적에 사용되는 품목, 마길라도라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및 반제품
 - 3~5%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 부품
 - 10~13%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부품
 - 15~20% :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
 - 23~35% :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

□ 상품분류

- 멕시코 상품분류는 1988년부터 HS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음.
 - 상품 분류는 22개의 Sección과 98개의 Capítulo로 구성되며, Capí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 위인 12,116개의 Fracción으로 세분화됨

(세금 계산 예시)

- 수입면장상의 가격(CIF가격)이 10,000달러이며 HS Code No. 상 수입 관세가 3%인 제품의 수입 시 부과되는 총 세금
 - 수입관세 Advalorem(3%) : 300달러⁴⁵⁾
 - 세관 수수료 DTA(0.8%) : 80달러⁴⁶⁾
 - 부가가치세 IVA(10,380달러의 15%) : 1,557달러⁴⁷⁾
 - 총계 : 1,937달러

□ 수입통관 절차별 유의사항⁴⁸⁾

- 수입자는 수입신고서 승인이 나면 관세를 포함한 수입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함 (만약, 물품 검사에 해당된다면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수출자는 세관수수료(DAT)와 일부 품목에 대해 통상 50%가 부과되는 수출세를 납부하여야 함

(1) 수입신고 전

- 기업이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내 통관 법적대표자를 임명하고 등록해야함
 - 기존의 관세사 지정제도는 2013년 폐지됨
- 유의사항
 - 지정된 통관 관세사를 재무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수입업체는 수입업무가 금지됨

45) 수입관세로 HS Code No.에 따라 관세가 0~35%까지 정해져 있음

46) 세관수수료로 CIF 인보이스 가격의 0.8%이며 최소금액이 170페소(약 17달러)임

47) 부가가치세로 인보이스가격(CIF) + Advalorem(수입관세) + DTA(세관수수료) 를 합한 금액의 15%임

48) 통합무역서비스, [http : //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924&natnCd=MX](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924&natnCd=MX)

[2018.06.29.검색]



- 밀수방지, 무자격 수입업체 정비, 복잡한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활용 용이성 차원에서 동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제도를 악용하여 과도한 통관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 통관 관세사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의 명목으로 선금을 지불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통관 관세사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은행계좌에 입금 하는 것이 안전함

(2) 서류작성

○ 상업송장

- 상업송장 발행일자, 수출자 및 수입자명,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지, 물품의 정확한 명세(수량 및 중량, 단가, 송장 금액, 제품 모델명, 시리얼 넘버 등)가 실제 물품 정보와 일치하도록 유의해야 함
- 추가적으로 송장번호, 거래조건, 통화종류, 물품의 총중량, 물품의 원산지, 총 포장 개수 등도 정확히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상업송장 상에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내용이 기술된 경우 스페인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 선하증권

- 선하증권 상에 CIF 임을 표기하고 가격을 표기해야 함
(선하증권 상에 관행적으로 'FOB'라고 표기된 경우 CIF 가격임에도 멕시코세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원산지 증명서

(3) 수입신고서 제출서류

-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지정된 통관 관세사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수입신고서를 함



- 제출서류
 - 수입신고서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입허가서(필요한 경우)

(4) 관세 납부

- 멕시코의 경우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게 되며, 관세의 납부는 수입 물품 검사 이전에 이루어짐
- 유의사항
 - 관세사가 적용 관세와 기타 세금을 계산하며, 입항지에 위치한 상업 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함

(5) 서류심사

-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게 되면 세관의 서류검토가 이루어짐
- 심사내용
 - 서류상의 원산지 표시 유무(관세 면제 품목인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함)
 - 저가신고(Under Value) 여부 검토(멕시코 세관의 '수입물품 가격 데이터'를 통해 가격 변동 유무 확인)
 - 인증 및 수입허가서 등이 필요한 경우 서류구비 여부 확인



(6) 물품검사

- 멕시코 세관은 통관심사과정에서 불확실성과 비리를 줄이기 위해 2단계의 랜덤 통관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음
- 검사내용
 - 물품 검사는 랜덤시스템이며, 통관대에 부착된 신호등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검사대상 물품이 선정됨
 - 녹색등 : 검사생략
 - 적색등 : 검사대상(위법사실 적발 시 물품압수 및 벌금 부과)
 - 아시아산 물품의 경우 대부분 검사대상(적색등)으로 지정되며, 검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물품 압수,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함

(6) 물품반출

- 수입자는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고 서류 및 물품 검사가 완료되면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최근 관세 동향⁴⁹⁾

-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개방
 - 마약, 유해물질 등 일부 품목 이외에 대부분 수입이 가능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석유 함유 제품, 중고차, 중요 농산물 등에 대하여 수입 제한 조치(수입규제, 쿼터제, 표준규격제 등)를 실시하고 있음
 - 단, NAFTA 및 PA(Pacific Alliance) 회원국, EU 등의 경우 수입제한 면제 조치를 받는 경우가 많음

4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17년 투자환경위험평가(멕시코)」



○ FTA 체결 확대로 자유무역 강화

- 멕시코는 46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각종 무역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현재도 터키, 한국 등 다양한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 중임.
- 아시아 국가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 협상이 논의 중임.

□ 멕시코 통관 애로 사항 개요⁵⁰⁾

- 멕시코 진출 기업들이 통관과정에 겪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진출기업의 사전 주의가 요구됨

구 분		내 용
라벨링 및 포 장	1) 영양성분 표기법 개정 미적용	○ 가공식품의 전면부에 ‘표’가 아닌 ‘그림’ 형태로 나타내는 5가지 표기요소 라벨링 미흡
	2) NOM 규정 미준수	○ 농식품의 경우 주로 라벨링과 포장 규정과 관련된 표준 규격제도(NOM)를 미준수
	3) 포장 기준 미준수	○ 주로 나무로 된 포장용기에 대한 국제 방역규정을 미준수
검 역	4) 사전수입 승인제도와 원재료 수입승인	○ 사전수입승인제도(PERMISO)를 지키지 않거나 특 정 원재료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통 관이 불가
통 관	5) 세관별 통관 기준 상이	○ 멕시코 세관별 통관 기준이 상이함에 따른 통관 지연이 발생
	6) 관세사 라이선스	○ 특정 품목(커피)의 수입통관 대행을 위해서 추가 적인 라이선스를 가진 관세사가 필요
	7) 언어적 장벽	○ 통관 관련 모든 정보와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 되어있거나 작성해야함

5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 FTA로 다시 보는 멕시코」 p138.



구 분		내 용
통 관	8) 혼합 적재	○ 식물과 공산품의 혼합적재에 따른 통관 지연
	9) 취급위험물 적재	○ 취급 위험물 및 수입금지 품목 적재로 발생된 통 관거부 사례
원산지	10) 원산지 품목분류의 상이	○ 수입 세관의 품목 분류와 상이한 원산지 증명서
	11) 원산지 서류작성 미흡	○ 원산지 서류작성 내용이 세관의 기준을 미충족
관 습	12) 멕시코의 근무시간	○ 한국과 다른 멕시코의 근무시간
	13) 멕시코의 공휴일	○ 멕시코의 긴 연휴기간에 따른 통관 애로사항

7 - 노무관리제도

□ 멕시코의 노동법

○ 4대 기본 원칙

최저임금 보장의 원칙	연방노동법85조 : 임금은 충분히 주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정한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액수 이하로 지불될 수 없다.
급여삭감 금지의 원칙	연방노동법51조4항 :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한 경우, 부당한 처우로서 30일내에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다.
동등대우의 원칙	연방노동법86조 : 동일 직종, 동일 근로시간과 동일한 효율성을 산출하는 동일근로에 동일 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퇴직금 보장의 원칙	- 사용자가 피고용자에게 고용 종료의 사유에 대해 법이 규정하는 확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피고용인은 연방노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 연한에 따른 퇴직수당을 보장받는다. - 퇴직금은 3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20일치의 금액과 기타 휴가비 등



○ 근로계약

- (기본정책) 노동자를 위한 확실한 연방노동법 제정
- (채용방식) 정규직(특별사유제외 : 육아휴직/병가휴직 대체근무 등)
- (임시직 계약시 유의사항) 반드시 특정업무와 특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의 계약서 작성

○ 법정최저임금

- 두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정(일당 기준)

구 분	A지역(누레보레온 등)	B지역(두랑고 등)
평균 법정최저임금 (2014 기준)	67.29페소(약 5,383원)	63.77페소(약 5,101원)

(출처 : 멕시코 국가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2015년 멕시코시티 기준) : 70.10페소/일
-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임금수준은 3~4배 높게 형성

○ 실제 근로자 임금수준

- 일반 사무직(OEM평균) : 전반적으로 자동차 OEM 임금이 타 제조업체 보다 월등히 높음

직급	Senior Manager	Manager	Ass. Manager	Coordinator	Supervisor	Specialist	Technical Support	New Entry Staff
월급여 (페소)	120,007	82,503	46,998	32,993	23,999	19,002	16,490	11,178

- 생산직(OEM 평균 시급여) : 200~350페소
- (휴가수당) 노동법 제80조
 - 휴가기간 동안 일일급료 총액과 해당 일일급료 총액의 최소 25% 지급의무
 - 실제 50% 지급



- (연말보너스) 노동법 제87조
 - 근로자는 매년 12월 20일 이전에 최소 15일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연말 보너스 지급
 - 성과 보너스와 구분하여 관리 필요
- 법정 근로시간
 - (주간근무) 오전 6시 ~ 오후 8시 중 8시간, 일주일 총 48시간
 - (야간근무) 오후 8시 ~ 오전 6시 중 7시간, 일주일 총 42시간
 - (주야간 혼합근무) 총 7시간 30분(야간 3시간 30분 미만)
- 휴가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근무일 기준으로 연간 6일의 유급 휴가
 - 휴가는 기타 금전적인 보상으로 대체될 수 없으나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일수로 환산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 매년 2일씩, 총 12일까지 유급휴가일수가 증가하고, 4년 이후부터는 5년마다 휴가일수가 2일씩 증가
- 법정 복리후생비
 - 휴가보너스(Prima vacacional) : 해당 휴가 일수에 대해 일일 급여의 25% 지급,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일일 급여의 50% 지급
 - 연말보너스(aginaldo) : 매년 12월20일 전까지 급여의 최저100%를 상여금으로 지급
 - 사회보장제(IMSS) : 1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가진 고용주는 모든 종업원을 IMSS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를 가짐 (보통 고용주 70%, 종업원 25%, 정부 5% 분담)
 - 근로자주택기금(INFONAVIT) : 고용주는 근로자의 적정주택마련의 의무를 가지므로 근로자별로 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주택기금(INFONAVIT)에 적립



- 퇴직충당금(SAR) : 고용주는 근로자 별로 퇴직충당금 계좌를 만들어 매월 급여의 2% 적립
- 장기 근속수당 : 고용주는 정규 근로자에게 매년 12일치 임금을 장기 근속수당으로 지급
- 근로자이윤분배제도(Profit Sharing) : 모든 회사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10% 금액에 대해 근로자에게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음
(노동법 117~131조 근거)
 - 많은 현지기업은 종업원 이익배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익이 산출되는 모기업과는 별도의 종업원 관리회사를 설립해서 이사진을 제외한 모든 종업원을 종업원 관리회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근로자 이윤분배제도(Employee profit-sharing)

○ 개요

- (법 규정) 멕시코 헌법 제123조, 노동법 제117조~131조
- (산출방법) 법인세 과세대상(과세표준)의 10%
- (이윤분배대상) General Manager, CEO, CFO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 (납부기한) 기말 익년 5개월 내(즉, 5월 말)
- (예외대상) 법인설립 첫해, 신제품(모델) 양산하는 2년차 신규업체, 탐사중인 광업, 기타 법에 의해 설립된 복지기관 등

○ 배당방식

- (배당방식) 50%씩 두차례에 걸쳐 배당
- (1차배당) 근로자들의 급여 액수와 무관하게 한 해 동안의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배당
- (2차배당) 한 해 동안 근무한 결과로 수령한 급여 총액 기준으로 배당, 단, 노동조합 가입자 최대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중요 직책 근무자는 상기 기준 급여액의 120%가 최대 배당금액



○ 근로자이윤분배제도 관련 멕시코 대법원 판례

- 주계약자가 고용주의 의무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계약자와 서비스 공급자는 연방 노동법 상 하나의 경제적 단위(Single Economic Unit)으로 간주함

- 주계약자는 인프라와 자본을 제공, 서비스 제공자는 인력제공을 골자로 한 서비스 계약 체결 및 두 계약자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를 동시에 이행할 경우
- 주계약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경제적 단위의 개념으로 경영상 리스크를 고려하였을 때 주계약자와 서비스 계약자는 리스크를 동일하게 공유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익도 동일하게 공유해야 함
-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자는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혜자(주계약자)의 재무적 성과에 따라 이윤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 기타 멕시코 노무관리제도

○ 법정 퇴직금

- 자진 사직인 경우 :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미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및 휴가 보너스, 연말 보너스(aguinaldo)를 산출하여 지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거는 경우에 대비에 자진사직서와 법정 퇴직금 수령증을 작성하여 서명과 지문날인을 받아둬야 함
- 노동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보상 없이 종업원 해고 가능
- 노동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불특정기간 계약	- (3개월치 급여 + 근무연수 1년당 20일치의 임금) 지급 -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및 휴가 보너스, 연말 보너스 지급
1년 이하의 특정기간 계약	- (3개월치 급여의 법정 체불 임금 + 전체 근무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1년 이상의 특정기간 계약	- (3개월치 급여의 법정 체불 임금 + 근무 1년차 급여 6개월치 + 근무연수별로 20일치 급여) 지급

○ 해고

- 고용계약 종료 일자와 사유를 명시하는 서면 통지문 2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종업원에게 전달하고, 다른 한 부에는 근로자의 수령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함
- 종업원이 통지문을 받지 않을 때 사용자는 고용 종료일 이후 5일 이내에 해당 노동 분쟁 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종업원의 주소로 같은 통지문을 발송하며, 종업원에게 이에 대한 통고요청
- 연방노동법이 규정하는 ‘동시에 종업원이 이해하고 합의하는 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 해고 시 법적 퇴직금 지급
- (정당한 사유)

- 근로자가 자격, 학력 등 특정 사실을 숨겼거나 증명서 등을 위조한 경우
- 근로자가 정직하지 못하거나 사용자나 관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한 경우
-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비도덕적인 행동이나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 고의적으로 사업장 건물, 원자재 등 회사의 자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 총 16가지 경우

○ 노동조합

- 종업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고용 조건에 관한 단체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연방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 따라 노조의 활동 보장
- 마킬라도라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레이노사나 마따모로스, 누에보라레도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노조인 CTM이 지배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성향은 백색노조와 마찬가지로 최근 10년간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음
- 몬테레이를 포함한 멕시코 북동부 지역의 공업도시에서는 회사에서 먼저 백색노조를 선택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채용하는 종업원들이 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백색노조에 가입하도록 하기도 함
- 노사분규는 노사 양측의 협상, 조정절차, 사회적 중재 등으로 해결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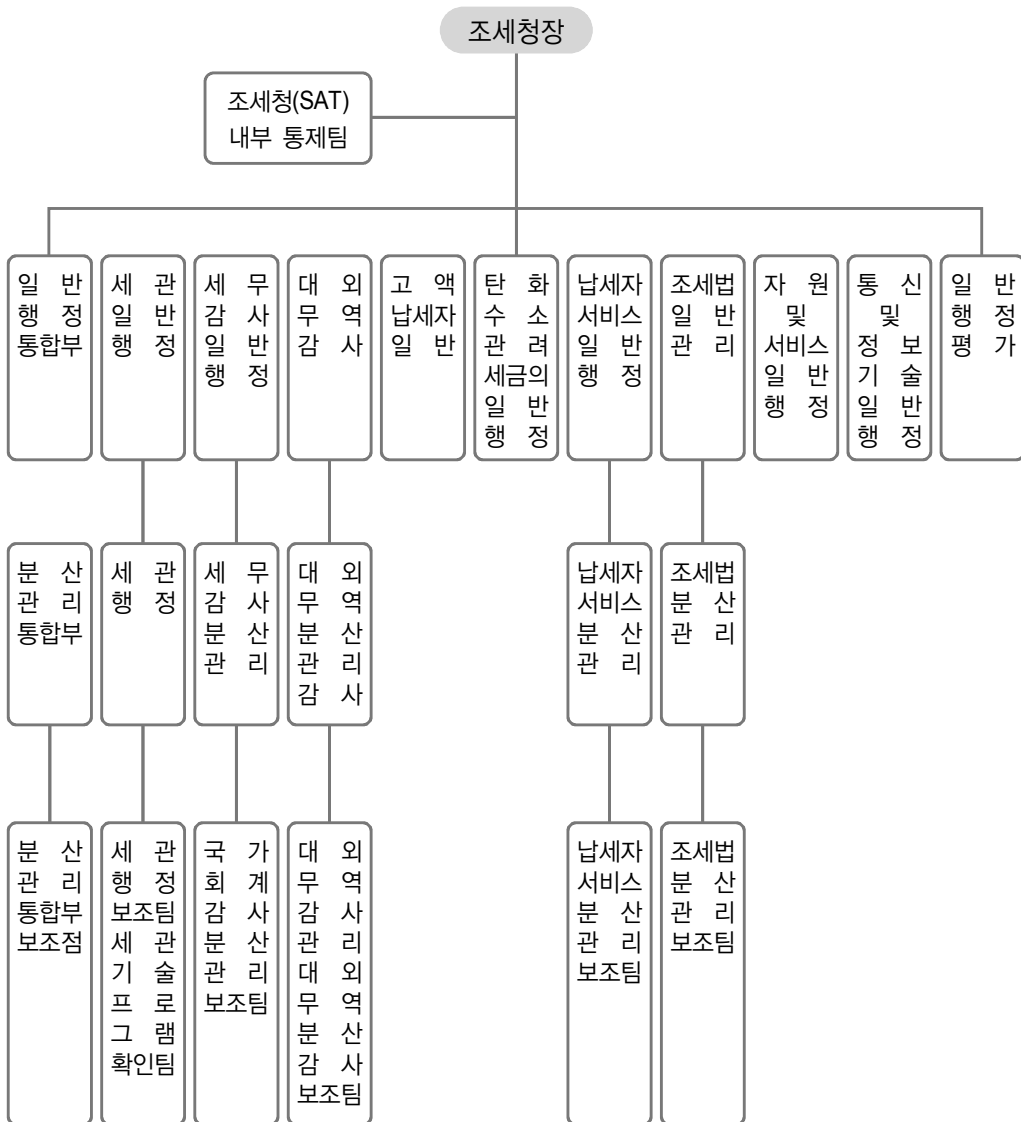


1. 멕시코 과세당국 / 168
2. 멕시코 소득세법 중 이전가격세제 관련 조항 / 169
3. Federal Fiscal Code Article 34-A(APA관련 법령) / 175
4. 기타 국조관련 소득세법 조항 / 176
5.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 제출 근거법령 / 176
6. 상호합의(MAP) 신청양식 기준 / 180
7.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멕시코 연방법 / 182
8. IMMEX, PROSEC 신청서 / 194
9. 전자서명(E. firma) 신청서식 / 195
10. 주요 참고 자료 / 196



1 - 멕시코 과세당국

□ 멕시코 국세청 조직도⁵¹⁾



51) 자료 : 멕시코관보(DOF), http://www.dof.gob.mx/nota_mx/nota_detalle.



2

멕시코 소득세법 중 이전가격세제 관련 조항



Mexico Income Tax Law

1. Reference to the Arm's Length Principle

Income Tax Law. Article 76-XII.- When legal entities enter into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they shall determine their taxable revenues and authorized deductions by considering for such purposes the prices and amounts of compensation that would have been used with or between independent parties in comparable transactions. For such purposes, they shall apply the methods set forth in Article 180 of this Law, in the order indicated therein.

Income Tax Law. Article 179, first paragraph- Corporate taxpayers entering into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residing abroad, shall be obligated for purposes hereof to determine their taxable revenues and authorized deductions by considering for such purposes the prices and amounts of compensation that would have been used with or between independent parties in comparable transactions.

* The Arm's Length Principle is also referred to in Articles 76-IX and 90 of the Income Tax Law.

2 Reference to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if any)

Income Tax Law. Article 179, eight paragraph.- The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approved by the Board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1995, or those substituting for such Guideline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hereof and with treaties entered into by Mexico) shall be applicable for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hapter devoted to multinational enterprises.

3 Definition of related parties Legal Entities General Provisions :

Income Tax Law. Article 179, fifth and sixth paragraphs.- Two or more persons shall be deemed related parties when one of them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the other(s). Members of joint ventures shall be deemed related parties, and also the persons that under this paragraph are considered related parties of such members.

Likewise, permanent establishments and their parent companies shall be deemed related parties, and also the persons referred in the previous paragraph with their permanent establishments.

Unless proven otherwise, it is assumed that transactions performed by residents in Mexico with companies or legal entities subject to preferential tax regimes are performed between related parties considering prices and amounts of compensation that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have been used by or between independent parties in comparable transactions.

Individuals General Provisions :

Income Tax Law. Article 90, tenth paragraph.- Two or more persons shall be deemed related parties when one of them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the other(s), or when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such persons, or when there is a link between these persons in terms of the Customs Law.

4 Transfer pricing methods

Note : According to Article 180, third paragraph of the **Mexican Income Tax Law** taxpayers are required to use the CUP method in their transfer pricing analyses. The use of methods described below in Sections II, III, IV, V and VI is allowed only when the CUP method is not appropriate to determine the arm's length nature of a transaction.

Income Tax Law. Article 180, first paragraph.-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79 hereof, taxpayers may apply the following methods :



I.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which consists of considering the price or amount of compensation agreed with or between independent parties in comparable transactions.

II. Resale Price method, which consists of determining the purchase price of a good, the rendering of a service or the compensation for any other 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 by multiplying the resale price, the price for the provision of the service, or the price for the referred transaction by the difference between one (1) and the gross profit percentage that would have been agreed by or between independent parties in comparable transactions.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gross profit percentage will be calculated by dividing gross profit by net sales.

III. Cost Plus method, which consists of determining the sale price of a good, the rendering of a service or the compensation for any other 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 by multiplying the cost of the good, the service, or the referred transaction by the result determined by the aggregate of one (1) plus the gross profit percentage that would had been agreed by or between independent parties in comparable transactions.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gross profit percentage will be calculated by dividing gross profit by net sales.

IV. Profit Split method, which consists of assigning the operating profit obtained by related parties, in the same proportion that would had been assigned by or between independent parties, as follows :

- a) Aggregate operating profit shall be determined by adding the operating profits obtained by each of the related parties engaged in the transaction,
- b) Aggregate operating profits shall be assigned to each related party in due consideration of elements such as the assets, costs and expenses of each related party, regarding the transactions performed between them.

V. Residual profit split method, which consists of assigning the operating profit obtained by related parties, in the same proportion that would have been assigned by or between independent parties, as follows :

- a) Aggregate operating profit shall be determined by adding the operating profits obtained by each of the related parties engaged in the transaction.
- b) Aggregate operating profits shall be assigned as follows :
 1. The minimum profit, if any, corresponding to each of the related parties shall be determined through application of any of the methods referred to in Sections I, II, III, IV and VI of this Article, not considering the use of significant intangibles.
 2. The residual profit shall be determined, by subtracting the minimum profit referred to in subsection 1, above, from aggregate operating profit. Such residual profit will be allocated among the related parties engaged in the transaction based on, among other factors, the significant intangibles used for each related party, in the same proportion that would had been distributed by or between independent parties in comparable transactions.

VI. Transactional operating profit margin, which consists of determining, in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the operating profit that would have been obtained by comparable companies or independent parties in comparable transactions, based on profitability factors that consider variables such as assets, sales, costs, expenses and cash flows.

5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Income Tax Law. Article 76-IX, first paragraph :

Taxpayers entering into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residing abroad, are required to obtain and keep supporting documentation, demonstrating that the amount of their revenues and deductions we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ces or amounts of compensation that would have been used by independent parties in comparable transactions.

Such documentation must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



- a) Name, corporate name, address and residence for tax purposes of the related persons with whom such transactions are executed, and support documentation demonstrating the direct or indirect participation among such related parties;
- b) Information regarding the functions or activities performed, assets used and risks assumed by the taxpayer for each type of transaction.
- c) Information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regarding transactions entered into with related parties, and the amounts thereof, for each related party and for each type of trans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ategorization and data set forth in Article 179 hereof;
- d) The method applied pursuant to Article 180 hereof, including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on comparable transactions and enterprises, for each type of transaction;

Income Tax Law. Article 76-IX, second paragraph & Tax Miscellaneous/Temporary Regulation I.3.8.3 (DE MINIMIS RULE) :

Taxpayers engaging in business activities whose income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fiscal year did not exceed MXN \$13,000,000.00 and taxpayers which income from the provision of professional services did not exceed MXN \$3,000,000.00 shall not be bound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 set forth in this Section, except those taxpayers referred to in the penultimate paragraph of Article 179 hereof.

Income Tax Law. Article 76-IX, fourth/last paragraph (ACCOUNTING) :

The supporting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referred to in this Section must be recorded in accounting records, and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residing abroad must be identified therein.

Income Tax Law. Article 76-X (TRANSFER PRICING INFORMATION RETURN) :

XIII. In conjunction with their annual return, taxpayers are required to submit the information regarding transactions entered into with related parties residing



abroad, throughout the immediately preceding calendar year. To this end, they will use the official forms approved for such purpose by the tax authorities.

6 Specific transfer pricing audit procedures and / or specific transfer pricing penalties.

Transfer pricing audit procedures can be found mainly in : Federal Fiscal Code : **Article 42, Article 46 and Article 52-A. Article 46-A.-** Sets forth that the notice of proposed adjustment must be finished at the latest 24 months after the audit started.

Transfer pricing penalties : Article 76.- Penalty on omitted tax whenever it is unveiled by the tax authority and as long as the taxpayer has TP documentation that supports its determination of taxable income : 27.5% or 37.5% of the omitted amount.

In the case of losses : 15% - 20% of the excess of the reported over the real losses.

However, if there is no TP documentation that supports the determination of taxable income the penalty will be 55% or 75% of the omitted amount, and 30% or 40% of the excess of the reported over the real losses, respectively.

Articles 81-XVII and 82-XVII.- Whenever the taxpayer fails to inform about its transactions executed with related parties as set forth in Article 76 of Income Tax Law, a penalty of MXN \$61,000 to MXN \$122,010 is imposed.

Articles 83-XV and 84-XIII.- Whenever the taxpayer fails to identify transactions executed with related parties residing abroad and report them accordingly to Article 76 of Income Tax Law in its accounting records, a penalty of MXN \$1,380 to MXN \$4,150 is imposed for each transaction.



3

Federal Fiscal Code Article 34-A (APA관련 법령)



Federal Fiscal Code. Article 34-A : Tax Authorities may solve consultations submitted by taxpayers related to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used in their transactions entered into with related parties according to Article 179 of the Income Tax Law, as long as taxpayer provides the information, data and documentation needed for issuing a resolution. The resulting decision may arise from an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country with which Mexico has a double tax treaty in place.

(Paragraph 2)

Resolutions issued by the Tax Authority as set forth in this article, may be applicable for the year of submission, for the previous year and also for the following three years after the submission. This period may be extended if the resolution arises from a Mutual Agreement Procedure conducted under the terms of an international treaty of which Mexico be part.

(Paragraph 3)

The validity of the resolution may be bound to the fulfillment of requirements that prove that the transaction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arm's length principle.

4 기타 국조관련 소득세법 조항

□ Maquila 법인의 고정사업장(PE)면제 조항

Income Tax Law. Article 182 :

Foreign residents with maquila operation may exempt PE for this activity if the related Mexican Maquiladora Company applies to the Safe Harbor provisions or obtains an APA.

□ Other relevant information (과소자본 세제, 세이프 하버 방법)

Income Tax Law. Article 28-XXVII.- Thin capitalization provisions.

Income Tax Law. Article 182.- Safe Harbour provisions for the maquiladora industry are set forth in this Article.

5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 제출 근거법령

□ 소득세법 76-A (2015.11.18.일 신설)

Artículo 76-A. Los contribuyentes señalados en el artículo 32-H, fracciones I, II, III y IV d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que celebren operaciones con partes relacionadas, en adición a lo previsto en el artículo 76, fracciones IX y XII, y en relación con el artículo 179, primer y último párrafos de esta Ley, deberán proporcionar a las autoridades fiscales a más tardar el 31 de diciembre



del año inmediato posterior al ejercicio fiscal de que se trate, las siguientes declaraciones anuales informativas de partes relacionadas :

- I. Declaración informativa maestra de partes relacionadas del grupo empresarial multinacional, que deberáa contener información referente al grupo empresarial multinacional, de la :
 - a) Estructura organizacional.
 - b) Descripción de la actividad, sus intangibles, actividades financieras con sus partes relacionadas.
 - c) Posición financiera y fiscal.

- II. Declaración informativa local de partes relacionadas, que deberáa contener información sobre la :
 - a) Descripción de la estructura organizacional, actividades estratégicas y de negocio, así como de sus operaciones con partes relacionadas.
 - b) Información financiera del contribuyente obligado y de las operaciones o empresas utilizadas como comparables en sus análisis.

- III. Declaración informativa país por país del grupo empresarial multinacional que contenga :
 - a) Información a nivel jurisdicción fiscal sobre la distribución mundial de ingresos e impuestos pagados.
 - b) Indicadores de localización de las actividades económicas en las jurisdicciones fiscales en las que opera el grupo empresarial multinacional en el ejercicio fiscal correspondiente, los cuales deberán incluir la jurisdicción fiscal; el ingreso total, distinguiendo el monto obtenido con partes relacionadas y con partes independientes; utilidades o pérdidas antes de impuestos; impuesto sobre la renta efectivamente pagado; impuesto sobre la renta causado en el ejercicio; cuentas de capital; utilidades o pérdidas acumuladas; número de empleados; activos fijos y de mercancías.
 - c) Un listado de todas las entidades integrantes del grupo empresarial multinacional, y de sus establecimientos permanentes, incluyendo las principales actividades

económicas de cada una de las entidades integrantes del grupo empresarial multinacional; jurisdicción de constitución de la entidad, para el caso en que fuera distinta a la de su residencia fiscal, además de toda aquella información adicional que se considere pudiera facilitar el entendimiento de la información anterior.

La declaración informativa país por país, deberá ser presentada por los contribuyentes a que se refiere este artículo cuando se ubiquen en alguno de los supuestos que se señalan a continuación :

a) Sean personas morales controladoras multinacionales, entendiéndose como tales aquéllas que reúnan los siguientes requisitos :

1. Sean residentes en Mééxico.
2. Tengan empresas subsidiarias definidas en términos de las normas de información financiera, o bien, establecimientos permanentes, que residan o se ubiquen en el extranjero, según sea el caso.
3. No sean subsidiarias de otra empresa residente en el extranjero.
4. Estéen obligadas a elaborar, presentar y revelar estados financieros consolidados en los términos de las normas de información financiera.
5. Reporten en sus estados financieros consolidados resultados de entidades con residencia en otro o más países o jurisdicciones.
6. Hayan obtenido en el ejercicio inmediato anterior ingresos consolidados para efectos contables equivalentes o superiores a doce mil millones de pesos.

Este monto podrá ser modificado por el Congreso de la Unión para el ejercicio de que se trate en la Ley de Ingresos de la Federación.

b) Sean personas morales residentes en territorio nacional o residentes en el extranjero con establecimiento permanente en el país, que hayan sido designadas por la persona moral controladora del grupo empresarial multinacional residente en el extranjero como responsables de proporcionar la declaración informativa país por país a que se refiere la presente fracción. La persona moral designada deberá presentar, a más tardar el 31 de diciembre del año siguiente al de su



designación, un aviso ante las autoridades fiscales en los términos que para tales efectos establezca el 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mediante reglas de carácter general.

El 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establecerá reglas de carácter general para la presentación de las declaraciones referidas en las fracciones I, II y III del presente artículo, a través de las cuales podrá solicitar información adicional, e incluirá los medios y formatos correspondientes. Por otra parte, dicha autoridad fiscal, podrá requerir a las personas morales residentes en territorio nacional que sean subsidiarias de una empresa residente en el extranjero, o a los residentes en el extranjero que tengan un establecimiento permanente en el país, la declaración informativa país por país a que se refiere la fracción III de este artículo, en los casos en que las autoridades fiscales no puedan obtener la información correspondiente a dicha declaración por medio de los mecanismos de intercambio de información establecidos en los tratados internacionales que México tenga en vigor, para dichos efectos los contribuyentes contarán con un plazo máximo de 120 días hábiles a partir de la fecha en la que se notifique la solicitud para proporcionar la declaración a que se refiere este párrafo.

Artículo adicionado DOF 18-11-2015

6 상호합의(MAP) 신청양식 기준

□ OECD Manual on Effective Mutual Agreement Procedures⁵²⁾

2.2.1. General format of a MAP request

In cases where there are no prescribed forms for requesting competent authority assistance, the taxpayer should provide the following relevant information, if applicable :

1. the name, address, and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f the taxpayer;
2. for transfer pricing cases, the name, address and, if possible, the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f any related foreign taxpayer involved;
3. the name of the foreign tax administration involved and if possible identification of the regional or local tax administration office that has made, or is proposing to make, the adjustment (if relevant);
4. the tax convention article(s) that the taxpayer asserts is not being correctly applied, and the taxpayer' interpret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5. the taxation years or periods involved;
6. the relationship, situation, or structure of the transactions, issues, or related parties involved (advising of any changes in these matters that occur after the request has been filed would be helpful);
7. a summary of the facts and an analysis of the issues for which competent authority assistance is requested, including any specific issues raised by the tax administrations affecting the taxpayer and the related amounts (in both currencies and supported by calculations, if applicable);
8. for transfer pricing cases, documentation as described in domestic legislation of the taxpayer' state of residence, if available (where documentation is inordinately voluminous, a description of the documentation prepared in connection with the transaction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MAP request may be acceptable);

52) 「효과적인 상호합의절차에 관한 매뉴얼, 2007년 버전」(OECD online Manual on Effective Mutual Agreement Procedures (MEMAP), February 2007 Version) 중 발췌



9. a copy of any other relevant competent authority request and the associated documents filed, or to be filed,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copies of correspondence from the other tax administration, copies of briefs, objections, etc., submitted in 15 response to the action or proposed action of another tax administration (if applicable, translated copies are helpful and where documentation is voluminous, a description of the documentation may be acceptable)
10. an indication of whether the taxpayer or a predecessor has made a prior reques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either contracting state on the same or related issue;
11. a schedule of the time limitations in each jurisdiction (domestic as well as tax convention time limits) in respect of the years for which relief is sought (in cases of multiple taxpayers, a schedule for each);
12. a statement indicating whether the taxpayer has filed a notice of objection, notice of appeal, refund claim, or comparable document in either of the relevant jurisdictions;
13. where the request for competent authority assistance involves issues that are currently or were previously considered by the tax authorities of either contracting state as part of an advance pricing arrangement, ruling, or similar proceedings, a statement to that effect;
14. if consent has not already been provided for a person to act as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a signed statement that a representative is authorized to act for a taxpayer in making the request;
15. any other facts that the taxpayer may consider relevant;
16. a copy of any settlement or agreement reached with the other jurisdiction which may affect the MAP process; and
17. the taxpayer' views on any possible bases on which to resolve the issues. The request should generally be signed by the taxpayer, or by an authorized person on behalf of the taxpayer, confirming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 facts and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request. Alternatively, an accompanying document, stating as much, may be provid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the submission. Typically there are no fees charg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MAP cases. There may be fees associated with Advance Pricing Arrangement programs (discussed elsewhere in the manual) or for the rare occurrences of using independent experts or mediators.

7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멕시코 연방법⁵³⁾

Al margen un sello con el Escudo Nacional, que dice : Estados Unidos Mexicanos.-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VICENTE FOX QUESADA, Presidente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a sus habitantes sabed :

Que el Honorable Congreso de la Unión, se ha servido dirigirme el siguiente DECRETO

"EL CONGRESO GENERAL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DECRETA :

SE EXPIDE LA LEY FEDERAL DE LOS DERECHOS DEL CONTRIBUYENTE

CAPÍTULO I

Disposiciones Generales

Artículo 1o.- La presente Ley tiene por objeto regular los derechos y garantías básicos de los contribuyentes en sus relaciones con las autoridades fiscales. En defecto de lo dispuesto en el presente ordenamiento, se aplicarán las leyes fiscales respectivas y 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53) 멕시코 조세청

<https://www.gob.mx/prodecon/documentos/ley-federal-de-los-derechos-del-contribuyente>



Los derechos y garantías consagradas en la presente Ley en beneficio de los contribuyentes, les serán igualmente aplicables a los responsables solidarios.

Artículo 2o.- Son derechos generales de los contribuyentes los siguientes :

- I. Derecho a ser informado y asistido por las autoridades fiscales en el cumplimiento de sus obligaciones tributarias, así como del contenido y alcance de las mismas.
- II. Derecho a obtener, en su beneficio, las devoluciones de impuestos que procedan en términos d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y de las leyes fiscales aplicables.
- III. Derecho a conocer el estado de tramitación de los procedimientos en los que sea parte.
- IV. Derecho a conocer la identidad de las autoridades fiscales bajo cuya responsabilidad se tramiten los procedimientos en los que tengan condición de interesados.
- V. Derecho a obtener certificación y copia de las declaraciones presentadas por el contribuyente, previo el pago de los derechos que en su caso, establezca la Ley.
- VI. Derecho a no aportar los documentos que ya se encuentran en poder de la autoridad fiscal actuante.
- VII. Derecho al carácter reservado de los datos, informes o antecedentes que de los contribuyentes y terceros con ellos relacionados, conozcan los servidores públicos de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los cuales sólo podrán ser utilizados de conformidad con lo dispuesto por el artículo 69 d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 VIII. Derecho a ser tratado con el debido respeto y consideración por los servidores públicos de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 IX. Derecho a que las actuaciones de las autoridades fiscales que requieran su intervención se lleven a cabo en la forma que les resulte menos onerosa.

- X. Derecho a formular alegatos, presentar y ofrecer como pruebas documentos conforme a las disposiciones fiscales aplicables, incluso el expediente administrativo del cual emane el acto impugnado, que serán tenidos en cuenta por los órganos competentes al redactar la correspondiente resolución administrativa.
 - XI. Derecho a ser oído en el trámite administrativo con carácter previo a la emisión de la resolución determinante del crédito fiscal, en los términos de las leyes respectivas.
 - XII. Derecho a ser informado, al inicio de la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de las autoridades fiscales, sobre sus derechos y obligaciones en el curso de tales actuaciones y a que éstas se desarrollen en los plazos previstos en las leyes fiscales.
- Se tendrá por informado al contribuyente sobre sus derechos, cuando se le entregue la carta de los derechos del contribuyente y así se asiente en la actuación que corresponda.
- La omisión de lo dispuesto en esta fracción no afectará la validez de las actuaciones que lleve a cabo la autoridad fiscal, pero dará lugar a que se finque responsabilidad administrativa al servidor público que incurrió en la omisión.
- XIII. Derecho a corregir su situación fiscal con motivo del ejercicio de la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que lleven a cabo las autoridades fiscales.
 - XIV. Derecho a señalar en el juicio ante el Tribunal Federal de Justicia Fiscal y Administrativa, como domicilio para recibir notificaciones, el ubicado en cualquier parte del territorio nacional, salvo cuando tenga su domicilio dentro de la jurisdicción de la Sala competente de dicho Tribunal, en cuyo caso el señalado para recibir notificaciones deberá estar ubicado dentro de la circunscripción territorial de la Sala.

Artículo 3o.- Los contribuyentes podrán acceder a los registros y documentos que formando parte de un expediente abierto a su nombre, obren en los archivos administrativos, siempre que tales expedientes correspondan a



procedimientos terminados en la fecha de la solicitud, respetando en todo caso lo dispuesto por el artículo 69 d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Artículo 4o.- Los servidores públicos de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facilitarían en todo momento al contribuyente el ejercicio de sus derechos y el cumplimiento de sus obligaciones.

Las actuaciones de las autoridades fiscales que requieran la intervención de los contribuyentes deberán de llevarse a cabo en la forma que resulte menos gravosa para éstos, siempre que ello no perjudique el cumplimiento de sus obligaciones tributarias.

CAPÍTULO II

Información, Difusión y Asistencia al Contribuyente

Artículo 5o.- Las autoridades fiscales deberán prestar a los contribuyentes la necesaria asistencia e información acerca de sus derechos y obligaciones en materia fiscal. Asimismo y sin perjuicio de lo que dispone el Artículo 33 d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las autoridades fiscales deberán publicar los textos actualizados de las normas tributarias en sus páginas de Internet, así como contestar en forma oportuna las consultas tributarias.

Los contribuyentes que apeguen su actuación a los términos establecidos en los criterios emitidos por las autoridades fiscales, que se publiquen en el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quedarán exentos de responsabilidad fiscal.

Artículo 6o.- Las autoridades fiscales realizarán campañas de difusión a través de medios masivos de comunicación, para fomentar y generar en la población mexicana la cultura contributiva y divulgar los derechos del contribuyente.

Artículo 7o.- Las autoridades fiscales tendrán la obligación de publicar periódicamente instructivos de tiraje masivo y comprensión accesible, donde se den a conocer a los contribuyentes, de manera clara y explicativa, las

diversas formas de pago de las contribuciones. Las autoridades fiscales, el Tribunal Federal de Justicia Fiscal y Administrativa, así como los órganos jurisdiccionales del Poder Judicial de la Federación que tengan competencia en materia fiscal, deberán suministrar, a petición de los interesados, el texto de las resoluciones recaídas a consultas y las sentencias judiciales, de conformidad con lo dispuesto en la Ley Federal de Transparencia y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Gubernamental.

Artículo 8o.- Las autoridades fiscales mantendrán oficinas en diversos lugares del territorio nacional para orientar y auxiliar a los contribuyentes en el cumplimiento de sus obligaciones fiscales, facilitando, además, la consulta a la información que dichas autoridades tengan en sus páginas de Internet.

Artículo 9o.- Sin perjuicio de lo establecido en 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los contribuyentes podrán formular a las autoridades fiscales consultas sobre el tratamiento fiscal aplicable a situaciones reales y concretas. Las autoridades fiscales deberán contestar por escrito las consultas así formuladas en un plazo máximo de tres meses.

Dicha contestación tendrá carácter vinculatorio para las autoridades fiscales en la forma y términos previstos en 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Artículo 10.- Respetando la confidencialidad de los datos individuales, el 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informará al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e Informática los datos estadísticos agregados sobre el ingreso, impuestos, deducciones y otros datos relevantes de los contribuyentes.

Artículo 11.- Para estimular la obligación legal de los contribuyentes de entregar comprobantes fiscales por las operaciones que realicen, las autoridades fiscales organizarán loterías fiscales en las que, con diversos premios, participarán las personas que hayan obtenido los comprobantes fiscales respectivos. Las loterías fiscales se podrán organizar tomando en cuenta los medios de pago, diversos al efectivo, que reciban los contribuyentes.



CAPÍTULO III

Derechos y garantías en los procedimientos de comprobación

Artículo 12.- Los contribuyentes tendrán derecho a ser informados, al inicio de cualquier actuación de la autoridad fiscal, para comprobar el cumplimiento de las obligaciones fiscales, de sus derechos y obligaciones en el curso de tales actuaciones.

Artículo 13.- Cuando las autoridades fiscales ejerzan sus facultades para comprobar el cumplimiento de las obligaciones fiscales previstas en las fracciones II y III del artículo 42 d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deberán informar al contribuyente con el primer acto que implique el inicio de esas facultades, el derecho que tiene para corregir su situación fiscal y los beneficios de ejercer el derecho mencionado.

Artículo 14.- Para los efectos de lo dispuesto en la fracción XIII del artículo 2o. de la presente Ley, los contribuyentes tendrán derecho a corregir su situación fiscal en las distintas contribuciones objeto de la revisión, mediante la presentación de la declaración normal o complementaria que, en su caso, corresponda, de conformidad con lo dispuesto en 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Los contribuyentes podrán corregir su situación fiscal a partir del momento en el que se dée inicio al ejercicio de la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y hasta antes de que se les notifique la resolución que determine el monto de las contribuciones omitidas. El ejercicio de este derecho no está sujeto a autorización de la autoridad fiscal.

Artículo 15.- Los contribuyentes deberán entregar a la autoridad revisora, una copia de la declaración de corrección que hayan presentado. Dicha situación deberá ser consignada en una acta parcial cuando se trate de visitas domiciliarias; en los demás casos, incluso cuando haya concluido una visita domiciliaria, la autoridad revisora en un plazo máximo de diez días contados a partir de la entrega, deberá comunicar al contribuyente mediante oficio



haber recibido la declaración de corrección, sin que dicha comunicación implique la aceptación de la corrección presentada por el contribuyente.

Artículo 16.- Cuando durante el ejercicio de la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de las autoridades fiscales, los contribuyentes corrijan su situación fiscal y haya transcurrido al menos, un plazo de tres meses contados a partir del inicio del ejercicio de dichas facultades, se dará por concluida la visita domiciliaria o la revisión de que se trate, si a juicio de las autoridades fiscales y conforme a la investigación realizada, se desprende que el contribuyente ha corregido en su totalidad las obligaciones fiscales por las que se ejercieron la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y por el período objeto de revisión. En el supuesto mencionado, se hará constar la corrección fiscal mediante oficio que se hará del conocimiento del contribuyente y la conclusión de la visita domiciliaria o revisión de que se trate.

Cuando los contribuyentes corrijan su situación fiscal con posterioridad a la conclusión del ejercicio de la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y las autoridades fiscales verifiquen que el contribuyente ha corregido en su totalidad las obligaciones fiscales que se conocieron con motivo del ejercicio de las facultades mencionadas, se deberá comunicar al contribuyente mediante oficio dicha situación, en el plazo de un mes contado a partir de la fecha en que la autoridad fiscal haya recibido la declaración de corrección fiscal.

Cuando los contribuyentes presenten la declaración de corrección fiscal con posterioridad a la conclusión del ejercicio de la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y hayan transcurrido al menos cinco meses del plazo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18 de este ordenamiento, sin que las autoridades fiscales hayan emitido la resolución que determine las contribuciones omitidas, dichas autoridades contarán con un plazo de un mes, adicional al previsto en el numeral mencionado, y contado a partir de la fecha en que los contribuyentes presenten la declaración de referencia para llevar a cabo la determinación de contribuciones omitidas que, en su caso, proceda.



No se podrán determinar nuevas omisiones de las contribuciones revisadas durante el periodo objeto del ejercicio de la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salvo cuando se comprueben hechos diferentes. La comprobación de hechos diferentes deberá estar sustentada en información, datos o documentos de terceros o en la revisión de conceptos específicos que no se hayan revisado con anterioridad.

Si con motivo del ejercicio de la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se conocen hechos que puedan dar lugar a la determinación de contribuciones mayores a las corregidas por el contribuyente o contribuciones objeto de la revisión por las que no se corrigió el contribuyente, los visitadores o, en su caso, las autoridades fiscales, deberán continuar con la visita domiciliaria o con la revisión prevista en el artículo 48 d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hasta su conclusión.

Cuando el contribuyente, en los términos del párrafo anterior, no corrija totalmente su situación fiscal, las autoridades fiscales emitirán la resolución que determine las contribuciones omitidas, de conformidad con el procedimiento establecido en 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Artículo 17.- Los contribuyentes que corrijan su situación fiscal, pagarán una multa equivalente al 20% de las contribuciones omitidas, cuando el infractor las pague junto con sus accesorios después de que se inicie el ejercicio de la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de las autoridades fiscales y hasta antes de que se le notifique el acta final de la visita domiciliaria o el oficio de observaciones a que se refiere la fracción VI del artículo 48 d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según sea el caso.

Si el infractor paga las contribuciones omitidas junto con sus accesorios, después de que se notifique el acta final de la visita domiciliaria o el oficio de observaciones, según sea el caso, pero antes de la notificación de la resolución que determine el monto de las contribuciones omitidas, pagará una multa equivalente al 30% de las contribuciones omitidas.

Así mismo, podrán efectuar el pago en parcialidades de conformidad con lo dispuesto en 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siempre que esté garantizado el interés fiscal.

Artículo 18.- Las autoridades fiscales contarán con un plazo de seis meses para determinar las contribuciones omitidas que conozcan con motivo del ejercicio de su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sin perjuicio de lo dispuesto en el tercer párrafo del artículo 16 de esta Ley. El cómputo del plazo se realizará a partir de los supuestos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50 d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y le serán aplicables las reglas de suspensión que dicho numeral contempla. Si no lo hacen en dicho lapso, se entenderá de manera definitiva que no existe crédito fiscal alguno a cargo del contribuyente por los hechos, contribuciones y períodos revisados.

Artículo 19.- Cuando las autoridades fiscales determinen contribuciones omitidas, no podrán llevar a cabo determinaciones adicionales con base en los mismos hechos conocidos en una revisión, pero podrán hacerlo cuando se comprueben hechos diferentes. La comprobación de hechos diferentes deberá estar sustentada en información, datos o documentos de terceros o en la revisión de conceptos específicos que no se hayan revisado con anterioridad; en este último supuesto, la orden por la que se ejerzan la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deberá estar debidamente motivada con la expresión de los nuevos conceptos a revisar.

Artículo 20.- Las autoridades fiscales podrán revisar nuevamente los mismos hechos, contribuciones y períodos, por los que se tuvo al contribuyente por corregido de su situación fiscal, o se le determinaron contribuciones omitidas, sin que de dicha revisión pueda derivar crédito fiscal alguno a cargo del contribuyente.



CAPÍTULO IV

Derechos y garantías en el procedimiento sancionador

Artículo 21.- En todo caso la actuación de los contribuyentes se presume realizada de buena fe, correspondiendo a la autoridad fiscal acreditar que concurren las circunstancias agravantes que señala 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en la comisión de infracciones tributarias.

Artículo 22.- Los contribuyentes cuyos ingresos en el ejercicio inmediato anterior no hayan superado un monto equivalente a treinta veces el salario mínimo general, correspondiente al área geográfica del contribuyente elevado al año, cuando garanticen el interés fiscal mediante embargo en la vía administrativa, deberán ser designados como depositarios de los bienes y el embargo no podrá comprender las mercancías que integren el inventario circulante del negocio, excepto cuando se trate de mercancías de origen extranjero respecto de la cual no se acredite con la documentación correspondiente su legal estancia en el país.

CAPÍTULO V

Medios de defensa del contribuyente

Artículo 23.- Los contribuyentes tendrán a su alcance los recursos y medios de defensa que procedan, en los términos de las disposiciones legales respectivas, contra los actos dictados por las autoridades fiscales, así como a que en la notificación de dichos actos se indique el recurso o medio de defensa procedente, el plazo para su interposición y el órgano ante el que debe formularse. Cuando en la resolución administrativa se omita el señalamiento de referencia, los contribuyentes contarán con el doble del plazo que establecen las disposiciones legales para interponer el recurso administrativo o el juicio contencioso administrativo.

Artículo 24.- En el recurso administrativo y en el juicio contencioso administrativo ante el Tribunal Federal de Justicia Fiscal y Administrativa, los contribuyentes podrán ofrecer como prueba el expediente administrativo del cual emane el acto impugnado. Éste será el que contenga toda la documentación relacionada con el procedimiento que dio lugar a la resolución impugnada; dicha documentación será la que corresponda al inicio del procedimiento, los actos jurídicos posteriores y a la resolución impugnada. No se incluirá en el expediente administrativo que se envíe, la información que la Ley señale como información reservada o gubernamental confidencial.

Para los efectos de este artículo, no se considerará expediente administrativo, los documentos antecedentes de una resolución en la que las leyes no establezcan un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previo.

TRANSITORIOS

Artículo Primero.- La presente Ley entrará en vigor un mes después de su publicación en el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Las autoridades fiscales realizarán una campaña masiva para difundir las nuevas disposiciones contenidas en la misma.

Artículo Segundo.- Las disposiciones previstas en la presente Ley, sólo serán aplicables al ejercicio de la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de las autoridades fiscales que se inicien a partir de la entrada en vigor del presente ordenamiento.

Artículo Tercero.- A partir de la entrada en vigor de la presente Ley, se estará a lo siguiente :

I.- Para los efectos de lo dispuesto en la fracción I del artículo 208 d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se podrá señalar el domicilio para recibir notificaciones de conformidad con lo dispuesto en la fracción XIV del artículo 2o. de la presente Ley.



- II.- Para los efectos de lo dispuesto en el último párrafo del artículo 208 citado, cuando no se señale el domicilio para recibir notificaciones en los términos establecidos en la fracción XIV del precitado artículo 2o. de esta Ley, las notificaciones que deban practicarse se efectuarán por lista autorizada.
- III.- Los contribuyentes podrán presentar en los juicios de nulidad ante el Tribunal Federal de Justicia Fiscal y Administrativa, como prueba documental, el expediente administrativo en los términos establecidos en el artículo 24 de la presente Ley, no obstante que exista disposición en contrario en 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México, D.F., a 28 de abril de 2005.- Dip. Manlio Fabio Beltrones Rivera, Presidente.- Sen. Diego Fernández de Cevallos Ramos, Presidente.- Dip. Marcos Morales Torres, Secretario.- Sen. Sara I. Castellanos Cortés, Secretaria.- Rúbricas."

En cumplimiento de lo dispuesto por la fracción I del Artículo 89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para su debida publicación y observancia, expido el presente Decreto en la Residencia del Poder Ejecutivo Federal, en la Ciudad de México, Distrito Federal, a los diecisiete días del mes de junio de dos mil cinco.- Vicente Fox Quesada.- Rúbrica.- El Secretario de Gobernación, Carlos María Abascal Carranza.- Rúbrica.



8 - IMMEX, PROSEC 신청서

□ IMMEX 신청서(SE-03-074)

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EXTERIOR

SOLICITUD DE AUTORIZACIÓN O AMPLIACIÓN DE PROGRAMA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ÓN (IMMEX)

AutORIZACIÓN DE PROGRAMA: Nuevo Ampliación Fecha de recepción:
 DESAHOGO DE PREVENCIÓN: A favor: En caso de ampliación indicar el número de programa: Número Año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

I DATOS GENERALES

1) Denominación o Razón Social*
 2) Domicilio Fiscal* Calle*
 Número y/o Letra* Colonia* Código Postal*
 Ciudad, Municipio o Delegación* Entidad Federativa*
 3) Teléfono(s)* 4) Fax* 5) Correo Electrónico:
 6) Sector Productivo*

II DATOS DEL REPRESENTANTE LEGAL

Nombre:
 Cargo en la Empresa:
 Domicilio:
 Teléfono: Fax:
 Correo electrónico:

Página 1 de 8 SE-03-074

III OPERACIÓN AL AMPARO DEL PROGRAMA IMMEX

7) Indicar la modalidad del programa de industria manufacturera de exportación que solicita:

Industrial: Servicio: Terciarización:
 Controladora de: Albergue:

Empresas:

8) Domicilio (s) donde se realizarán operaciones IMMEX: Calle
 Número y/o Letra Colonia Código Postal
 Ciudad, Municipio o Delegación Entidad Federativa
 Teléfono: Fax:

9) Registro de sociedades controladas:

Denominación o Razón Social	R.F.C.

Domicilio Fiscal:
 Domicilio de la(s) planta(s):
 Monto de Exportaciones del año anterior (dólares):
 Número de Programa, en su caso, de las empresas controladas:
 Porcentaje de participación accionaria respecto de:

a) Empresa Controladora: %
 b) Empresa residente en el extranjero: %

Página 2 de 8 SE-03-074

□ PROSEC 신청서(SE-03-074)

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EXTERIOR

SOLICITUD DE AUTORIZACIÓN O AMPLIACIÓN DE PROGRAMA DE PROMOCIÓN SECTORIAL P R O S E C

AutORIZACIÓN DE PROGRAMA: Nuevo Ampliación Fecha de recepción:
 DESAHOGO DE PREVENCIÓN: A favor: En caso de ampliación indicar el número de programa: Programa Nuevo Ampliación Número PROSE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

I DATOS GENERALES

1) Nombre o razón social*
 2) Domicilio* Calle*
 Número y/o Letra* Colonia* Código Postal*
 Ciudad, Municipio o Delegación* Entidad Federativa*
 3) Teléfono* 4) Fax*
 5) Correo electrónico:
 6) Actividad principal*
 7) Nombre de la Administración Local de Recaudación que corresponde a su domicilio fiscal:

II DOMICILIO DE PLANTAS

Calle
 Número y/o Letra Colonia Código Postal
 Ciudad, Municipio o Delegación Entidad Federativa
 Teléfono(s): Fax:

III TIPO DE PROGRAMA

Productor Directo Productor Indirecto

IV DATOS DEL REPRESENTANTE LEGAL

Nombre: Fax:
 Teléfono: Correo Electrónico:
 Manifiesto bajo protesta de decir verdad, que los datos asentados en la presente solicitud y en sus anexos son ciertos y verificables en cualquier momento por las autoridades competentes.

Página 1 de 3 Fecha Firma del Representante Legal SE-03-074

IV DATOS DEL PRODUCTO O SERVICIO

10) Descripción detallada del proceso productivo o tipo de servicios, objeto de la solicitud del Programa (anexar en escrito libre):

11) Capacidad de producción a utilizar por cada producto:

Fración Arancelaria	Capacidad Instalada (Volumen y Unidad de Medida de la TIGIE)	Capacidad Utilizada %

12) Registro de empresas que realizarán operaciones de Terciarización:

Denominación o Razón Social	R.F.C.	Domicilio de la planta(s)

13) Registro de empresas a las que se prestan los servicios objeto del programa:

Denominación o Razón Social	R.F.C.	Número de Programa

14) Registro de empresas que realizarán operaciones de Submanufactura:

Nombre, Denominación o Razón Social	R.F.C.	Domicilio de la planta(s)

15) Información para registro de Programa de Promoción Sectorial (PROSEC):

a) Sector (I, II, III, etc.) y descripción:
 b) Fracción arancelaria de las mercancías a producir conforme a la TIGIE:

Manifiesto bajo protesta de decir verdad, que los datos asentados en la presente solicitud y en sus anexos son ciertos y verificables en cualquier momento por las autoridades competentes además de comprometerme a exportar anualmente al 10% de mis ventas totales o 500 mil dólares de los Estados Unidos de América, o su equivalente en moneda nacional.

Página 3 de 6 Lugar y fecha Firma del Representante Legal SE-03-074



9 전자서명(E. firma) 신청서식

□ 전자서명 신청서식

gob mx	
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Solicitud de Certificado de Firma Electrónica FE	
Fecha de publicación del formato en el DOF 24 de diciembre de 2015	Homoclave del formato FE
Datos generales del solicitante	
Personas físicas	Personas morales
CURP: RFC: Nombre(s): Primer apellido: Segundo apellido:	RFC: Denominación o Razón social:
Representante legal o apoderado	
CURP: RFC: Nombre (s): Primer apellido: Segundo apellido:	
Marque con "x" el documento en original o copia certificada que proporciona para realizar el trámite (Solo para cotejo)	
Persona física <input type="checkbox"/> Documento de identidad <input type="checkbox"/> Identificación oficial	Persona moral <input type="checkbox"/> Poder general para actos de administración o dominio <input type="checkbox"/> Acta o documento constitutivo <input type="checkbox"/> Identificación oficial del representante legal
Se presenta por duplicado	
MÉXICO GOBIERNO FEDERAL COMISIÓN FEDERAL DE ELECTRONICIDAD	Contacto: Av. Hidalgo 77, Col. Guerrero, Deleg. Cuauhtémoc, C.P. 06300, México D.F. Tel. INFOSAT (01800) 4636-728

gob mx	
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Casos especiales (especifique)	
Declaro bajo protesta de decir verdad que los datos contenidos en esta solicitud son ciertos.	Sello de la ADS
Firma o huella digital del contribuyente, del asociado, o del representante legal o apoderado, con tinta azul. El representante legal o apoderado manifiesta bajo protesta de decir verdad que a esta fecha el mandato con el que se ostenta no le ha sido modificado o revocado.	
Instrucciones	
Esta solicitud podrá ser llenada a máquina o a mano. Únicamente se deberán hacer anotaciones dentro de los campos establecidos.	
1.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 Se deberá anotar la clave del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 a doce posiciones si es persona moral, y a cinco si es persona física. 2. CURP. Clave Única de Registro de Población. Se deberá anotar la Clave Única de Registro de Población a 18 posiciones. 3. Datos del representante legal. Trátándose de personas morales, el representante legal o apoderado deberá anotar su clave Única de Registro de Población a 18 posiciones,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 y su nombre (s), primer apellido y segundo apellido.	
Términos y condiciones de uso	
El que suscribe, en adelante el "Usuario", manifiesta:	
1.- Que ha solicitado al 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en su carácter de Agencia Certificadora, en adelante el "SAT", la emisión de mi Certificado de Firma Electrónica Avanzada, o en su caso el de mi representada al tenor de lo dispuesto por el artículo 17-D d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y que he generado previamente y en absoluto secreto el archivo con terminación ".K1" que contiene mi Clave Privada, así como la contraseña de acceso a la clave privada asociada al mismo, sin que persona alguna me haya asistido en dicho proceso.	
2.- Que es de mi conocimiento y conformidad que con el propósito de brindar seguridad jurídica en la obtención y uso del Certificado de Firma Electrónica Avanzada, se debe garantizar la existencia del vínculo jurídico entre el Certificado de Firma Electrónica Avanzada y su titular, acreditando plenamente en el proceso de emisión del certificado la identidad de la persona física titular, o bien la identidad de las personas físicas en su carácter de representantes o apoderados en el caso de personas morales, por lo cual deberá comparecer de manera personal ante el "SAT" en donde se obtendrá y almacenarán mis datos de identidad consistentes en el registro electrónico de datos biométricos como son huellas digitales, fotografía, captura de la imagen de los ojos y mi firma autografiada, asimismo deberá realizar el registro electrónico de la documentación que acredita mi identidad. De la misma forma me manifiesto conocedor de que los datos de identidad mencionados en este numeral formarán parte del Sistema Integrado de Registro de Población, de acuerdo con lo dispuesto por el noveno párrafo del artículo 17-D d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así como las disposiciones conducentes de la Ley General de Población y su Reglamento.	
3.- Que es de mi conocimiento y conformidad que, con el propósito de brindar seguridad jurídica en la obtención y uso del Certificado de Firma Electrónica Avanzada, deberá entregar a el "SAT" junto a la presente Solicitud, la documentación señalada en el Catálogo de Servicios y Trámites del Portal del SAT: www.sat.gob.mx, y que estos documentos en conjunto con mis datos de identidad, serán para acreditar de manera inequívoca mi identidad, para lo cual el "SAT" realizará el cotejo y verificación de los mismos.	
Se presenta por duplicado	
MÉXICO GOBIERNO FEDERAL COMISIÓN FEDERAL DE ELECTRONICIDAD	Contacto: Av. Hidalgo 77, Col. Guerrero, Deleg. Cuauhtémoc, C.P. 06300, México D.F. Tel. INFOSAT (01800) 4636-728



10 - 주요 참고 자료



- 국가별 정보, KOTRA
- 해외투자 정보, KOTRA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농수산 유통공사
- 2015년도 주요 18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KOTRA
-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 기타 웹사이트
 - 멕시코 국세청 : <http://www.sat.gob.mx/>
 - 코트라 : <http://www.kotra.or.kr/>
 - 한국수출입은행 : <http://www.koreaexim.go.kr>.
 - 통합무역서비스 : <http://www.tradenavi.or.kr>
 -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ta.or.kr>
 - LG경제연구원
 - OECD : <http://www.oecd.org>
 - Doing Business 2017 보고서(World bank)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멕시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 : 044 - 204 - 2814

팩스 : 044 - 216 - 6066

원고 작성 및 편집

국세조사관 이호상

국세조사관 이해진

국세조사관 이해웅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4-2814)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의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2018